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690호 2006. 3. 16.(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치법규

[조례]

- 제436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제4365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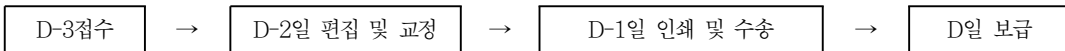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4366호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유지역개발촉진법시행령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4367호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4368호	서울특별시서울영어마을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10
제4369호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12
제4370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제4371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4372호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4373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4374호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1
제437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4376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	28
제4377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입법예고]

제2006-433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8
제2006-447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제2006-448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9
제2006-45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고 시

제2006- 78호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32
제2006- 80호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46
제2006- 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결정	50
제2006- 8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결정	50
제2006- 84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51
제2006- 85호	마곡&시티(MRC)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52
제2006- 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53
제2006- 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	56
제2006- 90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57
제2006- 9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57
제2006- 93호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59
제2006- 94호	왕십리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I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	63

◆공 고

제2006- 54호	시흥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68
제2006-385호	박물관 신규 등록	87

제2006-399호 2006년도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공개 87

제2006-400호 2006년도 제5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154

제2006-401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156

제2006-40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계획안 156

제2006-409,4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157

제2006-412호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158

제2006-421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59

제2006-423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59

제2006-42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159

제2006-428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등록 160

제2006-429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161

제2006-431호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반환청구 안내 162

제2006-43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62

제2006-4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실시계획변경(안)열람 163

제2006-441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168

제2006-44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169

제2006-4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70

제2006-4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171

제2006-4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171

◆인사위원회공고

제2006- 1호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출석 172

◆구고시

제2006- 13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중구) 173

제2006- 1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자연경관지구)지형도면 작성(용산구) 173

제2006- 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 변경인가(성동구) 174

제2006- 12호 행당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성동구) 174

제2006- 21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변경(개정)결정(성북구) 175

제2006- 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구) 175

제2006- 7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지형도면(도봉구) 176

제2006- 8호 쌍문제2구역 주택(자력)재개발사업 이전(도봉구) 177

제2006- 7호 도시계획시설(마들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노원구) 178

제2006- 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은평구) 179

제2006- 22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서대문구) 180

제2006- 23호 천연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개선계획변경(서대문구) 183

제2006- 24호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실시계획(서대문구) 184

제2006- 10호 재건축 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구) 189

제2006- 18호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강서구)	189
제2006- 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영등포구)	190
제2006- 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영등포구)	191
제2006- 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동작구)	192
제2006- 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동작구)	194
제2006- 18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사업계획변경승인)(동작구)	195

◆구공고

제2006-109,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사완료(용산구)	198
제2006-142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열람(중랑구)	199
제2006-20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량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성북구)	201
제2006-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공사완료(강북구)	202
제2006-12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도봉구)	203
제2006-116호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전용소매시장)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열람(노원구)	205
제2006-124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노원구)	206
제2006-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동작구)	208
제2006-16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강남구)	209

◆사업소고시

제2006- 37,38,39,41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211
제2006- 40호	하천점용 연장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212

◆사업소공고

제2006- 1,2,3,4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남산공원관리사업소)	213
제2006-가-5호	도시공원시설(천호동공원 전시관)관리위탁(녹지사업소)	214
제2006- 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구의정수사업소)	214
제2006- 4호	방염처리업 신규등록(마포소방서)	215
제2006- 3호	소방시설업 등록(강서소방서)	215
제2006- 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강동소방서)	216

◆기 타

제2006- 24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7
------------	---------------------------	-----

짜치법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6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으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의2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2중제1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 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

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조의2·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조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 결혼·부모회갑 및 탈상 등에 대한 특별휴가를 폐지하고, 부모사망 등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단축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구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65호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관계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 2.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내의 지명·시설명 및 구역명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의적절하게 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동위원회에서 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66호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서울국제경제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을 정보통신·금융·지식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이상적인 도시로서 그 이미지를 형성하고,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산업 등을 위한 임지로서의 서울의 장점 및 발전방향

제5조제3항중 “자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명예위원) ①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으로 재직할 자를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위원(이하 “명예위원”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

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자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위원”을 “위원(명예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2일 이후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의장으로 재직할 자를 동 자문단의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그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67호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동항 제2호중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동항 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동항 제4호중 “모자복지법”을 “「모자복지법」”으로, 동항 제5호중 “생활보호법”을 “「생활보호법」”으로, 동항 제6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
- 3.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결정·홍보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제11조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비고란 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스호텔 사용료는 유스호텔연
맹에서 권장하는 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조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보고되는 운
영규정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청소년수련
관 및 기타 청소년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성동·금천·서대문·창동·망우청소년수련관
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이
용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
의 운영권한을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 소 년 수 려 관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강남구 수서동 749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 918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강북구 수유동 산20-9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은평구 응암동 산6-4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3동 135-2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구 구로2동 704-12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성동구 행당동 7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천구 시흥동 산84-7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도봉구 창동 1-6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	중랑구 망우동 241-2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중구 수포동 27-1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중랑구 면목동 1382-10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5동 142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수련활동 및 주거 생활지원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의 문제상담 활동시설	중구 수포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 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정보문화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6	
	서울영어체험마을	체험활동을 통한 영어습득	송파구 풍납동 281-1	
	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보호	중구 예장동 산 4-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68호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국제감각 능력과 영어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영어마을"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등)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대상)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의 능력개발 또는 서울영어마을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영어마을 이용료를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이용자에 대하여 당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질병 또는 거주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이용기간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회계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서울영어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중 서울영어체험마을란을 삭제한다.

제3조(서울영어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영어체험마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영어마을로 보되, 그 명칭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청소년의 국제감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 (제3조, 별표 1)

명 칭	위 치	비고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송파구 풍납동 281-1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강북구 수유동 산82 외	

나. 「청소년기본법」 제3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을 이용대상으로 함 (제4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함(제7조 및 제8조)

[별표1]

서울영어마을(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고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송파구 풍납동 281-1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강북구 수유동 산82 외 17필지	

[별표 2]

서울영어마을 이용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프로그램명	정규반	특별반	방학캠프반	주말반	당일반
기 간	5박6일	5박6일	12박 13일	1박 2일	1일
이용료(교육비, 숙식비, 보험료 등 포함)	340,000 이내	400,000 이내	800,000 이내	120,000 이내	50,000 이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69호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 : 복지건강국장·구조구급과장 및 보건정책과장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1명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과 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자격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의 대표, 시민단체 대표,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함(제2조)
-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내지 제6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0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훈련을 의뢰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1.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이하 “검사·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2.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를 의뢰하는 경우: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3.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훈련을 의뢰하는 경우: 80,000원 이상 350,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② 검사·시험 또는 시험성적서의 재교부를 의뢰하는 자는 수수료를 그에 상당하는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등 면제)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검사·시험, 시험성적서 재교부 또는 교육훈련을 의뢰하는 경우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제4조(수수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검사·시험의뢰) 의뢰된 사항 중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검사·시험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③(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및 식·의약품의 검사·시험분야와 그 분야별 세부항목(318개→389개)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관계법령,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요령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등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항목별 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미생물학적검사	미생물학적검사	장내세균, 일반세균, 유산균수, 진균수검사	1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협기성균군, 대장균, 대장균군, 식중독균검사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레지오넬라균검사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붕해, 주사제유리용기, 극한점도, 강열잔분, 증발잔류물질, 형상, 효능, 굴절률, 강열감량시험, 불용성이물검사, 비중, 입도, 실용량, 입자도, 종류, 소포력, 알코올수시험,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기지성분 정성시험(기기분석외)	1,3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응집, 제산도, 흡착력, 비선광도, 불용성미립자, 중금속(비색법), 정유함량, 검경법에 의한 성상시험, 산불용성회분시험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항생물질제제의 역가시험, 안전성시험, 무균시험, 생균수시험,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 수분, 세포독성시험, 표백제, 용혈성시험, 기타 기기분석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발열성물질시험, 생약제제시험, 비타민제의 생물학적 정량시험, 효소제시험, 함량 균일성시험, 용출시험, 순도시험, 미생물한도시험, 급성독성시험, 히스타민시험, 중금속(기기분석), 이식시험, 보존제, 기지성분 정성시험(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기기분석), 정량시험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수액용플라스틱용기, 피내반응시험, 엔도톡신시험, 수액용고무마개시험, 잔류농약 단성분시험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항원성시험, 엘카토닌 함량시험	160,000원 이상 320,000원 미만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의약품· 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 합량시험, 난포자극호르몬 합량시험, 잔류농약 유기 염소제(5종 기준)	320,000원 이상 640,000원 미만
		인슐린합량시험	640,000원 이상 1,280,000원 미만
	화장품	정성시험, 메탄올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비소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정량시험, 납, 수은, 기타 기기분석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공통	중량편차, 내용량, 내용압력, 안정성시험, 피·에이치(pH)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미생물학 적검사	디스크성능시험	14,8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	의료용구	인장강도, 신장도, 연구신장, 인열강도시험	14,5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세포독성, 무균, 용혈성시험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급성독성, 이식, 발열성, 자극성시험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피내반응시험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의약외품	치약상태, 분말도, 소독포, 수술포, 형상시험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삼각끈, 인장강도, 점착력, 신장률시험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마스크, 석고붕대, 압박대, 탄력붕대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생리처리용 위생대, 월경처리용탐폰, 안대, 가아제, 붕대, 탈지면, 반창고, 스터키넷, 팩거즈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복부용 패드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공통	기타시험	4,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식품·식품 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피·에이치(pH), 비중, 굴절률, 색도, 진공도, 가스압, 형광증백제	2,8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이물, 산불용성회분, 총산, 염소이온, 사분, 총염소, 황산이온, 고형량, 입도, 염화나트륨, 당도, 포도당량, 텍스트린분, 고형분, 휘발성 염기질소, 가용성 고형분, 비누화가, 비비누화물, 요오드가, 전고형분, 산가, 과산화물가, 무염 가용성고형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용액의 착색도, 용액의 탁도, 차성분, 알파화도, 산도, 유기산도, 단백질응고시험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항생물질(정성시험), 합성항균제(정성시험), 착색료, 인공감미료, 발색제, 위 화물, 인삼성분, 홍삼성분,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이성화당,전화당, 환원당, 총당, 올리고당, 과당, 순추출물, 조지방, 에탄올, 조섬유, 총질소, 아미노산 성 질소, 알데히드, 인지질, 알칼시글리세롤, 헥사코사놀, 시안화합물, 패류의 마비성패독 검사, 기타 기기분석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비타민B1, 나이아신, 칼슘, 인, 철, 나트륨, 아연,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검사, 항생물질(정량시험, 미생물학적 검사), 합성항균제(정량시험), 산화방지제, 보 존료, 식이섬유, 냉각시험, 상승응점, 비타민C, 총토코페롤, -아밀라아제, 프 로테아제, 엽록소, 엽록소b, 총페오포르비이드, 엽록소a, 총엽록소, 페오포르 비이드, 포스파키딜콜린조성비, 카테킨, 콘드로이친황산, SOD, 안트라퀴논계 물질, 키토올리고당합량, 총플라보이드, 콘드로이드친황산 : 단백질, 뮤코다당, 단백질, 에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 리놀렌산, -리놀렌산, 팔미올레 산, 스퀴알렌, 콜레스테롤, 옥타코사놀, 메탄올,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 산, 미량금속검사, 영양성분, 냉동침치, 냉동틸라피어의 일산화탄소시험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비타민A, 비타민B2, 아플라톡신, 주석, 납, 카드뮴, 비소, 수은, 열량, B-토 코페롤, 10-히드록시-2-테센산, 오리지놀, 단백질, 자실체, 균사체, 히드록 시프롤린, 잔류농약(단성분시험)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성장촉진제	160,000원 이상 320,000원 미만
		잔류농약(동시 다성분시험)	320,000원 이상 640,000원 미만
	식품 첨가물	확인시험(정성반응), 순도시험(정성반응),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정량시험 (색소), 기타 적정법 시험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수분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확인시험(기기분석), 순도시험(기기분석), 정량시험(효소)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기타 기기분석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기기 또는 용기·포장	형광증백제, 색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6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식품·식품 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기기 또는 용기·포장	증발잔류물, 안티몬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페놀, 중금속, 염화비닐단량체, 디부틸주석화합물, 휘발성물질, 염화비닐리덴, 바륨, 디페닐카보네이트, 아민류, 게르마늄, 포름알데히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카프로락탐, 멜라민, 이소시아네이트, 불소이온, 아크릴로니트릴, 2-머캅토이미다졸, 비소, 아연, 기타 기기분석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납, 카드뮴, 크레졸인산에스테르, 비스페놀A, PCBs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위생용품	색소, 형광증백제, 피·에이치(pH), 증발잔류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분	8,6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중금속류, 비소, 아연, 휘발성물질, 페놀, 포름알데히드, 기타 기기분석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메틸알콜, 계면활성제상당분, 납, 카드뮴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가스성분 시험	가스성분 시험	일산화탄소	6,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암모니아, 염화수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불소, 페놀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포름알데히드, 시안, 브롬, 비소, 수은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벤젠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입자상 물질성분 시험	입자상 물질성분 시험	매연	5,5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먼지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비산먼지, 중금속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악취시험	악취시험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암모니아)	34,400원 이상 40,000원 미만
		기기분석(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기기분석(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또는 이황화메틸)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환경소음 진동 측정	환경소음 진동 측정	기록측정, 대역분석,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 소음도 측정	3,4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대기오염도 검사	도장시설 검사	THC농도검사	78,500원 이상 80,000원 미만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실내공기 질검사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6,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이산화질소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석면, 오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수질검사	폐하수, 오수, 하천수, 호수수	수소이온농도, 온도	300원 이상 1,000원 미만
		전기전도도, 색도, 부유물질, 총노말-핵산추출물질, 인산염인, 염소이온,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 총인, 용존총인, 총질소, 용존총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페놀류, 불소, 크롬, 구리, 카드뮴, 납, 아연, 망간, 니켈, 철, 세레늄, 6가크롬, 대장균, 총대장균군(폐하수), 클로로필a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노말-핵산추출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시안,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소, 수은, 알킬수은, 휘발성 저급탄화수소류, 총대장균군(하천수, 호수수), 분원성대장균군, 정확조 기능시험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유기인, 여시니아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PCB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수소이온농도지수, 맛, 냄새, 탁도	300원 이상 1,000원 미만
	먹는물, 먹는샘물	색도, 총경도, 유리탄산, 중발잔류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잔류염소,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페놀류, 세제, 불소, 구리, 카드뮴, 납, 세레늄, 아연, 망간, 철, 알루미늄, 보론, 비소, 수은, 6가크롬, 대장균,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저온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 이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황산이온, 시안, 유기인계 농약, 휘발성 유기물질류, 녹농균, 쉬겔라, 살모넬라, 카바릴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할로아세틱에시드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수질검사	수처리제	수소이온농도, 비중, 염화물, 염기도, 건조감량, 체잔류물, 암모니아성 질소, 황산이온, 물불용물, 염기치환용량, 경도, 철, 3가철, 2가철, 납, 카드뮴, 망간, 세레늄, 아연, 비소, 수은, 정인산염, 산불용성 회분, 유리알카리, 유리산, 페놀가, ABS가, 메틸렌블루탈색력, 요오드흡착력, 염화나트륨, 황산, 강열잔류물, 유효염소, 산화알루미늄, 알긴산나트륨, 인산염, 규산염, 산화칼슘, 황산동,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이산화염소, 폴리아민 함량	1,100원 이상 10,000원 미만
		크롬, 에피클로로히드린 및 총클로로프로판올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유독물시험	유독물 시험	순도시험, 내용량, 유화성 및 유화안전성 시험	6,400원 이상 10,000원 미만
		확인시험, 합량시험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폐기물 및 토양검사	폐기물 시험검사	수소이온농도, 수분, 고형물, 강열감량, 유기물함량, 수은의 함유시험	2,200원 이상 10,000원 미만
		기름성분, 시안의 함유시험, 중금속의 용출시험, 비소, 수은의 용출시험, 6가 크롬, 할로겐화유기물질의 함유시험(휘발성)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시안의 용출시험, 유기인, 휘발성 저급 염소화탄화수소류, 중금속의 함유시험, 할로겐화유기물질의 함유시험(반휘발성), 할로겐화유기물질의 용출시험(반휘발성)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할로겐화유기물질의 용출시험(휘발성)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PCB의 용출시험	80,000원 이상 160,000원 미만
		PCB의 함유시험	160,000원 이상 320,000원 미만
	토양오염 검사	수소이온농도, 비소,	2,8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카드뮴, 구리, 납, 수은, 6가크롬, 시안, TCE, PCE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아연, 니켈, 유기인, 유류, 토양 중 잔류농약	2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
		불소, PCB, 페놀류, 시료채취비	40,000원 이상 80,000원 미만
정밀조사 평가비		640,000원 이상 1,280,000원 미만	

분 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
폐기물 및 토양검사	소각시설 검사	다이옥신 시료채취 출장비	266,000원 이상 320,000원 미만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	1,280,000원 이상 2,560,000원 미만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2,560,000원 이상 5,120,000원 미만
	폐기물, 토양 및 수질 등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정제시료)	850,000원 이상 1,280,000원 미만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폐기물, 토양, 수질)	2,560,000원 이상 5,120,000원 미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1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를 “영
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4조제5
항(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해당 법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령
조항에 맞도록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 ⇒ 영유아보육
법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 영유아보
육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장
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2호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
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
조제2호다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행령 제3조제2호다목”으로 하고, 동조제
2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명확히 정정 명시함
(제7조 : 여객자동차운수업 ⇒ 동법 시행령)
- 나. 조례에서 인용된 동조례 조항도 정정하
고자함(제7조 : 제2항 ⇒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3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14조(용자 대상자 선정 및 용자조건 등)에 명시된 동조례 제9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내용이고, 용자신청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4조 내용에서 인용한 제9조를 제12조로 정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4호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건설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5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의한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평균층수를 11층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제55조제3항 단서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

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은“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받은”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서를”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계획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별표 3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결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변경결정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이 경우 나목 내지 라목·바목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최소개발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범위안에서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선(벽면선을 포함한다)의 1.0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카.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타.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파.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하.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너.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호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3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5조·제26조 및 제27조 각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9호각목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 각목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 및 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내지 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 및 동조제10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조제11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 및 제1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1) 및 (2)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 및 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중 “건축법 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축법 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건축법 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내지 제6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내지 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내지 제9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내지 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 내지 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1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 내지 제14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나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다목 및 라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 내지 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

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한다.

제40조제4항제1호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1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내지 제1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시행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 내지 제15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한다.

제52조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6항 단서중 “자연공원법”을 “「자연 공원법」”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서울 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 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시세 부과징수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2)가중 “서울특별시녹지 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로 하고, 동호라목(2)나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의 본문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호마목(1)나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전단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고, 동호가목(2)가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 물관리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나목(2)다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호라목(1)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하며, 동호라목(2)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호라목(2)나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표제8호가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요청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평균층수 12층 또는 평균층수 7층까지 그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 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거나 재건축입대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결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도시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별표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6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내 용

1. 폐지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2006년 3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4377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9조원”을 “12조원”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지하철 관리·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33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중 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 정관의 변경 허가, 법인관련 지도·감독, 법인해산 신고 수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4.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혁신분권담당관 전화: 2171-2104, FAX: 2171-2190, E-mail: chol25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자격 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및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석유판매업 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인상함.

나.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 수수료, '장학금지급관련 증명'에 대한 수수료,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 및 '공인회계사 관련 학점취득증명'에 대한 수수료 신설함.

다. 소방 및 화재예방 수수료, 이·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기타 제증명수수료 및 열람 수수료를 폐지함.

라.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조례」로 이관함.

마. 공부·대장 열람 등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3707-8632, FAX: 731-6956, E-mail: oh70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7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부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수수료 또는 유명무실한 수수료를 폐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8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설정 및 이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당연직) 1인과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예산범위 안에서 위원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설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재무과장, 전화: 731-6756, FAX: 731-6650, E-mail: kimjc@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5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행사·경기의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감면율을 정함.
(1) 전용사용료의 감면
(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액을 면제
(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대표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을 감액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8호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1998-173호
 (1998.5.28)로 도시설계 확정공고된 마포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교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동교동 161-8번지 일대	8,500	감) 8,500	0	마포지구에 통합
변경	마포 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합정동 414-3번지 일대	-	증) 125,250	125,250	마포지구 분할 및 명칭 변경
변경	마포 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아현동 330-5번지 일대	-	증) 14,450	14,450	마포지구 분할 및 명칭 변경
변경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671,500	감) 220,000	451,500	구역분할및변경 서교지구중심 통합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변경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45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교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일대 편입 - 합정역 일대 편입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화대교 복단 및 창전로 일대 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일대 분리 - 아현뉴타운지구내 일부 지역 분리 • 필지단위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조정 • 구역 오차로 인한 구역면적 조정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451,500	-	451,50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48	-	648	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525	감) 9,579	8,946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3,975	감) 35,490	8,485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225,923	감) 33,929	191,994	42.5	
	준주거지역	18,828	증) 78,998	97,826	21.7	
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81,457	-	81,457	18.0	
	일반상업지역	62,144	-	62,144	13.8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1	마포구 서교동 395-166번지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8,551	지역·지구 중심기능육성 및 가로기능 제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입지 등의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조정
변경	2	마포구 서교동 344-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97	
변경	3	마포구 동교동 174-13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준주거지역	9,579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393	
변경	4	마포구 아현동 677-1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763	
변경	4	마포구 아현동 677-1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712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수색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교동~수색동 (동교동 147-12~동교동 147-2)	103,920 (1,522)	4,330 (106)	양측 12	서고164호 '82.4.22	
기정	-	서강로	중심지 미관지구	연대~공덕동~삼각지 (노고산동 31-22~노고산동 31-90)	110,400 (3,652)	4,600 (150)	양측 12	서고164호 '82.4.22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신촌로	중심지 미관지구	의주로 2가~제2한강교 (아현동 346-21~서교동 392-4)	224,000 (98,351)	6,000 (3,874)	양측 15~20	서고438호 '80.12.31	
기정	-	양화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촌로타리~신정동 (노고산동 57-2~창전동 2-103)	60,000 (13,413)	1,500 (343)	양측 20	서고81호 '84.2.17	
기정	-	서교로	일 반 미관지구	성산동 451~동교동 160 (동교동 161-9~동교동 160-5)	52,800 (1,656)	2,200 (70)	양측 12	서고2002-44호 '02.2.19	
기정	-	대흥로	일 반 미관지구	대흥동 12~용강동 494 (대흥동 2-6~대흥동 2-57)	48,000 (48)	2,000 (4)	양측 12	서고2002-44호 '02.2.19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나)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	방화지구	아현동~신촌로타리 (아현동 346-21~노고산동 31-21)	67,440 (4,915)	건고727호 '63.12.13	
기 정	-	방화지구	신촌로타리~합정동간 (노고산동 57-2~서교동 392-4)	58,080 (23,223)	건고727호 '63.12.13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광 로	2	75	40 ~50	주간선 도로	6,100 (355)	신촌로타리 (노고산동 107-1)	경인고속도로입구 (창전동 2-103)	일반 도로	-	건고320호 '81.8.24	신촌로
기정	광 로	2	58	40	주간선 도로	6,800 (3,800)	북아현동 (아현동3 46-21)	합정동 (서교동 392-4)	일반 도로	-	건고214호 '78.8.2	신촌로 양화로
기정	대 로	2	18	30	주간선 도로	3,100 (163)	원효로 1가 (노고산동 107-112)	신수동 (노고산동 107-1)	일반 도로	-	서고501호 '86.7.23	서강로
기정	대 로	2	7	30	보조 간선	1,500 (96)	서교동 (서교동 353-1)	성신동 (서교동 351-1)	일반 도로	-	건고2493호 '66.6.21	서교로
기정	대 로	3	14	25	보조 간선	1,600 (35)	대흥동 (대흥동 2-1)	용강동 (대흥동 2-6)	일반 도로	-	건고77호 '62.12.8	대흥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0	20	집산 도로	1,340 (167)	서교동 (서교동 372-3)	성산동 (서교동 374-11)	일반 도로	-	건고2493호 '66.6.21	잔다리 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 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358-27)	서교동 (서교동 354-1)	일반 도로	-	서고838호 '87.11.25	서교로
기정	중로	2	141	15	보조 간선	1,980 (143)	창전동104 (창전동 2-149)	하수동1445-5 (서교동 365-5)	일반 도로	-	건고2493호 '66.6.21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80 (46)	동교동190일대 (동교동 185-11)	동교동 190 (동교동 185-10)	일반 도로	-	서고187호 '91.6.19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나) 철도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변전소및환기실)	대흥동 2-77외10필지	-	1,567	서고191호 (1980.6.3)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노고산 공원	어린이 공원	마포구 노고산동 57-50	918	-	918	건고299호 (63.4.26)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장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시 장 (크리스탈 백화점)	대규모 점포	마포구 노고산동 57-1,2	1,670.78	-	1,670.78	서고704호 (84.11.2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4)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아현탁아원)	마포구 아현동 677-1	587.1	-	587.1	서고364호 (90.10.29)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5)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수도 (간선하수도)	노고산동 49-53	노고산동 49-53	신촌상가	206	1,327	-	폭원 6.4m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일반주거지역	-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R-12	신설
준주거지역	-	SR-1, SR-2, SR-3, SR-4, SR-5, SR-6, SR-7, SR-8, SR-9, SR-10, SR-11, SR-12, SR-13, SR-14, SR-15, SR-16, SR-17, SR-18, SR-19, SR-20, SR-21, SR-22, SR-23, SR-24, SR-25, SR-26, SR-27, SR-28	신설
일반상업지역	-	GC-1, GC-2, GC-3, GC-4, GC-5, GC-6, GC-7, GC-8, GC-9, GC-10, GC-11, GC-12, GC-13, GC-14	신설
근린상업지역	-	NC-1, NC-2, NC-3, NC-4, NC-5, NC-6, NC-7, NC-8, NC-9, NC-10, NC-11, NC-12, NC-13, NC-14, NC-15, NC-16	신설

2) 최대개발규모

구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비고
기정	3,000㎡	1,500㎡	-	▪ 기존 필지가 최대개발규모 이상이거나 동일소유주 공동건축은 제외 ▪ 95년 재정비지역은 별도 규정 없음
변경	3,000㎡	2,000㎡	1,500㎡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대지 및 획지, 특별계획구역 제외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전층 불허용도		비고	
기 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종미관지구 해당 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주거지역 허용용도 중 다음 용도는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중 전업, 마약 진료소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관람집회시설중 음식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발전소,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전면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설비자재, 화공약품, 자동차 시설 중 수리시설, 간판업 간이공작소 	95년 재정비 지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종미관지구 해당 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재건축 제외) 미관지구 이외 지역은 지역·지구 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전면부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설비자재, 화공약품, 자동차 시설 중 수리시설, 간판업 간이공작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98년 재정비 지역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탁시설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탁시설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변 경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전면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주거지역 이면부 및 일반주거 지역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 정	전 층		95년 재정비 지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층 근린생활시설 중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독서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서커스장 제외) 문화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전 층	1층 전면부	98년 재정비 지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중 상점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전시시설 중 전시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중 상점 전시시설 중 전시장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전시시설 중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전시시설 중 전시장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변 경	전 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공연장, 학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홍익 대학교 주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소매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 상점 (※ 상기 결혼관련용도란 웨딩드레스, 한복의 판매 또는 대여점에 한함) 	아현동 웨딩거리 일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양화로변 업무기능 특성화 지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신촌로 및 양화로변	

3)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준 용 적 률		비 고
	간 선 변	이 면 부	
기 정	일반상업지역	650%, 750%	98년 재량비 지역
	근린상업지역	650%	
	준주거지역	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법정 용적률 준수	

구 분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변 경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m ² 이상	600%	800%이하	허용용적률 ^x (1+1.3a) 이내 a=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12m미만	400%	600%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2m이상	300%	63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300%	36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다)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기정)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준수시		규제 80%, 권장 100%	
	합벽건축	조성시		10%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준수면적÷건축연면적)×0.2 【기준용적률의 1.2배 이내】	법정용적률 1.2배 이내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시	10%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쌈지형공지	조성시		10%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1.2배 이내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2	법정용적률 1.2배 이내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1.2배 이내	
공공조경	설치시	10%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 공	지상형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2	법정용적률 1.2배 이내
			지하형	10%	지하철과 연계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2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법정용적률 1.2배 이내 기준용적률 1.2배 이내
건축물 형 태	저층부 외벽재료	준수시		10%	
	야간조명	설치시		10%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 주차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2	법정용적률 1.2배 이내
도로 확폭		기부채납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2	

- 주) 1. 【 】는 95년 재정비지역 해당 사항임(그 외 사항은 98년 재정비지역 해당사항)
 2.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은 면적 산정시 제외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인센티브 기본형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n=1→α=0.1, n=2~3→α=0.2 n=4~5→α=0.3, n=6이상→α=0.4 (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분할) 가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0.2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필지→α=0.1 3~4필지→α=0.15 5필지이상→α=0.2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2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티 구조 α=0.5 침상형 구조 α=1.0 개방형 구조 α=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티 구조 α=0.5 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특정구역 지정및표시제한·완화고시 준수시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서울시기준 준수시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
 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변경)…인센티브 혼합형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단위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분할) 가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0.2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0.3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피로티 구조 a=1.0 ▪ 침상형 구조 a=1.5 ▪ 개방형 구조 a=2.0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구조 a=1.0 ▪ 개방형 구조 a=2.0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지침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계획시		기준용적률×(추가제공면적/대지면적)×1.2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구조 a=0.5 ▪ 개방형 구조 a=1.0
		지하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구조 a=0.5 ▪ 개방형 구조 a=1.0	
건축물 형 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특정구역 지정및표시제한·완화고시 준수시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서울시기준 준수시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당해 획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획지단위개발, 최고높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80%를 말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3.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5.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6.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4)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기 정	95년 재정비지역	폭12m 초과도로 인접대지	3, 4, 5, 7층	-	
		폭12m 이하도로 인접대지	-	5층	상업지역 제외
	98년 재정비지역	간 선 변	5, 7층	-	
		이면부	상업지역	3층	-
	준주거지역		3층	5층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변 경	일반상업지역	신촌로타리 일대	100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적용 	
		역세권 주변	80m 이하		
		기타 지역	60m 이하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변	역세권 주변(신촌역)		80m 이하
			기타 지역		60m 이하
		이면 블록	30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m 이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

구 분	적 용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이면도로변 보·차도 확보 	간선도로변	3m, 5m	
		이면부	1~3m	
벽면 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한 통로 확보 	보차혼용통로변	폭 4~6m	

2) 대지내 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차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 	
공 개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 이상 • 1개소 최소면적 45㎡ 이상 조성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쌈지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0㎡ 이상 • 인접 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 •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침상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3)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 설치 •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 유도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건축물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이격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옹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지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층부의 바다,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 	

4) 교통처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로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폭20m 이상 도로변
공공보행통로	• 보행흐름의 연속성 및 접근성 제고	구역내
보차혼용통로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구역내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	-	증) 6,620	6,620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역세권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판매 및 업무기능 중심의 복합개발 유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어린이공원 부지 일대의 상업·업무 복합개발 - 서대문구 견고싶은 거리축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 	
용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없음) 	
용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없음 - 중심지미관지구(신촌로, 양화로변 각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0m)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폐지(면적918㎡)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소공원 신설, 1520㎡) • 소로1-1 확폭(B :6m→10m) • 소로3-1 연장확대(L: 40m→53m) 및 소로3-2 연장축소(L: 182m→132m) • 공공청사 신설(파출소, 면적 100㎡이상) • 하수도 이설 : 소로1-1 부지내로 하수도 이설 -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하수도 용량 등에 대한 종합검토 후 구체적인 선형, 규모 등을 결정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구 분		계 획 지 침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
		상 한
최고높이		• 80m 이하(사선제한 배제)
기타	건축한계선	• 신촌로변 3m, 이면도로변 2m
	차량출입 금지구간	• 신촌로, 양화로변에 지정
	인센티브	• 기본형 적용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II.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II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300) 및 마포구 도시관리과(☎ 330-207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0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 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14,704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704	-	14,704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384	감)12,38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20	증)12,384	14,704	100.0	층수완화 12층→15층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합계		14,704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339	15.9	
	도로	1,430	9.7	기준도로 : 170m ² 개설후 기부채납 : 1,260m ²
	공원	909	6.2	조성 후 기부채납
획지	소계	12,262	83.4	
	획지 1	12,262	83.4	
기타	하천구역	103	0.7	-사업대지에서 제척 -건축배치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 능	사 용 형 태	연 장 (m)	위 치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9	국지도로	일반도로	(170)					
변경	소로	2		9~18	"	"	(170)					
기정	소로	2		8	"	"	(106)					
변경	소로	2		9.5	"	"	(106)					
기정	소로	2		8~10	"	"	(265)					
변경	소로	2		8~10	"	"	(265)					

※ ()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구간에 관한 사항임.

(2) 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원	소공원	월계동 472-41 일원	-	증)909	909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m ²)	명칭	면 적 (m ²)		합 계 (신축동)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신축동)	철거 이 주	
신설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704	획지1	12,262	월계동 487-17일대	94 (10)	-	-	94 (10)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노원구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704	획지1	12,262	월계동 487-17 일원	37,524.27 (임대주택 제외)	공동 주택	26.13	220.89 (임대주택 제외)	최고43m 최고1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주택재건축사업 : 최대규모 118.15㎡(세대당 전용면적 297㎡이하)								
			구분	세대수		연면적					
				세대	비율(%)	면적(㎡)	비율(%)				
			계	262	100.0	43,127.51	100.0				
			60㎡이하	26	9.9	2,730.26	6.3				
			60~85㎡이하	164	62.6	24,253.96	56.2				
85㎡초과	72	27.5	16,141.29	37.5							
			○ 건설비율(연면적기준, 임대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제어내용		제어목표					
			건축 한계선	서측 일부 및 동측 도로변 2m		보도설치					
				남측 도로변 4m		보도설치 및 전면공지 확보					
		북측 도로변 0.5m		보도설치							

※ 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세대수에는 임대주택 포함.

(3)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동이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획지1	-	증)796.56	796.56	
	관리사무소	"	-	증)106.72	106.72	
	경로당	"	-	증)83.09	83.09	
	어린이놀이터	"	-	증)534.26	534.26	

(4)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합 계	공 동 주 택			비 고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인구수 (인)	786	78	492	216	3인/세대 적용
세대수 (세대)	계	262	164	72	
	분양주택	217	145	72	
	임대주택	45	19	-	
비율(%)	100.0	9.9	62.6	27.5	

라.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01, 서울시〉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결정도서에 별도첨부
환경 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 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칭)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121	상습침수지역으로 침수예방대책 수립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4,704		14,704	
1	-	14,704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원	12,262	공동주택
2			노원구 월계동 68-52 일원	1,256	도 로
3			노원구 월계동 490-7 일원	174	"
4			노원구 월계동 472-39 일원	909	공 원
5			노원구 월계동 50-9	103	하천구역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93.21 %	
	계획용적률	220.89 %	
	증가된 용적률	127.68 %	
증가용적률의 25%	127.68 % × 25 % = 31.92 %		
연면적 환산	12,262 m ² × 31.92 % = 3,914.04 m ²		
임대주택 확보계획	• 지상층 연면적 : 4,030.52m ² • 세대수 : 45세대 - 22평형 : 26세대(57.8%) - 32평형 : 19세대(42.2%)		

◆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3707-8215)와 노원구청 주택과(☎ 950-338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4-6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랑구 망우동 34-6일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중랑구 망우동 34-6번 외 7필지	-	증)4,950	4,950	지 하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아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6360-4778)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정비과(☎ 490-338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84-1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외 국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을 널리 홍보하고 국악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산한옥마을과 연계된 전통 국악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문화시설	-	중구 필동 84-1번지 일대	-	중)61,170	61,170	-	남산한옥마을

나.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고
신설	문화시설	중구 필동 84-1번지 일대	30%이하	75%이하	3층(12m)이하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3) 및 중구 도시관리과(전화 2260-190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4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조·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내용

지정종별	지정명칭	수량	재질	조상연대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08호)	목우자 수심결 법어	1점	목판본	1500년	서초구 방배동 906-10 201호	김형찬	

2. 문화재 지정사유
목우자 지눌(1158~1210)의 저술인 수심결(修心訣)을 비현암(丕顯閣)에서 구결(口訣)하고 신미(信眉)가 역해(譯解)하여 세조 때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을 연산군 6년(1500)에 가야산(伽倻山) 봉서사(鳳栖寺)에서 번각(飜刻)한 판본이다. 수심결은 지눌이 선수행의 요체인 마음 닦는 비결을 제시한 책으로 수심의 기초가 되는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의 성격을 밝히고 수심(修心)의 체계로서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정혜쌍수론(定慧雙修論)을 9개의 문답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수심결 뒤에 합철된 법어(法語)는 원나라 몽산덕이(蒙山德異)의 법어를 포함한

4법어(法語)로 역시 혜각존자 신미(慧覺尊者 信眉)가 역결(譯訣)한 것이고 수심결과 함께 봉서사(鳳栖寺)에서 간행하였다. 권말에 해인사 등곡(燈谷)의 발문(跋文)과 수심결의 간기(刊記)를 보면 가야산 봉서사(伽倻山 鳳栖寺)의 경민(罔敏)이 주관하고 경담(罔湛)과 윤정(胤禎)이 각수(刻手)로 참여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새긴 목판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은 간경도감(刊經都監) 번각본(飜刻本)으로 아주 정성들여 판각한 것이다. 비록 목판이 현존하고 있지만, 이 판본은 판각한 후 바로 인쇄한 듯 인쇄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한국불교 선사상(禪思想) 연구와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3. 지정일자 : 서울시보 게재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3707-9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녹지 지역	소 계	3,290,514		3,290,514	100	
	생산녹지지역	2,856,555	감)2,856,555	0	-	
	자연녹지지역	433,959	증)2,856,555	3,290,514	1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내·외발산동 일대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2,856,555	50% 이하	MRC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변경

3.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5호
마곡 R&D시티(MR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일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우리시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마곡 R&D시티(MR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MRC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일대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도시계획과(☎ 6360-4734)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139)에 관련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건설부고시 제198호('71.4.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1호('05.12.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간) 확장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건설1부(☎ 3708-2432)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산26 ~ 서울시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천호대로(방아다리길~

시계간)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B=37.5~50m,

L=3.14km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변동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3. 변경사유

가. 시공측량결과에 따른 시공선 일부변경 및 편입면적변경

나. 상일2교 건설을 위한 임시도로(일시사용) 추가(일시사용기간 : 임시도로 착수일부터 1년)

4. 변경내용 : 별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건설1부(☎ 3708-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가도 입대 용지)

가도 용지조서

(일시사용기간 : 가도착수일로부터 1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동구 상일동	428-5	대	1,398	0	14	박장현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5-707				
2		360-8	잡	24	0	2	최광수 의정부시 용현동 46 현대A 106-1706				
3		360-3	잡	496	0	166	최광수 의정부시 용현동 38 그랜드A 102-406	㈜영풍상호 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4		360-10	도	1,405	0	296	국 건설부				
5		427-4	잡	3	0	3	최광수 의정부시 용현동 38 그랜드A 102-406	㈜영풍상호 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	강동구 상일동	427-10	잡	27	0	27	최광수	의정부시 용현동 38 그랜드A 102-406	㈜영풍상호 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7		427-6	도	9	0	9	국	서울특별시				
8		427-11	잡	201	0	71	최광수	의정부시 용현동 38 그랜드A 102-406	㈜영풍상호 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9		367-5	천	2,598	0	194	국	서울특별시				
10		425-2	천	3,295	0	609	국	서울특별시				
11		426-10	답	129	0	129	국	서울특별시				
12		426-6	답	37	0	37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13		426-2	답	261	0	23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14		362-6	답	6	0	6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15		362-7	답	1,332	0	655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16		399-6	구	226	0	30	국	서울특별시				
17		423	대	264	0	2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설정	
소 계					0	2,273						

용 지 조 서(변경분)

용지(변경분)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길동	산25	임	11,754	742	807	이옥자 외5인	강남구 압구정동 297번지 현대A 127동 805호			
9		산25-1	도	3,199	1,715	1,718	국	서울특별시			
10		24	전	366	3	7	이용수	하남시 덕풍동 515-50			
11		12-5	도	9,897	498	545	국	서울특별시			
17		산16-6	임	2,355	170	196	정연만외1인	강동구 둔촌동 555 둔촌신동아A 102-2006	이삼순	송파구 방이동 154-3 위너스A 2-601	근저당
19		192-9	잡	5,957	41	44	국	한국전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0	길동	193-6	임	2,285	143	174	홍유정 외3인	송파구 풍납동 401-1 쌍용④ 102동 1706호			
21		192-10	임	839	301	325	홍유정 외3인	송파구 풍납동 401-1 쌍용④ 102동 1706호			
22		176-11	도	6,222	3,834	3,845	국	서울특별시			
27		산18-9	공	5,505	1,138	1,322	국	서울특별시			
28		2-10	전	130	21	37	국	서울특별시			
30		산18-5	임	17,349	410	539	직산씨사조침환 진상지작계손증천회	305			
31		산16-5	임	5,332	1,396	1,638	이성용	서대문구 신영동 111-2			
소 계					10,410	11,197					

지 장 건 물 조 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동/㎡)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울시 강동구 길동	191	전	화 원	파이프천막	6/645	이상은	길동 474 엘지강동④ 106-802	
2		181	답	화 원	파이프천막	4/490	조수호	성북구 삼선동 2가 393	
3		180	답	화 원	파이프천막	4/591	조수호	도봉구 수유동 188-34	
4		176-2	전	화 원	파이프천막	1/12	최복희 외5인	둔촌동 30-4 현대④ 12-608	
5		176-10	전	창 고	블럭스레트	1/4	최복희 외5인	둔촌동 30-4 현대④ 12-608	
6		3	공	휴게실	초가컨테이너 하우스	1/15	국	서울특별시	
				화장실	목 조	1/2			
7		산18-3	도	화 원	파이프천막	1/24	국	서울특별시	
8	2-9	전	화 원	파이프천막	8/649	정명숙	강남구 방배동 807-10		
9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45	목	상 가	파이프천막	1/66	강정자 외1인	상일동 주공④ 361동 104호	
10		44-2	답	화 원	파이프천막	1/275	김종진	성동구 능동 42-1	
11		산31	임	화원, 상가	파이프천막	14/2000.5	유인호 외1인	중구 신당동 377-2	
12		60	전	화 원	파이프천막	1/211.5	유인호 외1인	중구 신당동 377-2	
13		산31-1	임	화 원	파이프천막	1/211.5	유인호 외1인	중구 신당동 377-2	
14		65-1	도	화원, 상가	파이프천막	13/1710	국	서울특별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동/㎡)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5		445	잡	화 원	파이프천막	1/410	강릉유씨대중회	324	
16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59-3	도	사무실	조 립 식 (철재+판넬)	1/30	국	서울특별시	
				화 원	파이프천막	1/186			
17		435-1	천	화 원	파이프천막	1/171	국	서울특별시	
18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58-2	학	창 고	벽돌슬라브	1/48	국	서울특별시(교육감)	
				놀이기구	철봉외8EA	9EA			
				은행나무	H:10	13주			
				느티나무	H:10	1주			
				향나무	H:3	2주			
					H:8	1주			
				자귀나무	H:6	1주			
				참죽나무	H:10	1주			
목 련	H:9	1주							
19		360-9	잡	화 원	파이프천막	1/308	황성준	하남시 망월동 381-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건설부고시제235호(1977.12.3)로 도시
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결정된
성북구 성북지구, 수유지구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
관지구)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경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경관지구 (성북지구)	자연 경관지구	성북, 동성, 명륜, 혜화동 일대	1,764,414	1977.12.3 (건설부고시제235)	
변 경	경관지구 (성북지구)	자연 경관지구	성북, 동성, 명륜, 혜화동 일대	1,678,420 (감)85,994		성북구 돈암동 538, 319번지일대 (감)85,994㎡
기 정	경관지구 (수유지구)	자연 경관지구	우이, 수유, 정릉동 일대	1,461,229	1977.12.3 (건설부고시제235)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변 경	경관지구 (수유지구)	자연 경관지구	우이, 수유, 정릉동 일대	1,455,545 (감)5,684		성북구 정릉동 921-11호일대 (증)1,700㎡
						성북구 정릉3동 710-81호일대 (감)7,384㎡

다. 변경사유서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관지구 (성북지구)	성북구 돈암동 538, 319번지일대 - 자연경관지구 일부해제(85,994㎡)	경관보호 대상인 주요 녹지축 및 수경축과 분리 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함
경관지구 (수유지구)	성북구 정릉동 921-11호 일대 - 자연경관지구 추가지정(1,700㎡)	도시의 경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추가 지정
	성북구 정릉3동 710-81호 일대 - 자연경관지구 일부해제(7,384㎡)	경관보호 대상인 주요 녹지축 및 수경축과 분리 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함

라.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6360-4742)와 성북구 도시개발과(☎ 920-365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0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 상 : 서울시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및 사육되고 있는 소

4. 기 간 : 2006.4.1~4.15.

5. 접종장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6. 기타사항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문 의 처

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

☎ 6321-4067

나. 각 자치구 지역경제과, 산업환경과, 산업경제과, 환경산업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0조제1항,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 결정

구분	구역명 (구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57,850,712.9	감) 474,631	157,376,081.9	
해제	중량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감) 50,632		안새우개·새우개
해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감) 68,218		새동네·안골
해제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감) 32,845		개미마을
해제	서초구	우면동 211번지 일대		감) 62,163		성·형촌
해제		신원동 195-2번지 일대		감) 78,580		청룡·원터
해제		신원동 497-8번지 일대		감) 98,677		새원·신원본
해제		내곡동 165-1번지 일대		감) 83,516		홍씨·능안·안골

2) 용도지역 변경 결정

구 분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녹지 지역	소 계	474,631	감) 322,936	151,695	32%	
	자연녹지지역	474,631	감) 322,936	151,69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취락 용도지역 유지
주거 지역	소 계	-	증) 322,936	322,936	68%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322,936	322,936		정비된 취락 적정 용도지역 부여 (서초구 4개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안새우개·새우개	중량구 신내동 282번지 일원	-	증) 50,632	50,632	
신 설	새동네·안골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	증) 68,218	68,218	
신 설	개미마을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원	-	증) 32,845	32,845	

4)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우리시의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집단취락 7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과거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된 서초구 소재 4개 취락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강북지역 취락 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임

나. 도면 : 생략(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및 자치구청 도시정비과(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지형도면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7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9항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규정에 따라 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써 같음함.

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전화 6360-4733),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90-3386),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전화 2289-1801),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전화 330-1386),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전화 570-6385)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3호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16일

서울특별시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작동 5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장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 규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 일대	48,251	-

다.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251	-	48,251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327	감)18,327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1,769	감) 3,471	18,298	37.9	10층 까지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8,155	증)21,798	29,953	62.1	15층 까지 완화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48,251		100.0	-	
도시계획 시 설	소 계		10,424		21.6	-
	도 로	기 존	602	7,338	15.2	존치 및 조성
		계 획	6,736			조성 후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2,705		5.6	조성 후 기부채납
	공공공지		317		0.7	조성 후 기부채납
	학 교		64		0.1	대지교환
획 지	소 계		37,827		78.4	-
	획지1 (공동주택용지)		37,827		78.4	-
기 타	공공보행통로		폭 : 4m, 연장 : 90m		-	산18-6번지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 진입로 확보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중 점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440	동작동 69-4 동작대로	동작동 산10-1 동작중	일반 도로	'73.4.20	기 결정되어 있는 대상지 내부 소로 폐도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80	동작동 63-4	동작동 58-24	일반 도로	'73.4.20	기 결정되어 있는 대상지 내부 소로 폐도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396	동작동 64-9	사당동 43-2	일반 도로	'73.4.20	기점 변경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236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150	동작동 58-108	동작동 58-127	일반 도로	'73.4.20	기점 변경
변경	소로	3	-	4	국지 도로	82	동작동 58-123	동작동 58-127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	12	국지 도로	266	동작동 57-12 동작대로	동작동 58-24	일반 도로	-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303	동작동 58-65 중로3-	동작동 61-49	일반 도로	-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69	동작동 66-22 동작대로	동작동 65-4 현충묘지공원	일반 도로	-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신설	소로	3	-	6	국지 도로	80	동작동 58-24 중로3-	동작동 58-122	일반 도로	-	도로 확폭 및 기부채납

2) 공원 및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 원	어린이공원	동작구 동작동 58-10일대	-	증)2,705	2,705	어린이공원 신설 후 기부채납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동작구 동작동 65-2일대	-	증) 317	317	공공공지 신설 후 기부채납

3) 학교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교	고등학교	동작구 동작동 산4-2	35,690	-	35,690	정금마을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따른 경문고등학교 시설부지의 일부를 대지교환에 의해 면적 변경 없이 선형 변경 (대지교환면적 64㎡, 동작동 58-121)
변경	학교	고등학교	동작구 동작동 산4-2	35,690	-	35,690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법정 면적	계획 면적	비고
신 설	근린생활시설	동작동 57-15	3,996.0㎡ 미만	3,962.1㎡	별도분양
	관리사무실	동작동 64-40	40.8㎡ 이상	62.2㎡	-
	노 인 정		71.6㎡ 이상	96.4㎡	-
	주민공동시설		86.6㎡ 이상	120.6㎡	-
	보육시설		해당함	96.4㎡	-
	문 고		해당함	36.0㎡	-
	어린이놀이터		동작동 58-1, 61-23	866.0㎡ 이상	910.0㎡
	주민운동시설	동작동 59-54	424.5㎡ 이상	540.0㎡	-
	휴 게 소	동작동 61-39, 65-4	2개소 이상	2개소	-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동작동 58-1일대 (정금마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48,251	획지1 (공동주택 용지)	37,827	동작동 58-1일대	211	-	-	211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 지구 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층)
	명 칭	면적(m ²)					
신 규	획지1 (공동주택용지)	37.827	동작동 58-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	213.1	10층 이하 1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666세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전용면적 137.42m ² 이하 (52 평형) -전용면적 60~85m ² 규모의 건설비율: 51.5% (343 세대) -전용면적 60m ²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23.9% (159 세대)				

※ 계획용적률·세대수에 임대주택도 포함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층)
명 칭	면적(m ²)	명 칭	면적(m ²)					
동작동 58-1일대 (정금마을)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48,251	획지1 (공동 주택공지)	37.827	동작동 58-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9 이하	213.1 이하	10층 이하 15층 이하

※ 계획용적률·세대수에 임대주택도 포함

2)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 동 주 택				비 고
		합계	60m ² 이하	60~85m ² 이하	85m ² 초과	
인구수 (인)	현 황	1,048	-	-	-	
	계 획	1,798	429	926	443	2.7인/세대
세대수 (세대)	현 황	391	-	-	-	275 세대
	계 획	666	159	343	164	증가

※ 상기평형배분은 인허가시 조정될 수 있음

자.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¹⁾

구 분	계 획 내 용 (요약)	비 고
도시경관	·대상지북측 현충공원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배치 및 높이계획으로 경관조망과 개방감 증대 ·단지 남측으로 저층아파트 배치 - 인접 주거지역의 현충공원에 대한 조망성 고려	-
환경보전	·현충공원 구릉지 지역으로 공동주택 사업시 최소한의 지형변형의 유도를 위한 계획 수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변동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는 어린이공원, 공동주택단지내 녹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	환경성 검토결과에 별도 첨부

구분	계 획 내 용(요약)	비 고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산사태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현충공원과의 경계부에 옹벽설치와 우수합류 지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수립 	환경성 검토결과에 별도 첨부

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가로변(동작대로변) : 3M 	-간선가로변의 가로경관 개선 및 근린생활시설 전면부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기위해 폭 3m의 건축한계선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부지경계(도시계획도로) : 3M 	-단지 진입도로의 연결부 경관의 보호와 양호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 변으로 폭 3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카.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연면적(m ²)	용적률(%)	계 획 내 용
기 준	35,356.7	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용적률의 25% : $119.6 \times 0.25 = 29.9 \%$ 임대주택 확보 연면적 : $37,827 \times 0.299 = 11,310.3\text{m}^2$
계 획	80,590.3	2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규모 : 23평형 (90세대), 34평형 (37세대) = 총 127세대 임대주택 계획 연면적 : $(79.29 \times 90) + (113.63 \times 37) = 11,340.4\text{m}^2$

타.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권리처분 방법에 의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275세대 증가	-

■ 관 계 서 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3707-8247) 와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4호
 왕십리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I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6호(2004.5.3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I(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왕십리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I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신규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100,658	

나. 정비계획

구분	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합계		100,658	10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8,410	8.36	
	도로	3,002	2.99	6m→12m확폭
	공원	2,900	2.88	신설
	녹지	2,508	2.49	신설
택지	소계	92,248	91.64	
	택지(1)	85,928	85.37	공동주택(조합/임대)
	택지(2)	5,500	5.46	학교(초등학교)
	택지(3)	820	0.81	종교부지(교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위치		비고
	등급	세분류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507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33	하왕십리동 286-32	상왕십리동 8-5	변경(확폭)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333	하왕십리동 286-32	상왕십리동 8-5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296	상왕십리동 8-5	상왕십리동 210-1	연결누지+ 도로+연결누지 (23.5m)
변경	소로	3	1	7.5	국지도로	일반도로	296	상왕십리동 8-5	상왕십리동 210-1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일반도로	377	상왕십리동 210-1	홍익동 590	미장로 (홍익동457 부분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	20	보조간선	일반도로	377	상왕십리동 210-1	홍익동 590	
폐지	소로	3	40	6	국지도로	일반도로	440	하왕십리동 453-1	홍익동 592	
폐지	소로	3	15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25	하왕십리동 296	하왕십리동 396-1	
폐지	소로	3	4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70	하왕십리동 339-2	하왕십리동 548-2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시설명	세분류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하왕십리동 339-67번지	1,109.30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하왕십리동 560번지 일대	2,900	
신설	녹지	연결녹지	하왕십리동 454번지 일대	2,508	2004.5.31 고시된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시설명 변경 (공공공지→녹지)

3)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시설명	세분류			
신 설	학 교	초등학교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대	5,500	택지(2)

4)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시설명	세분류			
폐 지	주차장	노외주차장	하왕십리동 270-1번지	780	
폐 지	주차장	노외주차장	하왕십리동 544-1번지	234	

라.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복지)구 분	위 치	면적 (㎡)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	주된용도
신설	택지(1)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85,928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274,523.32	공동주택 (조합/임대)
신설	택지(2)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대	5,500	50이하	250이하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학교(초등학교)
신설	택지(3)	하왕십리동 376번지 일대	820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종교부지(교회)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주택규모 이하) ※ 115㎡이상 규모는 44세대로 기존 종전규모 이하임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80%이상 - (81.38% 적용)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상 : 40%이상 - (41.10% 적용)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평형	전용면적(m ²)	세대수	비율(%)			
	53평형	144.99	44	2.39	18.62		
	45평형	114.99	299	16.23			
	33평형	84.99	742	40.28	41.10		
	24평형	59.99	424	23.02			
	16평형	36.00	333	18.08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규정에 따름					
※ 정비사업계획(세부개발계획)(안)의 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인까지 정비사업계획(세부개발계획)의 범위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							
2)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위 치	면 적 (m ²)	정비구분(동)				
			대상	존치	개수	철거	철거후 신축
기존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100,658	699	-	-	699	1,842세대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식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67세대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I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I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I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100,440	증)218	100,658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100,440	100	100,658	100	토지조서 작성에 따른 단순면적 정정(증 218m ²)	
주거 지역	소 계	100,440	100	100,658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440	100	100,658	100		
다. 기반시설 결정조서(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같음)							

라. 획지계획 변경 결정조서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구 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특별계획 구역 I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100,440	공동건축 학교 공원 도로	특별계획 구역 I	택지(1)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85,928	공동주택 (조합/임대)
					택지(2)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대	5,500	학교 (초등학교)
					택지(3)	하왕십리동 376번지 일대	820	종교부지 (교회)
계				계		92,248		

마.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 폐 율	
특별계획 구역 I	택지(1)	200%	220%	25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택지(2)	250%	-	-	50%이하
	택지(3)	200%	220%	25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계획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 용 기 준	
			기 정	변 경
혼합형 (규제)	다양한 주거형태의 조화유도	내부순환가로공원 비깅쪽 (탑상형/주상복합제외구간)	다양한 형태(탑상형, 중정형) 및 높이유도	다양한 형태 및 높이 유도

3.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가. 왕십리뉴타운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결정도

나. 왕십리뉴타운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사업계획(건축개요/배치도)

※ 왕십리뉴타운 특별계획구역 I 세부개발계획 같음

다.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라.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1반/☎ 2171-2645), 성동구 주택과(☎ 2286-5603) 및 성동구 도시정비과(☎ 2286-557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4호

시흥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건축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27조 규정에 의하여 『시흥대로 등 10개 가
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시흥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역 현황

대상가로명	구 간	연장(m)	면적(m ²)	관 련 지 번
시흥대로	대림~홍우사거리	6,000	157,200	대림동 948-1일대, 신대방동 584-3일대, 구로동 1126-1일대, 신림동 1644일대, 가산동 143-1일대, 독산동 953일대, 시흥동 113-15일대
대방로	대방역~대림사거리	2,000	52,400	대방동 342-5일대, 신길동 1253일대
구의로	성동교앞~잠실교앞	5,900	154,600	성수동 1가 656-302일대, 성수동 2가301-1일대, 화양동 50-1일대, 노유동 23-1일대, 자양동 226-1일대, 구의동 246-8일대
광나루길	왕십리로터리~광장사거리	7,500	196,600	성수동 1가 671-8일대, 성수동 2가 284-1일대, 모진동 178-2일대, 구의동 234-1일대, 광장동 530-3일대
망우로	시조사~장미아파트	5,700	149,400	망우동 133-7일대, 상봉동 100-30일대, 중화동 209-1일대, 휘경동 71-1일대
가마산길	도림천변~구청사거리	900	23,600	구로동 426-6일대
백제고분로	올림픽공원~신천역사거리	2,900	76,200	잠실동 294일대, 석촌동 14-5일대, 송파동 86일대, 방이동 108일대
둔촌로	훈련원~올림픽공원	5,900	154,600	명일동 304-1일대, 천호동 24-1일대, 길동 320-1일대, 성내동 380일대, 둔촌동 437일대
상도동길	신길5동~상도역삼거리	3,800	99,600	신길동 2363일대, 대방동 398-1일대, 상도동 328-1일대
화랑로	하월곡삼거리~화랑대역	4,000	104,800	공릉동 609-1일대, 월계동 46-1일대, 장위동 44-7일대, 석관동 173-1일대, 월곡동 16-1일대

※ 연장 및 면적은 전체 가로구역별 높이 계획 범위 기준임

(2)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내역

① 시흥대로

연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W-01	A	대림동 948-1번지 일대	80	96	-	-		
2		B	대림동 952-12번지 일대	80	96	-	-		
3		C	대림동 960-4번지 일대	80	96	-	-		
4		D	대림동 963-5번지 일대	80	96	-	-		
5		E	대림동 962-4번지 일대	80	96	-	-		
6	E-01	F	신대방동 565-14번지 일대	80	96	-	-		
7		G	신대방동 586-2번지 일대	80	96	-	-		
8		H	신대방동 586-7번지 일대	80	96	-	-		
9		I	신대방동 607-5번지	80	96	-	-		
10	W-02	A	대림동 978-13번지 일대	80	96	-	-		
11		B	대림동 989-1번지 일대	80	96	-	-		
12		C	대림동 990-1번지 일대	80	96	18	22		
13		D	대림동 990-80번지 일대	80	96	24	28		
14	E-02	E	신대방동 607-9번지 일대	80	96	-	-		
15		F	신대방동 685번지 일대	80	96	-	-		
16	W-03	A	대림동 993-57번지 일대	80	96	24	28		
18	W-04	A	구로동 1126-1번지 일대	80	107	23	31		
19		B	구로동 1131-1번지 일대	80	107	23	31		
20	E-03	C	신림동 1666번지 일대	80	96	23	23		
21		D	신림동 1666-3번지 일대	80	96	23	23		
22		E	신림동 1666-14번지 일대	80	96	23	23		
23		F	신림동 1666-29번지 일대	-	-	23	23		
24	W-05	A	구로동 1132-1번지 일대	80	107	18	22		
25		B	구로동 1132-49번지 일대	80	107	18	22		
26		C	독산동 143-1번지 일대	80	107	28	37		
27	E-04	A	신림동 1667번지 일대	80	96	24	29		
28		B	독산동 953-1번지 일대	80	96	24	29		

연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29		C	독산동 954번지 일대	80	96	24	29		
30	W-06	A	독산동 145-1번지 일대	80	107	28	37		
31		B	독산동 146-1번지 일대	80	107	28	37		
32		C	독산동 150-1번지 일대	80	107	28	37		
33		D	독산동 150-10번지 일대	80	107	28	37		
34	E-05	E	독산동 967번지 일대	80	96	24	29		
35		F	독산동 983-1번지 일대	80	96	24	29		
36	W-07	A	독산동 152-1번지 일대	80	107	28	37		
37		B	독산동 288-1번지 일대	80	107	28	37		
38		C	독산동 289-1번지 일대	80	107	28	37		
39	E-06	D	독산동 159-1번지 일대	80	96	24	29		
40		E	독산동 287-1번지 일대	80	96	24	29		
41		F	독산동 286-1번지 일대	80	96	24	29		
42	W-08	A	독산동 291-1번지 일대	80	107	28	37		
43	W-09	A	독산동 1009-28번지 일대	80	107	19	23		
44		B	독산동 1009-64번지 일대	80	107	19	23		
45	E-07	C	독산동 1054번지 일대	80	96	19	23		
46	W-10	A	독산동 1011-11번지 일대	80	107	19	23		
47	E-08	B	독산동 1055번지 일대	80	96	19	23		
48		C	독산동 1059번지 일대	80	96	19	23		
49	W-11	A	시흥동 113-14번지 일대	80	107	19	23		
50		B	시흥동 108-8번지 일대	80	107	-	-		
51		C	시흥동 108-60번지 일대	80	107	19	23		
52	E-09	D	독산동 1066번지 일대	80	96	19	23		
53		E	독산동 1077번지 일대	80	96	19	23		
54		F	독산동 1077-22번지 일대	80	96	19	23		
55	E-10	A	시흥동 870번지 일대	80	96	19	23		
56		B	시흥동 870-18번지 일대	80	96	19	23		

연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57	W-12	A	시흥동 992-47번지	80	96	-	-		
58	E-11	B	시흥동 890번지 일대	80	96	28	34		
59	W-13	A	시흥동 991번지 일대	80	96	19	26		
60		B	시흥동 987번지 일대	80	96	19	26		
61	E-12	C	시흥동 903번지 일대	80	96	19	23		
62		D	시흥동 904번지 일대	80	96	19	23		
63	W-14	A	시흥동 986번지 일대	80	96	19	26		
64		B	시흥동 985번지 일대	80	96	-	-		
65		C	시흥동 985-12번지 일대	80	96	-	-		
66	W-15	A	시흥동 984-37번지 일대	80	96	-	-		
67	W-16	A	시흥동 984-13번지 일대	80	96	-	-		
68		B	시흥동 984-28번지 일대	80	96	-	-		
69		C	시흥동 983-1번지 일대	80	96	-	-		
70		D	시흥동 982-4번지 일대	80	96				

② 대방로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W-01	A	신길동 1253번지 일대	60	72	26	32		
2		B	신길동 1196번지	60	72	-	-		
3	E-01	C	대방동 342-5번지	60	72	-	-		
4	W-02	A	신길동 1127번지 일대	60	72	22	27		
5		B	신길동 869번지 일대	60	72	-	-		
6		C	신길동 855번지 일대	60	72	22	27		
7		D	신길동 829-1번지 일대	60	72	22	27		
8	E-02	E	대방동 383-17번 일대	60	72	22	27		
9		F	대방동 384-1번지 일대	60	72	22	27		
10		G	대방동 385-1번지 일대	60	72	22	27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산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1	W-03	A	산갈동 855번지 일대	60	72	20	24		
12		B	산갈동 696번지 일대	60	72	20	24		
13		C	산갈동 631번지 일대	60	72	20	24		
14		D	산갈동 626번지 일대	60	72	20	24		
15	E-03	E	대방동 389-1번지 일대	60	72	25	30		

③ 구의로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산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N-01	A	성수동 1가 656-1683번지 일대	80	96	-	-		
2		B	성수동 1가 656-805번지 일대	80	96	-	-		
3	S-01	C	성수동 1가 656-869번지 일대	80	96	-	-		
4		D	성수동 1가 8-55번지 일대	80	96	-	-		
5		E	성수동 1가 8-7번지 일대	80	96	-	-		
6		F	성수동 1가 8-14번지 일대	80	96	-	-		
7		G	성수동 1가 8-44번지 일대	80	96	-	-		
8	N-02	A	성수동 1가 656-281번지 일대	80	96	-	-		
9		B	성수동 1가 14-1번지 일대	80	96	39	52		
10		C	성수동 2가 300-56번지 일대	80	96	39	52		
11	S-02	D	성수동 1가 656-766번지 일대	80	96	-	-		
12		E	성수동 1가 14-33번지 일대	80	96	-	-		
13		F	성수동 1가 14-42번지 일대	80	96	-	-		
14		G	성수동 1가 14-53번지 일대	80	96	-	-		
15		H	성수동 1가 14-64번지 일대	80	96	-	-		
16		I	성수동 2가 301-33번지 일대	80	96	39	52		
17	N-03	A	성수동 2가 300-39번지 일대	80	96	39	52		
18		B	성수동 2가 300-63번지 일대	80	96	39	52		
19	S-03	C	성수동 2가 302-5번지 일대	80	96	39	52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20		D	성수동 2가 314-1번지 일대	80	96	39	52		
21	N-04	A	성수동 2가 300-1번지 일대	80	96	39	52		
22		B	성수동 2가 277-60번지 일대	80	96	41	55		
23		C	성수동 2가 277-124번지 일대	80	96	41	55		
24	S-04	D	성수동 2가 315-71번지 일대	80	96	39	52		
25		E	성수동 2가 315-1번지 일대	80	96	39	52		
26		F	성수동 2가 317-1번지 일대	80	96	41	55		
27		G	성수동 2가 273-17번지 일대	80	96	41	55		
28	N-05	A	성수동 2가 277-58번지 일대	80	96	41	55		
29		B	성수동 2가 277-60번지 일대	80	96	41	55		
30		C	성수동 2가 277-124번지 일대	80	96	41	55		
31	S-05	D	성수동 2가 273-16번지 일대	80	96	41	55		
32		E	성수동 2가 273-1번지 일대	80	96	41	55		
33		F	성수동 2가 276-4번지 일대	80	96	41	55		
34	N-06	A	성수동 2가 19-12번지 일대	80	96	41	55		
35		B	화양동 50-1번지 일대	80	96	20	24		
36		C	화양동 49-1번지 일대	80	96	20	24		
37	S-06	D	성수동 2가 19-14번지 일대	80	96	41	55		
38		E	노유동 23-1번지 일대	80	96	21	25		
39		F	노유동 17-1번지 일대	80	96	21	25		
40	N-07	A	화양동 48-19번지 일대	80	96	20	24		
41		B	화양동 48-17번지	80	96	20	24		
42	S-07	C	노유동 8-3번지 일대	80	96	21	25		
43	N-08	A	자양동 226-28번지 일대	80	96	19	23		
44		B	자양동 226-9번지 일대	80	96	19	23		
45	S-08	C	자양동 227-336번지 일대	80	96	15	18		
46		D	자양동 227-6번지 일대	80	96	15	18		
47		E	자양동 227-31번지 일대	80	96	15	18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48	N-09	A	자양동 224-23번지 일대	80	96	19	23		
49		B	자양동 773번지 일대	80	96	19	23		
50		C	자양동 773-4번지 일대	80	96	19	23		
51		D	자양동 774번지 일대	80	96	19	23		
52	S-09	E	자양동 794번지 일대	80	96	19	23		
53		F	자양동 798번지 일대	80	96	19	19		
54		G	자양동 223-1번지 일대	80	96	19	23		
55		H	자양동 222-7번지 일대	80	96	19	23		
56		I	자양동 222-1번지 일대	80	96	19	23		
57		J	자양동 221-1번지 일대	80	96	19	23		
58	N-10	A	구의동 243-6번지 일대	-	-	24	32		
59		B	구의동 243-7번지 일대	80	107	24	35		
60	S-10	C	자양동 781-4번지 일대	80	96	24	29		
61	N-11	A	구의동 244-20번지 일대	80	96	24	29		
62		B	구의동 245-7번지 일대	80	96	24	29		
63		C	구의동 245-1번지 일대	80	96	24	29		
64		D	구의동 216-8번지 일대	80	96	24	29		
65	S-11	E	구의동 587-3번지 일대	80	96	24	29		
66	S-12	A	구의동 589-10번지 일대	80	96	24	29		
67	N-12	B	구의동 546-4번지 일대	80	96	24	29		

④ 광나루길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S-01	A	성수동 1가 671-183번지 일대	50	60	-	-		
2		B	성수동 1가 656-518번지 일대	50	60	-	-		
3		C	성수동 1가 656-1681번지 일대	50	60	-	-		
4		D	성수동 1가 656-1589번지 일대	50	60	-	-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5	S-02	A	성수동 1가 13-1번지 일대	50	60	27	36		
6		B	성수동 1가 13-457번지 일대	50	60	27	36		
7		C	성수동 1가 13-11번지 일대	50	60	27	36		
8	S-03	A	성수동 2가 284-7번지 일대	50	60	20	27		
9		B	성수동 2가 299-96번지 일대	50	60	18	24		
10		C	성수동 2가 299-72번지 일대	50	60	18	24		
11		D	성수동 2가 299-58번지 일대	50	60	18	22		
12		E	성수동 2가 299-20번지 일대	50	60	20	27		
13	N-01	A	송정동 81-7번지 일대	50	60	-	-		
14	S-04	B	성수동 2가 289-1번지 일대	50	60	18	24		
15		C	성수동 2가 289-201번지 일대	50	60	18	22		
16		D	성수동 2가 289-181번지 일대	50	60	18	24		
17		E	성수동 2가 289-193번지 일대	50	60	18	22		
18		F	성수동 2가 289-138번지 일대	50	60	18	24		
19		G	성수동 2가 289-146번지 일대	50	60	18	22		
20		H	성수동 2가 289-157번지 일대	50	60	18	24		
21		I	성수동 2가 289-150번지 일대	50	60	18	22		
22		J	성수동 2가 289-167번지 일대	50	60	20	27		
23		K	성수동 2가 277-8번지 일대	50	60	45	60		
24	S-05	A	성수동 2가 280-30번지 일대	50	60	45	60		
25		B	성수동 2가 280-14번지 일대	50	60	45	60		
26		C	성수동 2가 281번지 일대	50	60	45	60		
27	N-02	A	송정동 66-262번지 일대	50	60	15	18		
28		B	송정동 66-49번지 일대	50	60	15	18		
29		C	구의동 68-6번지 일대	50	60	15	18		
30	S-06	D	성수동 2가 281-4번지 일대	50	60	45	60		
31		E	성수동 2가 281-11번지 일대	50	60	45	60		
32		F	성수동 2가 281-18번지 일대	50	60	45	60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33	S-07	A	모진동 199-1번지 일대	50	60	18	22		
34		B	모진동 195-9번지 일대	50	60	18	22		
35	S-08	A	모진동 167-1번지 일대	50	60	18	22		
36		B	모진동 137-1번지 일대	50	60	18	22		
37	N-03	A	구의동 80-32번지 일대	50	60	22	27		
38		B	구의동 68-27번지 일대	50	60	22	27		
39		C	구의동 68-6번지 일대	50	60	18	22		
40		D	구의동 67-19번지 일대	50	60	18	22		
41		E	구의동 67-6번지 일대	50	60	18	22		
42	S-09	F	구의동 633-1번지 일대	50	60	18	22		
43		G	구의동 253-43번지 일대	50	60	18	22		
44		H	구의동 253-31번지 일대	50	60	18	22		
45		I	구의동 253-1번지 일대	50	60	18	22		
46		J	구의동 234-9번지 일대	50	60	21	26		
47	N-04	A	구의동 66-82번지 일대	50	60	22	27		
48		B	구의동 66-59번지 일대	50	60	22	27		
49		C	구의동 66-54번지 일대	50	60	22	27		
50	S-10	D	구의동 233-2번지 일대	50	60	21	26		
51		E	구의동 230-1번지 일대	50	60	21	26		
52		F	구의동 229-1번지 일대	50	60	21	26		
53		G	구의동 229-45번지 일대	50	60	21	26		
54	S-11	A	구의동 228-1번지 일대	50	60	21	26		
55		B	구의동 203-1번지 일대	50	60	21	26		
56	N-05	A	광장동 530-72번지 일대	50	60	22	27		
57		B	광장동 530-13번지 일대	50	60	18	22		
58		C	광장동 530-24번지 일대	50	60	22	27		
59	S-12	D	구의동 202-1번지 일대	50	60	21	26		
60		E	구의동 202-8번지 일대	50	60	21	26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61		F	구의동 201-2번지 일대	50	60	21	26		
62		G	구의동 201-10번지 일대	50	60	21	21		
63		H	구의동 20-1번지 일대	50	60	21	26		
64		I	구의동 199-1번지 일대	50	60	21	26		
65	N-06	A	광장동 425-2번지 일대	50	60	22	27		
66	S-13	B	광장동 515-3번지 일대	50	60	-	-		
67		C	광장동 470-3번지 일대	50	60	-	-		
68		D	광장동 570번지 일대	50	60	22	27		
69	N-07	A	광장동 231-1번지 일대	50	60	-	-		

⑤ 망우로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N-01	A	망우동 135-1번지 일대	80	96	23	28		
2		B	망우동 134-1번지 일대	80	96	23	28		
3		C	망우동 134-30번지 일대	80	96	23	28		
4		D	망우동 147-1번지 일대	80	96	23	28		
5		E	망우동 209-1번지 일대	80	96	23	28		
6	S-01	F	망우동 133-7번지 일대	80	96	22	26		
7		G	망우동 133-11번지 일대	80	96	22	26		
8		H	망우동 133-19번지 일대	80	96	22	26		
9		I	망우동 133-33번지 일대	80	96	22	26		
10		J	망우동 149-1번지 일대	80	96	22	26		
11		K	망우동 207-1번지 일대	80	96	28	34		
12	N-02	A	망우동 340-1번지 일대	80	96	23	28		
13		B	망우동 340-16번지 일대	80	96	23	28		
14		C	망우동 358-2번지 일대	80	96	23	28		
15	S-02	D	망우동 202-1번지 일대	80	96	28	34		
16		E	망우동 202-9	80	96	28	34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7		F	망우동 202-10번지 일대	80	96	28	34		
18		G	망우동 359-1번지 일대	80	96	28	34		
19	N-03	A	망우동 487-1번지 일대	80	96	26	32		
20		B	망우동 488-16번지 일대	80	96	26	32		
21	S-03	C	망우동 486-1번지 일대	80	96	25	30		
22		D	망우동 470-1번지 일대	80	96	25	30		
23		E	망우동 470-16번지 일대	80	96	25	30		
24	N-04	A	상봉동 100-30번지 일대	80	96	-	-		
25		B	상봉동 116-56번지 일대	80	96	-	-		
26		C	상봉동 116-16번지 일대	80	96	-	-		
27	S-04	D	상봉동 115-12번지 일대	80	96	19	23		
28		E	상봉동 115-14번지 일대	80	96	19	23		
29		F	상봉동 115-35번지 일대	-	-	19	19		
30		G	상봉동 115-45번지 일대	-	-	19	19		
31		H	상봉동 115-50번지 일대	80	96	19	23		
32		I	상봉동 118번지 일대	80	96	19	23		
33	N-05	A	망우동 209-1번지 일대	80	96	21	26		
34		B	중화동 210번지 일대	80	96	21	26		
35		C	중화동 413-8번지 일대	80	96	21	26		
36	S-05	D	상봉동 136-1번지 일대	80	96	21	26		
37		E	상봉동 136-16번지 일대	80	96	21	26		
38		F	상봉동 474-9번지 일대	80	96	21	26		
39	N-06	A	휘경동 114-9번지 일대	80	96	-	-		
40		B	휘경동 112-41번지 일대	80	96	-	-		
41		C	휘경동 146-76번지 일대	80	96	-	-		
42		D	휘경동 72-6번지 일대	80	96	-	-		
43		E	휘경동 42-33번지 일대	80	96	-	-		
44	S-06	F	휘경동 34-11번지 일대	80	96	-	-		
45	N-07	A	휘경동 77-2번지 일대	80	96	-	-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46		B	휘경동 77-8번지 일대	80	96	-	-		
47		C	휘경동 77-6번지 일대	80	96	-	-		
48	S-07	D	휘경동 33-3번지 일대	80	96	-	-		
49	S-08	A	휘경동 276-1번지 일대	80	96	-	-		
50		B	휘경동 269-20번지 일대	80	96	-	-		
51		C	휘경동 278번지 일대	80	96	-	-		
52		D	휘경동 281-78번지 일대	80	96	-	-		
53	N-08	A	휘경동 317-1번지 일대	80	96	-	-		
54	S-09	B	휘경동 281-1번지 일대	80	96	-	-		
55		C	휘경동 317-61번지 일대	80	96	-	-		
56		D	휘경동 312-9번지 일대	80	96	-	-		
57	N-09	A	휘경동 343-9번지 일대	80	96	-	-		
58	S-10	B	휘경동 343-31번지 일대	80	96	-	-		

⑥ 가마산길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N-01	A	구로동 416-37번지 일대	50	60	-	-		
2		B	구로동 426-99번지 일대	50	60	-	-		
3		C	구로동 434-1번지 일대	50	60	-	-		
4	S-01	D	구로동 426-167번지 일대	50	60	-	-		
5		E	구로동 80-1번지 일대	50	60	-	-		
6	N-02	A	구로동 437번지 일대	50	60	19	23		
7	S-02	B	구로동 81번지 일대	50	60	19	23		
8		C	구로동 82번지 일대	50	60	19	23		
9		D	구로동 83번지 일대	50	60	19	23		
10		E	구로동 86번지 일대	50	60	19	23		
11	N-03	A	구로동 100-6번지 일대	50	73	30	44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2		B	구로동 100번지 일대	50	60	19	23		
13		C	구로동 103번지 일대	50	73	30	44		
14		D	구로동 104번지 일대	50	67	30	44		
15	S-03	E	구로동 98번지 일대	80	93	30	44		
16		F	구로동 97-1번지 일대	50	90	30	44		
17	N-04	A	구로동 106번지 일대	50	67	30	44		

⑦ 백제고분로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S-01	A	잠실동 294번지 일대	60	72	25	30		
2	N-01	A	잠실동 228번지 일대	60	72	25	30		
3	S-02	B	잠실동 313번지 일대	60	72	25	30		
4		C	잠실동 314번지 일대	60	72	25	30		
5	N-02	A	잠실동 234번지 일대	60	72	25	30		
6	S-03	B	잠실동 335번지 일대	60	72	25	30		
7	N-03	A	삼전동 9번지 일대	60	80	24	32		
8	S-04	B	삼전동 48번지 일대	60	72	24	29		
9		C	삼전동 49번지 일대	60	72	24	29		
10	N-04	A	삼전동 101번지 일대	60	72	24	29		
11	S-05	B	삼전동 72-1번지 일대	60	72	24	29		
12	N-05	A	삼전동 133번지 일대	60	72	24	29		
13		B	석촌동 14-5번지 일대	60	72	24	29		
14	S-06	C	삼전동 180번지 일대	60	72	24	29		
15		D	석촌동 210-1번지 일대	60	72	24	29		
16	N-06	A	석촌동 15번지 일대	60	72	24	29		
17		B	석촌동 60번지 일대	60	72	24	29		
18	S-07	C	석촌동 235번지 일대	60	72	24	29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9		D	석촌동 246번지 일대	60	72	24	29		
20	N-07	A	석촌동 77-1번지 일대	60	72	24	29		
21		B	석촌동 173번지 일대	60	72	24	29		
22	S-08	C	석촌동 246-7번지 일대	60	72	24	29		
23		D	석촌동 265-28번지 일대	60	72	24	29		
24		E	석촌동 285-4번지 일대	60	72	24	29		
25	S-09	A	석촌동 287-2번지 일대	-	-	24	29		
26		B	송파동 86-3번지 일대	-	-	24	29		
27	N-08	A	송파동 20번지 일대	60	72	22	27		
28		B	송파동 47번지 일대	60	72	22	27		
29	S-10	C	송파동 134번지 일대	60	72	22	27		
30	N-09	A	송파동 48번지 일대	60	72	22	27		
31		B	방이동 108-4번지 일대	60	72	26	32		
32	S-11	C	송파동 135번지 일대	60	72	22	27		
33		D	방이동 110번지 일대	60	72	24	29		
34	N-10	A	방이동 107-3번지 일대	60	72	26	32		
35	S-12	B	방이동 149번지 일대	60	72	24	29		

⑧ 둔촌로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N-01	A	명일동 305-39번지 일대	60	72	27	33		
2		B	명일동 305-16번지 일대	60	72	27	27		
3		C	명일동 305-5번지 일대	60	72	27	33		
4		D	명일동 306-9번지 일대	60	72	27	33		
5		E	명일동 306-18번지 일대	60	72	27	33		
6		F	명일동 312-42번지 일대	60	72	27	33		
7		G	명일동 312-58번지 일대	60	72	27	33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8		H	명일동 312-74번지 일대	60	72	27	33		
9		I	명일동 312-87번지 일대	60	72	27	33		
10	S-01	J	명일동 312-94번지 일대	60	72	27	33		
11		K	명일동 312-95번지 일대	60	72	27	33		
12		L	명일동 312-99번지 일대	60	72	27	33		
13	N-02	A	천호동 24-1번지 일대	60	72	22	27		
14		B	천호동 24-5번지 일대	60	72	22	27		
15		C	천호동 25-1번지 일대	60	72	22	22		
16		D	천호동 25-2번지 일대	60	72	22	27		
17		E	천호동 30-1번지 일대	60	72	22	27		
18		F	천호동 31-1번지 일대	60	72	22	27		
19	S-02	G	명일동 324-1번지 일대	60	72	26	32		
20		H	명일동 324-3번지 일대	60	72	26	32		
21		I	명일동 334-3번지 일대	60	72	26	26		
22		J	명일동 334-1번지 일대	60	72	26	32		
23		K	명일동 335-1번지 일대	60	72	26	32		
24		L	명일동 345-1번지 일대	60	72	26	32		
25	N-03	A	천호동 34-1번지 일대	60	72	22	27		
26		B	천호동 42번지	60	72	26	32		
27		C	천호동 44-1번지	60	72	26	32		
28		D	천호동 45-1번지 일대	60	72	26	32		
29	S-03	E	명일동 346-1번지 일대	60	72	23	28		
30		F	명일동 353-1번지 일대	60	72	23	28		
31		G	길동 320-1번지 일대	60	72	23	28		
32		H	길동 335-1번지 일대	60	72	23	28		
33	N-04	A	천호동 50-9번지 일대	60	72	26	32		
34		B	천호동 51-1번지 일대	60	72	26	32		
35		C	길동 368-1번지 일대	60	72	30	36		
36	S-04	D	길동 336-1번지 일대	60	72	23	28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37		E	길동 347-1번지 일대	60	72	23	28		
38		F	길동 347-8번지 일대	60	72	23	28		
39		G	길동 348-1번지 일대	60	72	23	28		
40	N-05	A	길동 367-1번지 일대	60	72	30	36		
41		B	길동 378-1번지 일대	60	72	30	36		
42		C	길동 389-1번지 일대	60	80	30	44		
43		D	길동 412-1번지 일대	60	80	30	44		
44	S-05	E	길동 366-1번지 일대	60	72	23	28		
45		F	길동 391-1번지 일대	60	72	23	28		
46		G	길동 390-1번지 일대	60	72	23	28		
47		H	길동 390-6번지 일대	60	72	23	28		
48		I	길동 411-1번지 일대	60	72	23	28		
49	S-06	A	길동 436번지 일대	60	72	23	28		
50		B	길동 249-4번지 일대	60	72	23	23		
51	N-06	C	성내동 380번지 일대	60	80	23	28		
52	N-07	A	성내동 396-13번지 일대	50	60	23	28		
53		B	성내동 397번지 일대	50	60	23	28		
54		C	성내동 415번지 일대	50	60	23	28		
55	S-07	D	둔촌동 437번지 일대	50	60	20	24		
56		E	둔촌동 486번지 일대	50	60	20	24		
57		F	둔촌동 487번지 일대	50	60	20	24		
58		G	둔촌동 489번지 일대	50	60	20	24		
59	N-08	A	성내동 416번지 일대	50	60	23	28		
60		B	성내동 428-5번지 일대	50	60	23	28		
61		C	성내동 429번지 일대	50	60	23	28		
62	N-09	A	성내동 439-12번지 일대	50	60	23	28		
63		B	성내동 440번지 일대	50	60	23	28		
64		C	성내동 441번지 일대	50	60	23	28		
65		D	성내동 449-9번지 일대	50	60	23	28		

⑨ 상도동길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S-01	A	신길동 4035-2번지 일대	60	72	-	-		
2	N-01	A	대방동 399-1번지 일대	60	72	28	34		
3		B	대방동 398-1번지 일대	60	72	28	34		
4	S-02	C	대방동 400-1번지 일대	60	72	28	34		
5		D	대방동 401-1번지 일대	60	72	28	34		
6	N-02	A	대방동 397-25번지 일대	60	72	24	29		
7		B	대방동 396-4번지 일대	60	72	24	29		
8		C	대방동 395-1번지 일대	60	72	24	29		
9	S-03	D	대방동 402-1번지 일대	60	72	24	29		
10		E	대방동 402-3번지 일대	60	72	24	29		
11		F	대방동 403-1번지 일대	60	72	24	29		
12		G	대방동 404-1번지 일대	60	72	24	29		
13	N-03	A	대방동 393-65번지 일대	60	72	-	-		
14		B	대방동 335-13번지 일대	60	72	-	-		
15	N-04	A	상도동 328-1번지 일대	60	72	-	-		
16		B	상도동 337-13번지 일대	60	72	-	-		
18		C	상도동 348번지 일대	60	72	-	-		
19		D	상도동 347-1번지 일대	60	72	-	-		
20		E	상도동 352-1번지 일대	60	72	-	-		
21	S-04	F	상도동 345-8번지 일대	60	72	-	-		
22		G	상도동 353-2번지 일대	60	72				
23	N-05	A	상도동 190-1번지 일대	60	72	-	-		
24		B	상도동 187-4번지 일대	60	72	-	-		
25		C	상도동 354-11번지 일대	60	72	-	-		
26	S-05	D	상도동 188-75번지 일대	60	72	-	-		
27		E	상도동 187-3번지 일대	60	72	-	-		
28		F	상도동 195-52번지 일대	60	72	-	-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29	N-06	A	상도동 25-1번지 일대	60	72	-	-		
30		B	상도동 26-6번지 일대	60	72	-	-		
31		C	상도동 23-17번지 일대	60	72	-	-		
32	S-06	D	상도동 170-1번지 일대	60	72	-	-		
33		E	상도동 27-44번지 일대	60	72	-	-		
34	N-07	A	상도동 23-45번지 일대	60	72	-	-		
35		B	상도동 22-42번지 일대	60	72	-	-		
36		C	상도동 34-29번지 일대	60	72	22	27		
37		D	상도동 699번지 일대	60	72	22	27		
38		E	상도동 701-1번지 일대	60	72	22	27		
39	S-07	F	상도동 31-3번지 일대	60	72	-	-		
40		G	상도동 29-1번지 일대	60	72	22	27		
41		H	상도동 33-6번지 일대	60	72	22	27		
42		I	상도동 702번지 일대	60	72	22	27		

⑩ 화랑로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	N-01	A	공릉동 649-14번지 일대	60	72	24	29		
2		B	공릉동 653-15번지 일대	60	72	24	29		
3	N-02	A	공릉동 684-30번지 일대	60	72	24	36		
4		B	공릉동 684-55번지 일대	60	72	24	36		
5		C	공릉동 690-11번지 일대	60	72	24	36		
6	N-03	A	월계동 28-5번지 일대	60	72	-	-		
7		B	월계동 26-11번지 일대	60	72	-	-		
8		C	월계동 28번지 일대	60	72	-	-		
9		D	월계동 28-8번지 일대	60	72	-	-		
10		E	월계동 37-12번지 일대	-	-	-	-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 호	가로구역 위 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 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11		F	월계동 64-2번지 일대	60	72	-	-		
12		G	월계동 50-29번지 일대	60	72	-	-		
13		H	월계동 479-38번지 일대	60	72	-	-		
14		I	월계동 51-4번지 일대	-	-	-	-		
15	N-04	A	장위동 8-1번지 일대	60	80	-	-		
16		B	장위동 45-8번지 일대	60	80	-	-		
18	S-01	C	석관동 176-72번지 일대	60	80	-	-		
19		D	석관동 176-81번지 일대	60	80	-	-		
20		E	석관동 385-55번지 일대	60	80	-	-		
21	N-05	A	장위동 50-18번지 일대	60	80	-	-		
22		B	장위동 50-23번지 일대	60	80	-	-		
23		C	장위동 50-33번지 일대	60	80	-	-		
24		D	장위동 63-100번지 일대	60	80	-	-		
25		E	장위동 50-29번지 일대	60	80	-	-		
26	S-02	F	석관동 226-1번지 일대	60	80	-	-		
27		G	석관동 236-1번지 일대	60	80	-	-		
28		H	석관동 236-22번지 일대	60	80	-	-		
29		I	석관동 236-14번지 일대	60	80	-	-		
30		J	석관동 238-4번지 일대	60	80	-	-		
31		K	석관동 242-1번지 일대	60	80	-	-		
32		L	석관동 202-4번지 일대	-	-	-	-		
33		M	석관동 202-28번지 일대	-	-	-	-		
34		N	석관동 246-2번지 일대	60	80	-	-		
35	N-06	A	장위동 64-221번지 일대	60	80	-	-		
36		B	장위동 64-125번지 일대	60	80	-	-		
37		C	장위동 64-101번지 일대	60	80	-	-		
38	S-03	D	석관동 255-2번지 일대	60	80	16	24		
39	S-04	A	석관동 343-81번지 일대	60	72	16	20		

연 번	도면 번호	가로구역 번호	가로구역 위치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비 고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기준높이 (m)	최고높이 (m)	주거지역 연접구역(m)	
40		B	석관동 341-52번지 일대	60	72	16	20		
41	S-05	A	석관동 341-28번지 일대	60	72	16	20		
42		B	석관동 341-96번지 일대	60	72	16	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85호
 박물관 신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구 분	등록번호	종류 및 유형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보나장산박물관	제21호	제1종 전문박물관	김명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0	2006.2.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99호
 2006년도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공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
 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4.9%, IMF 5.0%, OECD 4.9%,
 LG경제연구원 4.6%, 삼성경제연
 구소 4.8%, 금융연구원 4.8%, 현
 대경제연구원 4.5%
 정부의 2006년도 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은 팽
 창예산 편성
 ※ 정부 일반회계 규모 : 144조 8,076
 억원(2005년 추경예산 대비 6.9%,
 본예산 대비 7.7% 증가)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국가 재정여건

- 2005년도 우리경제는 4% 내외의 실
 질성장률 기록
 - 2005년도 우리경제는 고유가, 환율하락
 및 내수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
 세가 지속되고 하반기 국내소비의 개선
 에 힘입어 4%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 금년도에는 5.0% 수준으로 전망
 - 2006년에는 유가 등 대외적 불안요인
 은 있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
 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이나 투자여건
 개선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정
 책에 따라 5%대 회복가능 전망
 ※ 2006 성장률 전망 : 정부 5%, KDI

시 재정여건

- 금년도 세입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
 책 시행 등에 따른 거래감소 요인이 있
 으나, 과표인상에 따른 취득세 및 법
 인·고소득자에 대한 주민세 등 일부세
 목의 징수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전
 체 세입목표는 달성 전망
- 2006년도는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여건 악화 및 소
 비관련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
 감소, 매각대상 재산의 고갈 등 세입여
 건은 어려우나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금
 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재정운영방향

민선3기 시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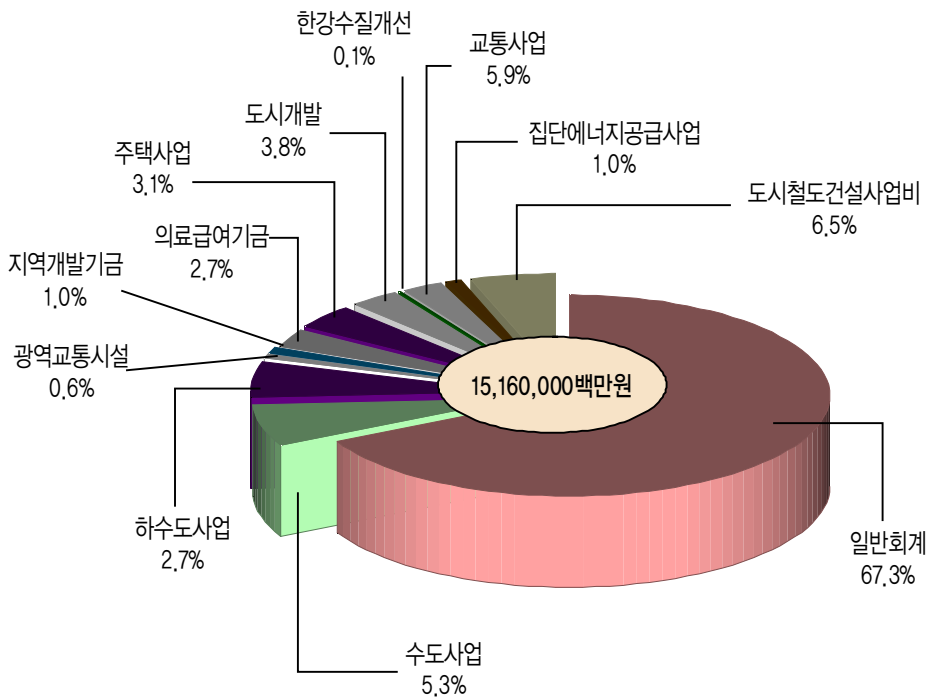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
- 민선3기 시정의 성공적 마무리

- 서민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 시민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자활 지원
 - 공공보건·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시민 건강수요 충족
 - 일자리 창출로 고용 확대 및 취업 지원
- 미래지향 전략적 투자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 산·학·연 사업 등 지역기술혁신 지원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 맑은 물, 생활녹지 조성,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시책 적극 추진
-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건전예산 편성
 - 지하철 건설부채 등 채무의 지속적 감축 추진

2.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증 감	%
계	15,160,000	16,866,973	△1,706,973	△10.1
일 반 회 계	10,203,000	11,763,367	△1,560,367	△13.3
특 별 회 계(II)	4,957,000	5,103,606	△146,606	△2.9
도 시 철 도	993,000	1,033,833	△40,833	△3.9
교 통 사 업	900,000	891,692	8,308	0.9
광 역 교 통 시 설	85,400	119,420	△34,020	△28.5
주 택 사 업	469,500	538,332	△68,832	△12.8
도 시 개 발	579,000	763,839	△184,839	△24.2
하 수 도 사 업	414,000	396,900	17,100	4.3
집 단 에 너 지 공 급	147,500	143,700	3,800	2.6
의 료 급 여 기 금	403,900	360,828	43,072	11.9
한 강 수 질 개 선	12,700	10,363	2,337	22.6
수 도 사 업	801,000	844,700	△43,700	△5.2
지 역 개 발 기 금	151,000	-	151,000	-

나.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5,160,000	16,866,973	△1,706,973	△10.1
대 변 인	3,179	2,787	392	14.1
홍 보 기 획 관	13,473	13,695	△222	△1.6
경 영 기 획 실	189,836	44,224	145,612	329.3
감 사 관	8,893	8,099	794	9.8
여 성 가 족 정 책 관	379,987	389,008	△9,021	△2.3
비 상 기 획 관	4,965	5,072	△107	△2.1
정 보 화 기 획 단	38,166	37,871	295	0.8
행 정 국	203,510	166,103	37,407	22.5
재 무 국	103,411	131,035	△27,624	△21.1
복 지 건 강 국	1,746,020	1,640,230	105,790	6.4

구 분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증감율
산 업 국	423,220	425,868	△2,648	△0.6
문 화 국	356,080	302,580	53,500	17.7
환 경 국	209,756	181,924	27,832	15.3
푸 른 도 시 국	446,275	428,930	17,345	4.0
기 술 심 사 담 당 관	6,230	6,231	△1	0.0
교 통 국	2,607,961	3,461,416	△853,455	△24.7
도 시 계 획 국	649,475	1,524,473	△874,998	△57.4
건 설 기 획 국	1,238,627	1,354,820	△116,193	△8.6
주 택 국	697,425	778,604	△81,179	△10.4
소 방 방 재 본 부	369,377	354,136	15,241	4.3
건 설 안 전 본 부	76,474	71,678	4,796	6.7
지 하 철 건 설 본 부	632,900	532,251	100,649	18.9
상 수 도 사 업 본 부	801,000	844,700	△43,700	△5.2
서 울 시 립 대 학 교	68,807	61,638	7,169	11.6
공 무 원 교 육 원	12,580	11,805	775	6.6
한 강 시 민 공 원 사 업 소	78,725	74,610	4,115	5.5
서 울 시 의 회	25,797	23,736	2,061	8.7
기 타	3,765,845	3,987,444	△221,599	△5.6

다.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단위 : 백만원)

	2006 (A)	%	2005 (B)	%	증감(A-B)	%
총 규 모	10,203,000	100.0	11,763,367	100	△1,560,367	△13.3
시 세	8,766,303	85.9	8,681,783	73.8	84,520	1.0
○ 보 통 세	7,059,619	69.2	6,878,048	58.5	181,571	2.6
• 취 득 세	1,717,206	14.9	1,349,295	11.5	167,911	12.46
• 등 록 세	1,688,827	16.6	1,852,718	15.7	△163,891	△8.8
• 주 민 세	2,208,835	21.6	1,978,607	16.8	230,228	11.6
• 자 동 차 세	450,996	4.4	436,716	3.7	14,280	3.3

	2006 (A)	%	2005 (B)	%	증감 (A-B)	%
•농업소득세	-	0.0	3	0.0	△3	△100.0
•도축세	3,934	0.0	3,550	0.0	384	10.8
•레저세	108,106	1.1	200,752	1.7	△92,646	△46.1
•담배소비세	547,885	5.4	596,807	5.1	△48,922	△8.2
•주행세	533,830	5.2	459,600	3.9	74,230	16.2
○목적세	1,584,463	15.5	1,689,227	14.4	△104,764	△6.2
•도시계획세	509,532	5.0	460,900	3.9	48,632	10.6
•공동시설세	122,607	1.2	126,707	1.1	△4,100	△3.2
•지역개발세	489	0.0	626	0.0	△137	△21.9
•지방교육세	951,835	9.3	1,100,994	9.4	△149,159	△13.5
○과년도시세	122,221	1.2	114,508	1.0	7,713	△6.7
세외수입	820,997	8.0	2,457,788	20.9	△1,636,791	△66.6
○경상적세외수입	684,141	6.7	725,033	6.2	△40,892	△5.6
○임시적세외수입	136,856	1.3	1,732,755	14.7	△1,595,899	△92.1
지방교부세	81,055	0.8	68,856	0.6	12,199	△17.7
국고보조금	534,645	5.2	554,940	4.7	△20,295	△3.7
지방채	-	0.0	-	0.0	-	0.0
(2) 세출						(단위 : 백만원)
	2006	%	2005	%	증감	%
총규모	10,203,000	100.0	11,763,367	100.0	△1,560,367	△13.3
경직성경비	773,758	7.6	734,920	6.2	38,838	5.3
○인건비	652,975	6.4	614,332	5.2	38,643	6.3
○기본경비	120,783	1.2	120,588	1.0	195	0.2
법정의무경비	4,722,447	46.3	5,725,636	48.7	△1,003,189	△17.5

자치구교부금	1,819,779	기금법정출연	92,273
교육청 지원	1,649,070	채무상환	208,146
타회계법정전출	948,518	반환금 등	4,661

사 업 비	4,410,658	43.2	5,201,196	44 44.2	△790,538	△15.2
○ 계속 사업	4,261,315	3 41.8	4,889,847	41.6	△628,531	△12.9
○ 신규 사업	149,342	1.5	311,349	2.6	△162,007	△52.0
예 비 비	296,137	2.9	106,837	1.0	△5,222	△4.9
○ 일반예비비	296,137	2.9	106,837	1.0	△5,222	△4.9

※ 채무상환 규모에는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금 2,000억원이 포함되었음.

라. 특별회계 예산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993,000	1,033,833	△40,833	△3.9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993,000	1,033,833	△40,833	합 계	993,000 (채0)	1,033,833 (채82,400)	△40,833 (채82,400)
1. 자체수입	2,692	60,714	△58,022	1. 경상예산	12,881	12,374	507
○ 사업외수입	2,692	60,714	△58,022	○ 인건비	11,362	10,822	540
- 순세계잉여금	-	55,971	△55,971	○ 기본경비	1,519	1,552	△33
- 정산금	-	-	-	2. 사업예산	533,291 (채0)	828,902 (채82,400)	37,202 (채82,400)
- 이월금	-	-	-	○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	470,652 (채0)	463,083 (채82,400)	7,569 (채82,400)
- 잡수입	-	4,743	△2,051	○ 지하철3호선연장건설	54,875	50,000	4,875
2. 공채 및 차입금	360,100	501,582	△78,418	○ 지하철7호선연장건설	3,286	1,512	1,774
○ 도시철도공채	360,010	501,582	△141,482	○ 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	4,000	470	3,530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국외차입금	-	-	-	○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150	-	150
3. 의존수입	630,208	471,537	158,671	○ 기타 경상사업비 등	328	290	38
○ 일반회계전입금	335,235	265,548	69,687	3. 기타예산	360,100	501,582	△141,482
- 지하철건설사업	320,390	265,548	54,842	○ 공채매각대금 전출	360,100	501,582	△141,482
• 9호선 1단계 건설	282,152	234,792	47,360	4. 채무상환	82,400	-	82,400
• 3호선 연장건설	32,925	30,000	2,925	○ 감채기금전출금			△5,772
• 7호선 연장건설	1,163	756	407	○ 재정투융자금상환			
• 9호선 2단계 연장건설	4,000	-	4,000	(지하철9호선1단계 건설)	82,400	-	82,400
• 우이~신설 경전철	150	-	150	5. 예비비	4,328	4,522	△194
- 기타 경상사업	14,845	-	14,845	○ 예비비	4,328	4,522	△194
- 선투자사업비 정산금	-	-	-				
○ 국고보조금	294,973	205,989	88,984				
- 9호선 건설	270,900	185,233	85,667				
- 3호선 연장건설	21,950	20,000	1,950				
- 7호선 연장건설	2,123	756	1,367				
- 분당선 분담금	-	-	-				

(2) 교통사업 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900,000	891,692	8,308	0.9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900,000	891,692	8,308	합 계	900,000	891,692	8,308
1. 자체수입	462,788	467,960	△5,172	1. 경상예산	36,782	32,192	4,590
○ 사업수입	33,569	35,738	△2,169	○ 인 건 비	29,706	25,879	3,827
- 주차장운영	11,965	13,571	△1,606	○ 기본경비	7,076	6,313	763
- 혼잡통행료	13,294	14,953	△1,659	2. 사업예산	793,641	823,010	△29,369
- 공영차고지운영	3,556	2,805	751	○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373,622	418,898	△45,276
- 용자금이자수입	554	809	△255	○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4,964	4,222	742
- 방송협찬광고	4,200	3,600	600	○ 택시본래 기능 갖기 추진	190,221	180,226	9,995
○ 사업외수입	429,219	432,222	△3,003	○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118,074	120,031	△1,957
- 교통유발부담금	64,761	54,611	10,150	○ 주차난 해소	71,020	80,661	△9,641
- 운수과징금	9,003	5,878	3,125	○ 물류체계 개선	17,357	5,523	11,834
- 용자금회수수입	20,037	16,835	3,202	○ 방송관리	162	4,749	△4,587
- 잡 수 입	7,015	9,516	△2,501	○ 방송제작	18,221	8,700	9,521
- 이 월 금	24,411	53,796	△29,385	3. 채무상환	49,882	12,164	37,718
• 국고보조집행잔액	2,808	824	1,984	○ 재정투융자기금상환	49,882	12,164	37,718
• 순세계잉여금(방송)	1,603	2,146	△543	(교통사업)	49,882	11,755	38,127
• 순세계잉여금(관리)	20,000	50,826	△30,826	(교통방송)		409	△409
• 순세계잉여금(주차)	-	-	-	4. 예비비 등	19,695	24,326	△4,631
- 법정전입금	303,992	291,586	12,406	○ 예 비 비	7,661	14,673	△7,012
• 도시계획세(주차)	50,953	58,286	△7,333	(교통사업)	6,424	4,600	1,824
• 지방주행세(관리)	253,039	233,300	19,739	(주 차 장)	880	9,168	△8,288
2. 공채 및 차입금	-	-	-	(교통방송)	357	905	△548
○ 시채투기금차입금	-	-	-	○ 징수교부금	9,226	8,829	397
○ 기타 차입금	-	-	-				
3. 의존수입	437,212	423,732	13,480				
○ 일반회계전입금	388,058	381,080	6,978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교통관리계정	363,765	350,041	13,724	○ 반환금 및 기타	2,808	824	1,984
- 주차장관리계정	319	12,679	△12,360				
- 교통방송계정	23,974	18,360	5,614				
○ 국고보조금	49,154	42,652	6,502				
○ 지방교부세	-	-	-				

【교통관리계정】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798,000	777,411	20,589	2.6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798,000	777,411	20,589	합 계	798,000	777,411	20,589
1. 자체수입	385,081	384,718	363	1. 경상예산	25,458	22,579	2,879
○ 사업수입	17,236	18,347	△1,111	○ 인 건 비	21,509	18,569	2,940
- 혼잡통행료	13,294	14,953	△1,659	○ 기본경비	3,949	4,010	△61
- 공영차고지운영	3,556	2,805	751				
- 융자금이자수입	386	589	△203	2. 사업예산	704,238	728,900	△24,662
○ 사업외수입	367,845	366,371	1,474	○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373,622	418,898	△45,276
- 교통유발부담금	64,761	54,611	10,150	○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4,964	4,222	742
- 운수과징금	1,807	2,045	△238	○ 택시본래 기능 갖기 추진	190,221	180,226	9,995
- 융자금회수수입	19,398	16,105	3,293	○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118,074	120,031	△1,957
- 이 월 금	22,808	51,650	△28,842	○ 물류체계 개선	17,357	5,523	11,834
• 순세계잉여금	20,000	50,826	△30,826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2,808	824	1,984	3. 채무상환	49,882	11,755	38,127
- 잡 수 입	6,032	8,660	△2,628	○ 재정투융자기금상환	49,882	11,755	38,127
- 법정전입금	253,039	233,300	19,739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도시계획세전입금	-	-	-	4. 예비비 등	18,422	14,177	4,245				
• 지방주행세전입금	253,039	233,300	19,739					○ 예비비	6,424	4,600	1,824
2. 공채 및 차입금	-	-	-					○ 징수교부금	9,190	8,753	437
○ 시재투기금차입금	-	-	-					○ 반환금 및 기타	2,808	824	1,984
○ 기타 차입금	-	-	-								
3. 의존수입	412,919	392,693	20,226								
○ 일반회계전입금	363,765	350,041	13,724								
○ 국고보조금	49,154	42,652	6,502								

【 주차장관리계정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72,000	89,969	△17,969	신규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72,000	89,969	△17,969	합 계	72,000	89,969	△17,969
1. 자채수입	71,6821	77,290	△17,969	1. 경상예산	64	-	64
○ 사업수입	12,133	13,791	△5,608	○ 기본경비	64	-	64
- 주차장 운영	11,965	13,571	△1,658				
- 용자금 이자수입	168	220	△52	2. 사업예산	71,020	80,661	△9,641
○ 사업외수입	59,549	63,499	△3,950	○ 주차난 해소	71,020	80,661	△9,641
- 운수과징금	7,196	3,833	3,363	- 환승주차장운영위탁사업	3,150	3,184	△34
- 용자금회수수입	640	730	△90	- 민영주차장건설용자지원	3,000	3,000	-
- 이 월 금	-	-	-	- 세종로지하주차장미관정비	30	30	-
• 순세계잉여금	-	-	-	- 내집주차장갓가지원	-	4,000	△4,000
				-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지원	10,000	17,000	△7,000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	-	- Green Parking 2006	28,790	26,978	1,812
- 잡 수입	760	650	-	-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²⁾	10,380	9,049	1,331
- 법정전입금	50,953	58,286	△7,333	- 학교복합화시설지하주차장 ³⁾	8,409	11,445	△3,036
• 도시계획세전입금	50,953	58,286	△7,333	-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	3,935	△3,935
2. 의존수입	318	12,679	△12,361	- 민간위탁주차장시설관리	204	240	△36
○ 일반회계전입금	318	12,679	△12,361	- 주차장입체화 ³⁾	6,857	1,800	5,057
				- 여객터미널 증장기방안	200	-	200
○ 국고보조금	-	-	-	3. 예비비 등	916	9,244	△8,328
				○ 예 비 비	880	9,168	△8,288
				○ 징수교부금	36	76	△40

【 교통방송운영 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30,000	24,313	5,687	23.4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30,000	24,313	5,687	합 계	30,000	24,313	5,687
1. 자체수입	6,026	5,952	74	1. 경상예산	11,261	9,549	1,712
○ 사업수입	4,200	3,600	600	○ 인 건 비	8,197	7,310	887
- 협찬광고 수입	4,200	3,600	600	○ 기본경비	3,064	2,239	825
○ 사업외수입	1,826	2,352	△526				
- 순세계잉여금	1,603	2,146	△543	2. 사업예산	11,336	13,449	4,933
- 잡 수입	223	206	17	○ 방송관리	162	4,749	△4,587
2. 의존수입	23,974	18,361	5,613	○ 방송제작	18,220	8,700	9,520
○ 일반회계전입금	23,974	18,361	5,613	3. 채무상환	-	409	△409
				○ 재정투융자기금상환	-	409	△409
				4. 예비비 등	357	906	△549
				○ 예 비 비	357	906	△549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85,400	119,420	△34,020	△28.5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85,400	119,420	△34,020	합 계	85,400	119,420	△34,020
1. 자체수입	8,223	27,711	△19,488	1. 사업예산	84,898	119,078	△34,180
○ 사업수입	8,223	27,711	△19,488	○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21,194	22,844	△1,650
- 부담금수입	7,585	7,446	139	-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	10,759	△10,759
- 이 월 금	-	4,633	삼4,633	-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	11,421	△11,421
- 순세계잉여금	-	14,520	△14,520	-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6,000	300	5,700
- 잡 수 입	638	1,112	△474	-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15,194	364	14,830
2. 의존수입	77,177	91,709	△14,532	○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1,104	2,734	△1,630
○ 일반회계전입금	64,177	81,389	△17,212	- 천왕역 환승주차장	1,104	2,734	△1,630
- 공영차고지및환승주차장	22,298	15,572	6,726	○ 광역전철건설비 부담	36,600	41,743	△5,143
(양천권역공영차고지)	-	7,945	△7,945	○ 광역도로건설사업	26,000	47,124	△21,124
(중랑권역공영차고지)	-	4,229	△4,229	- 사가정길~암사동간	6,000	5,000	1,000
(도봉권역공영차고지)	6,000	300	5,700	-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16,000	20,020	△4,020
(강서권역공영차고지)	15,194	364	14,830	- 신내IC~구리시계간	-	4,000	△,000
(천왕역 환승주차장)	1,104	2,734	△1,630	- 위례성길~성내천	-	6,000	△6,000
- 광역도로건설	13,000	32,804	△19,804	- 신사사거리~고양시계	2,000	7,300	△5,300
(사가정길~암사동길)	3,000	6,000	△3,000	- 동부간선도로확장	-	3,804	△3,804
(남부순환로~부천시계)	8,000	10,000	△2,000	- 천호대로 확장	2,000	1,000	1,000
(신내IC~구리시계)	-	4,000	△4,000	○ 반환금 및 기타	-	4,633	△4,633
(위례성길~성내천)	-	4,000	△4,000				
(신사사거리~고양시계)	1,000	4,000	△3,000				
(동부간선도로확장)	-	3,804	△3,804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천호대로 확장)	1,000	1,000	-	-공영차고지(송파,강동) 반납금		2,125	△2,125
- 광역전철건설지원	28,377	33,013	△4,636	- 광역도로 반납금		2,508	△2,508
- 예비비 등	502		502				
○ 국고보조금	13,000	10,320	2,680	2. 예비비 등	502	342	160
- 광역도로건설	13,000	10,320	2,680	○ 예 비 비	274	342	△68
(위례성길~성내천)	-	-	-		228	-	228
(신사사거리~고양시계)	1,000	-	1,000				
(사가정길~암사동길)	3,000		3,000				
(남부순환로~부천시계)	8,000	10,020	△2,020				
(천호대로 확장)	1,000	300	700				

(4)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469,500	538,332	△68,832	△12.8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469,500	538,332	△68,832	합 계	469,500	538,332	△68,832
1. 자체수입	372,324	380,068	△7,744	1. 경상예산	2,198	2,141	57
○ 사업수입	214,603	220,169	△5,566	○ 인 건 비	1,864	1,787	77
- 재산임대수입	124,453	156,544	△32,091	○ 기본경비	334	354	△20
- 재산매각수입	78,064	53,149	24,915	2. 사업예산	270,435	365,112	△94,677
- 융자금이자수입	1,365	1,427	△62	○ 임대주택매입 및 관리	146,682	165,131	△18,449
- 과년도수입	10,099	8,849	1,250	○ 재개발사업지원	1,564	4,569	△3,005
- 청산금수입	622	200	422	○ 주거환경개선지구공공 시설공사	8,798	26,746	△17,948
○ 사업외수입	157,721	159,899	△2,178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순세계잉여금	27,002	29,931	△2,929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자용자	20,000	20,000	-
-법정전입금	76,430	82,588	△6,158	○ 시민아파트보수 및 공가관리	156	327	△171
(주택재개발사업계정)	57,322	61,941	△4,619	○ 기타 경상사업	795	1,475	△680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19,108	20,647	△1,539	○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	92,080	146,864	△54,784
-예탁금수입	42,722	34,719	8,003	○ 세운상가 도시환경정 비계획수립	360	-	360
•상환금	24,040	18,040	6,000	3. 채무상환	24,820	27,306	△2,486
•이자수입	18,682	16,679	2,003	○ 채투용자기금차입금상환	4,200	4,200	-
-용자금회수수입	545	1,088	△543	○ 국민주택기금차입금상환	20,620	23,106	△2,486
-잡 수 입	6,322	8,736	△2,414	4. 예비비 등	172,047	143,773	28,274
-이자수입	4,504	2,461	2,043	○ 예 비 비	6,447	13,348	△6,901
-과년도수입	196	376	△180	○ 반 환 금	1,600	3,125	△1,525
2. 의존수입	97,176	158,264	△61,088	○ 재정투용자기금예탁	164,000	127,300	36,700
○ 일반회계전입금	93,360	88,500	4,860	(주택재개발사업계정)	104,000	76,300	27,700
(국민주택사업계정)	93,360	80,000	13,360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60,000	51,000	9,000
(주택환경개선사업계정)	-	8,500	△8,500				
○ 국고보조금	3,816	65,820	△62,004				
○ 기금(로포기금)	-	3,944	△3,944				

【 국민주택사업 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94,070	152,925	△58,855	△38.5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94,070	152,925	△58,855	합 계	94,070	152,925	△58,855
1. 자체수입	710	20,691	△19,981	1. 경상예산	17	37	△20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사업수입	350	11,604	△11,254	○ 기본경비	17	37	△20
- 재산매각수입	311	11,546	△11,235				
- 융자금이자수입	15	27	△12				
- 과년도수입	24	31	△7	2. 사업예산	92,321	147,195	△54,874
○ 사업외수입	360	9,087	△8,727	○ 시민아파트 유지보수	5	25	△20
- 순세계잉여금	-	8,217	△8,217	○ 임시이주용 공간관리	151	302	△151
- 융자금회수수입	71	227	△156	○ 국민주택관련 경상비	85	5	80
- 잡 수 입	19	31	△12	○ 공공임대주택건설출자	92,080	146,863	△54,783
- 이자수입	177	348	△171				
- 과년도수입	93	264	△171	3. 채무상환	-	959	△959
2. 의존수입	93,360	132,234	△38,874	○ 국민주택기금차입금상상환	-	959	△959
○ 일반회계전입금	93,360	80,000	13,360				
○ 국고보조금	-	52,234	△52,234	4. 예비비	1,732	4,734	△3,002
				예비비	1,732	4,734	△3,002

【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13,618	32,040	△18,422	△57.5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13,618	32,040	△18,422	합 계	13,618	32,040	△18,422
1. 자체수입	9,802	7,964	1,838	1. 경상예산	10	10	-
○ 사업수입	8,308	6,954	1,354	○ 기본경비	10	10	-
- 재산매각수입	7,107	6,357	750				
- 과년도 수입	1,201	597	604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사업외수입	1,494	1,010	484	2. 사업예산	9,098	27,046	△17,948
- 순세계잉여금	-	-	-	○ 현지개발지구	8,798	26,746	△17,948
- 잡 수 입	1,322	1,010	312	○ 주거환경관련 경상비	300	300	-
- 이자수입	172	-	172	3. 채무상환	4,200	4,200	-
2. 의존수입	3,816	24,076	△20,260	○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상환	4,200	4,200	-
○ 국고보조금	3,816	11,632	△7,816	4. 예비비등	310	784	△474
○ 기금(로또기금)	-	3,944	△3,944	○ 예비비	310	698	△388
○ 일반회계전입금	-	8,500	△8,500	○ 국고반환금	-	86	△86

【 주택재개발사업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279,525	277,406	2,119	0.8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279,525	277,406	2,119	합 계	279,525	277,406	2,119
1. 자체수입	279,525	275,453	4,072	1. 경상예산	1,929	1,863	66
○ 사업수입	204,489	199,709	4,780	○ 인 건 비	1,645	1,581	64
- 재산임대수입	124,453	156,544	△32,091	○ 기본경비	284	282	2
- 재산매각수입	70,482	34,483	35,999	2. 사업예산	148,657	170,870	△22,213
- 융자금이자수입	58	260	△202	○ 임대주택매입 및 관리	146,682	165,131	△18,449
- 청산금수입	622	201	421	○ 공공의구역지정계획수립	100	100	-
- 과년도수입	8,874	8,221	653	○ 재개발지원(공공시설설치)	1,465	4,469	△3,004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사업외수입	75,036	75,744	△708	○ 재개발경상사업	410	1,170	△760
- 순세계잉여금	-	-	-	3. 지방채	20,620	22,147	△1,527
- 법정전입금	57,322	61,941	△4,619	○ 국민주택기금차입금상환	20,620	22,147	△1,527
- 예탁금수입	10,912	9,300	1,612	4. 예비비 등	108,319	82,526	25,793
• 이자수입	10,912	9,300	1,612	○ 예비비	2,719	3,187	△468
- 융자금회수수입	474	861	△387	○ 반환금기타	1,600	3,039	△1,439
- 잡수입	2,070	1,417	653	○ 정투용자기금 예탁	104,000	76,300	27,700
- 이자수입	4,155	2,113	2,042				
- 과년도수입	103	112	△9				
2. 의존수입	-	1,953	△1,953				
○ 국고보조금	-	1,953	△1,953				

【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82,287	75,961	6,326	8.3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82,287	75,961	6,326	합 계	82,287	75,961	6,326
1. 자체수입	82,287	75,961	6,326	1. 경상예산	242	230	12
○ 사업수입	1,456	1,903	△447	○ 인건비	218	206	12
- 융자금이자수입	1,292	1,140	152	○ 기본경비	24	24	-
- 매각수입	164	763	△599				
○ 사업외수입	80,831	74,058	6,773	2. 사업예산	20,360	20,000	360
- 순세계잉여금	27,002	21,714	5,288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용자	20,000	20,000	-
- 법정전입금	19,107	20,647	△1,540	○ 세운상가 정비계획수립	360	-	360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예탁금회수수입	31,810	25,419	6,391	3. 예비비 등 ○ 예비비 ○ 재정투융자기금예탁	61,685	55,731	5,954			
•상 환 금	24,040	18,040	6,000					1,685	4,731	△3,046
•이자수입	7,770	7,379	391					60,000	51,000	9,000
-잡수입	2,912	6,278	△3,366							

(5)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579,000	763,839	△184,839	△24.2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579,000	763,839	△184,839	합 계	579,000	763,839	△184,839
1. 자체수입	579,000	762,700	△183,700	1. 경상예산	83	103	△20
○ 사업수입	59,443	16,875	42,568	○ 기본경비	83	103	△20
- 사용료 수입	635	669	△34	2. 사업예산	386,119	349,524	36,595
- 매각수입	58,456	15,837	42,619	○ 토지구획정리사업	5,917	25,371	△19,454
- 과년도수입	352	369	△17	- 도로개설	-	220	△220
○ 사업외수입	519,557	745,825	△226,268	- 하수도정비	5,300	11,400	△6,100
- 순세계잉여금	1,097	219,886	△218,789	- 공원·녹지시설	-	13,000	△13,000
- 법정전입금	382,149	412,939	△30,790	- 기타경상사업	617	751	△134
(도시계획세 75%)				○ 지구단위계획사업	9,263	4,850	4,413
- 예수금수입	70,800	52,060	18,740	○ 지역균형발전사업	33,859	128,357	△94,498
- 예탁금이자수입	21,626	18,129	3,497	- 길음뉴타운사업	14,299	15,157	△858
- 부담금수입	32,592	32,592	-	- 추가뉴타운사업	19,100	83,200	△64,100
(과밀부담금)				- 균형발전촉진지구	460	30,000	△29,540
- 잡수입	1,546	518	1,028	○ 도로시설사업	92,648	47,344	45,304
- 예금이자수입	9,126	9,126	-	- 미집행도로개설	72,652	31,072	41,580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변상금 등	621	575	46	- 매수청구보상(도로)	19,996	16,272	3,724
2. 의존수입	-	1,139	△1,139	○ 공원녹지시설사업	222,432	143,602	78,830
○ 국고보조금	-	1,139	△1,139	- 공원용지보상	197,357	132,752	64,605
				- 녹지시설보상	10,240	-	10,240
				- 매수청구보상(공원)	14,835	10,850	3,985
				○ 보건위생시설사업	22,000	-	22,000
				- 서울의료원 이전	22,000	-	22,000
				3. 예비비 등	192,798	414,212	△221,414
				○ 예 비 비	2,718	3,757	△1,039
				○ 반 환 금	50	400	△350
				○ 교 부 금	2,030	2,055	△25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88,000	408,000	△220,000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414,000	396,900	17,100	4.3%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414,000	396,900	17,100	합 계	414,000	396,900	17,100
1. 자체수입	414,000	394,900	19,100	1. 경상예산	23,663	26,579	△2,916
○ 사업수입	342,312	291,045	51,267	○ 인건비	21,408	23,763	△2,355
- 사용료수입	320,209	260,364	59,845	○ 기본경비	2,255	2,816	△561
- 시설분담금	2,930	13,128	△10,198	2. 사업예산	346,974	321,916	25,058
- 기타사업	24	10	14	○ 하수처리장고도처리 시설	68,997	61,346	7,651
- 과년도수입	2,109	2,079	30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부담금수입	17,040	15,464	1,576	○ 공원화 및 슬러지 처리시설	31,700	9,539	22,161
○ 사업외수입	71,688	103,855	△32,167	○ 하수처리장민간위탁	75,707	66,859	8,848
- 원인가부담금	25,944	22,542	3,402	○ 하수처리장운영	65,453	53,103	12,350
- 잡 수입	4,523	4,272	251	○ 하수관거정비사업	82,179	109,762	△27,583
- 순세계잉여금	41,221	77,040	△35,819	- 하수도 종합정비	14,552	12,888	1,664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	1	△1	- 하수관 신설 및 개량	34,520	66,455	△31,935
				- 하수암거 보수보강	33,107	30,419	2,688
2. 국채 및 차입금	-	-	-	○ 차집관거정비사업	2,041	2,877	△836
○ 정부자금채	-	-	-	○ 위탁징수수수료 (상수도전출)	17,200	14,329	2,871
				○ 기타 하수도관리	3,697	4,101	△404
3. 의존수입	-	2,000	△2,000	3. 채무상환	41,934	46,884	△4,950
○ 일반회계전입금	-	-	-	○ 국내·외 채무	36,230	39,157	△2,927
○ 국고보조금	-	2,000	△2,000	○ 재정투융자기금	5,704	7,727	△2,023
				4. 예비비 등	1,429	1,521	△92
				○ 예 비 비	1,429	1,521	△92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147,500	143,700	3,800	2.6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147,500	143,700	3,800	합 계	147,500	143,700	3,800
1. 자체수입	147,500	143,700	3,800	1. 경상예산	75	75	-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사업수입	147,280	143,155	4,125	○ 인건비	-	-	-
- 사용료수입	124,266	122,799	1,467	○ 기본경비	75	75	-
- 부담금 수입	6,985	3,963	3,022	2. 사업예산	142,998	137,881	5,117
- 기타사업 수입	16,004	16,203	△199	○ 지역난방운영	128,734	130,497	△1,763
- 과년도수입	25	190	△165	○ 지역난방건설	14,264	7,384	6,880
○ 사업외수입	220	545	△325	3. 채무상환	2,365	4,007	△1,642
- 순세계잉여금	120	424	△304	○ 에너지기금(산자부)	1,340	2,942	△1,602
- 잡수입	100	121	△21	○ 재정투융자기금	1,025	1,065	△40
				4. 예비비 등	2,062	1,737	325
				○ 예비비	1,880	1,717	163
				○ 반환금 등 기타	182	20	162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403,900	360,828	43,072	11.9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403,900	360,828	43,072	합 계	403,900	360,828	43,072
1. 자체수입	4,443	929	3,514	1. 경상예산	1,500	956	544
○ 순세계잉여금	4,000	256	44	○ 인 건 비	-	-	-
○ 이자수입	243	400	△157	○ 기본경비	1,500	956	544
○ 기타잡수입	200	273	△73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2. 의존수입	399,457	359,899	39,558	2. 사업예산	402,400	359,872	42,528
○ 일반회계지원	185,947	176,523	9,424	○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402,400	359,872	42,528
○ 국고보조금	213,510	186,376	30,134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06 예산	2005 예산	증 감	%
12,700	10,363	2,337	22.6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12,700	10,363	2,337	합 계	12,700	10,363	2,337
1. 자체수입	923	949	△26	1. 경상예산	1,542	1,252	290
○ 사업외 수입	923	949	△26	○ 인건비	1,298	1,024	274
- 이자수입	36	63	△27	○ 기본경비	244	228	16
- 순세계잉여금	385	214	171				
-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502	672	△170	2. 사업예산	10,511	8,339	2,172
2. 공채 및 차입금	-	-	-	○ 잠실상수원퇴적물준설	2,000	1,575	425
				○ 하이서울환경농장가꾸기	500	500	-
				○ 수질오염사고예방	126	279	△153
				○ 물관리협조체계 운영 활성화	19	15	4
				○ 환경농업육성이차보전	-	1	△1
				○ 민간단체지원	300	250	△50
				○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2,302	2,935	△633
3. 의존수입	11,777	9,414	2,363	○ 녹조방지사업	740	-	740
○ 일반회계 지원금	-	-	-	○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187	185	2
○ 국고보조금(기금)	11,777	9,414	2,363	○ 수질개선 홍보사업	30	24	6
				○ 잠실상수원 관리비	312	347	△35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 물이용부담금 관리	2,395	2,228	167
				○ 친환경농산물판매장설치	1,600	-	1,600
				3. 채 무 상 환	-	-	-
				4. 예 비 비 등	647	772	△125
				○ 예 비 비	145	100	45
				○ 국고보조 반환금	502	672	△17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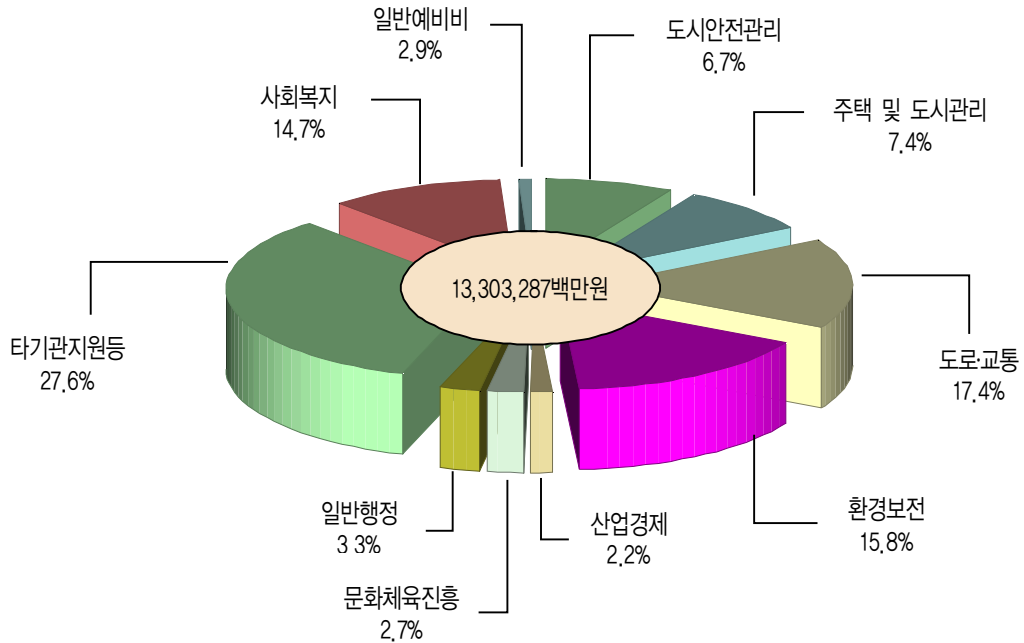
2006예산	2005예산	증 감	%
801,000	844,700	△43,700	△5.2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합 계	801,000	844,700	△43,700	합 계	801,000 (-)	844,700 (채20,000)	△43,700 (채△20,000)
1. 자체수입	801,000	771,100	29,900	1.경상예산	416,395	419,931	△3,536
○ 사업수입	633,911	645,100	△11,289	○ 인 건 비	137,149	130,129	7,021
- 급수수익	556,934	548,971	7,963	○ 기본경비	37,440	39,228	△1,789
- 급수공사수익	36,554	48,549	△11,995	○ 경상사업비	205,252	202,025	3,227
- 기타영업수익	30	5	25	- 원수구입비	49,151	52,175	△3,024
- 시설분담금	23,104	31,587	△8,483	- 동 력 비	32,873	34,128	△1,255
- 과년도미수금	17,289	15,988	1,301	- 약품구입비	12,680	12,157	523
○ 사업외수입	167,089	126,000	41,089	- 누수복구비	33,083	31,814	1,269
- 자산매각수입	17,310	3,808	13,502	- 민간검침위탁	14,142	13,272	870
				- 정수장시설유지 보수	12,763	10,376	2,387

세 입				세 출			
구 분	2006	2005	증 감	구 분	2006	2005	증 감
-특별회계부담금	19,595	16,222	3,373	- 노후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0,468	14,525	5,943
-일반회계부담금	6,771	5,956	815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	30,092	33,578	△3,486
-이 월 금	114,732	93,057	21,675	○ 급수공사비	36,554	48,549	△11,995
-기 타	8,681	6,957	1,724	2. 사업예산	207,884	318,202	△110,318
2. 공채 및 차입금		73,600	△73,600	(-) (채20,000)	(채20,000)	(채△20,000)	
○ 시투용자기금		73,600	△73,600	○ 배수지건설	19,861	23,773	△3,912
				(-) (채2,000)	(채2,000)	(채△2,000)	
				○ 수도관정비	106,060	175,446	△69,386
				(-) (채18,000)	(채18,000)	(채△18,000)	
				- 노후배급수관개량	30,905	145,400	△114,495
				(-) (채18,000)	(채18,000)	(채△18,000)	
				- 송배수관정비	60,100	30,046	30,054
				- 불용관 정비	15,055	-	15,055
				○ 아리수 고급화 사업	14,460	5,250	9,210
				○ 노후시설개량	29,113	36,686	△7,573
				○ 청사신축 및 보수 등	38,390	77,047	△38,657
				3. 채무상환	152,320	95,690	56,630
				○ 시채투기금 상환	67,090	70,624	△3,534
				○ 지방채상환	65,230	17,473	47,757
				○ 채무부담상환	20,000	7,593	12,407
				4. 예 비 비	24,401	10,877	13,524

마. 주요사업조서
(1) 부문별 재원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	2005	%	증감	%
계	13,303,287	100.0	15,064,306	100.0	△1,761,019	△11.7
사회복지	1,961,360	14.7	1,859,415	12.3	101,945	5.5
주택 및 도시관리	987,942	7.4	1,797,564	11.9	△809,622	△45.0
도시안전관리	884,292	6.7	962,646	6.4	△78,354	△8.1
환경보전	2,096,893	15.8	2,171,038	14.4	△74,145	△3.4
도로·교통	2,319,484	17.4	2,521,810	16.7	△202,325	△8.0
산업경제	288,767	2.2	300,801	2.1	300,801	△4.0
문화체육진흥	356,080	2.7	302,580	2.0	302,580	17.7
일반행정	443,484	3.3	406,035	2.7	406,035	9.2
타기관지원등	3,668,849	27.6	4,640,803	30.8	△971,953	△20.9
일반예비비	296,137	2.2	101,615	0.7	194,522	191.4

(2) 주요사업 내역

1 사회복지—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 정책방향

- 시민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 사각 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보호 확대
 - 긴급생계비, 임대주택 지원 등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 긴급지원 체계 마련
- 출산장려 지원대책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보육료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체계 확립
-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마련 등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보강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사회 참여 여건 제공
- 시립병원 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공의료수준 향상
 - 시립병원 신·증축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대
 - 의료장비 현대화, 운영수지 개선 등 시립병원 운영 내실화 도모

□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명	97,400	100,208	116,745	126,084	136,170
			173,918	182,855	196,240	211,924	228,19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소	96	96	96	96	96
노인 복지	노인인구(65세이상)	천명	706	751	799	842	89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개소	26	26	27	27	27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	개소	79	92	102	113	121
장애인 보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93	95	96	97	98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개소	644	670	761	761	761
영유아 보육	보육시설 이용률	%	28	30	32	33	34
	장애아통합보육 확대	개소	90	115	140	165	190
	방과후보육 확대	개소	249	279	309	339	369
청소년 복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개소	37	38	40	40	40
보건 의료	시립병원 병상수	병상	3,777	3,997	4,467	4,467	4,567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사 회 복 지		1,961,360	1,859,415	101,945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744,522	679,410	65,112
생계급여	◦ 일반수급자 170,010명, 시설수급자 12,845명	298,347	276,763	21,584
교육급여(중고생교통비 포함)	◦ 일반수급자 23,910명, 시설수급자 1,008명	24,249	24,702	△453
의료급여	◦ 1종 119,721명, 2종 83,959명	403,900	360,829	43,071
재해구호기금 적립	◦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결산액의 2.5/1000	17,361	16,452	909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	◦ 대 상 : 1,461세대 2,338명	665	664	1
저소득시민 자활 지원	자활지원사업 및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87,907	92,004	△4,097
자활근로사업	◦ 인 원 : 10,752만명/년 (20천원/일)	35,901	40,256	△4,355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지원	◦ 대 상 : 104,200가구 (50천원/가구당)	5,272	5,149	123
저소득시민·보훈대상자 등 위문	◦ 대 상 : 115,360가구 ◦ 지원내용 : 년 2회 30천원상당 위문품 지급	7,880	6,121	1,759
저소득시민 긴급구호 사업	◦ 대 상 : 일시적으로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 ◦ 지원내용 : 가구당 평균 323천원(4인가족·월)	17,825	10,332	7,493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 대 상 :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특별취로, 특별구호	11,548	16,550	△5,002
은평의마을 위탁·운영 등	◦ 은평마을 운영 (수용인원 : 1,830명)	4,357	8,838	△4,481
쪽방거주자 지원 등	◦ 의사상자 기념표석 설치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 3,279명 ◦ 자활 후건기관 운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 등	5,124	4,758	6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	60,891	66,249	△5,358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프로그램지원포함)	◦ 운영 및 기능보강 : 96개소	45,308	35,796	9,512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 대 상 : 93개소(종합사회복지관당 평균 1개소)	5,844	5,592	252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3,700	13,934	△10,234
이동목욕사업 등	◦ 이동목욕사업 25개소, 수혜자 17,768명 ◦ 기초푸드뱅크 운영 26개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6,039	10,927	△4,888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노숙자보호 및 재활지원	노숙자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16,138	12,288	3,850
희망의집 운영	◦대 상 : 63개소 2,200명	8,025	7,087	938
재활쉼터 운영 (비전트레이닝센터)	◦대 상 : 1개소 300명 (급식비, 운영비 등)	1,542	1,290	252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내 용 : 상담보호센터 운영(4개소)	3,162	1,419	1,743
노숙자 의료구호비	◦내 용 : 예방접종, 응급구호 등	2,952	1,548	1,404
술가꾸기 근로사업 지원	◦대 상 : 5개 현장 100명	235	220	15
거리노숙자 특별보호	◦내 용 : 숙웃, 소모품 지원 및 상담	222	724	△502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중증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43,196	47,962	△4,766
노인생활시설 운영	◦대 상 : 30개소 (정원 : 3,115명)	26,780	26,562	218
노인전문 요양센터 건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외 4개소 - 영등포·용산·하계·강동	9,910	18,277	△8,367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대 상 : 16개소	6,310	2,953	3,357
치매노인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노인 종합상담센터 운영 1개소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196	170	26
노인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대 (77개소→84개소)	14,469	13,453	1,016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시설수 : 96개소	9,650	8,441	1,209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대 상 : 28개소	301	353	△52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도우미 수 : 380명, 수혜인원 : 3,400명	4,518	4,659	△141
노인기초생활지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 내실화	88,530	86,084	2,446
경로연금 지급	◦지급기준 - 65~79세이하 수급권자 : 45천원/월 (34,832명) - 80세이상 수급권자 : 50천원/월 (9,371명) - 저소득 노인 : 35천원/월 (9,150명)	19,617	22,885	△3,268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 상 : 65세이상 노인 764,325명	56,312	52,073	4,239
노인위생비 지원	◦대 상 : 42,335명 (목욕비·이미용비 10천원/월·인)	5,080	4,817	263
경로식당 지원	◦경로식당 : 129개소, 5,113명/일	3,825	2,716	1,109
재가노인식사배달	◦대 상 : 6,504명 (식사배달 4,214, 밀반찬 배달 2,290)	3,322	3,152	170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건강진단 : 2,881명 ◦노인의 집 운영 : 62개소, 노인보호기관 운영 등	374	441	△67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고령자 취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	43,637	37,517	6,120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대 상 : 20개소(시립 19, 구립 1)	19,496	18,215	1,281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기능보강	◦기능보강 : 17개소(개보수 15, 장비보강 2)	2,533	3,199	△666
경로당 운영비 지원	◦운 영 비 : 2,725개소, 난방비 : 1,696개소	5,514	5,514	-
노인일자리 사업	◦지급기준 : 월 20만원내외, 연 24,780명	11,312	6,261	5,051
고령자 취업활성화 등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162개소 봉사대	4,782	4,328	454
	◦취업알선센터 : 14개소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1회)			
	◦노인자활후견사업 등 일거리			
장묘문화 개선	장묘시설 확충 및 화장율 제고	17,244	17,523	△279
추모공원 건립	◦추모의 집, 장례식장, 가족공원 등	1,000	1,000	-
장묘시설 위탁운영	◦시립화장장, 시립묘지 위탁 운영	11,179	9,960	1,219
구립 납골당 건립	◦지원기준 : 30만원/위(규모 16,700위)	4,000	5,010	△1,010
저소득시민 산골장려금 지원	◦대 상 : 600명, 200천원/인	70	70	-
시립묘지 공원화 등	◦휴게실 설치 1개소, 상록수 500주 등	995	1,483	△488
저소득 및 요보호 장애인 보호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76 → 82개소)	46,920	39,101	7,819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수 : 92개소(주간 70, 단기 22)	6,577	5,401	1,176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장애수당 : 39,477명(100천원/인, 월) ◦장애아동 부양수당 446명(50천원/월) 의료비, 교육비 등	31,210	25,414	5,79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116개소	4,034	3,580	454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30개소	2,577	2,460	1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자금 제공 사업 등	◦2인이하 14가구(420백만원), 3인이상 8가구(320백만원) ◦전세가 인상보전 등	2,522	2,246	276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31,704	69,219	△37,515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강북 1·2권역(12개노선 25대)	22,750	7,695	15,055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장애인 콜택시 120대 운영비 등	4,631	4,171	46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 등록차량 : 844대, 종사자 15명	377	362	15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 정비대상 : 206,919건 ◦ 서울시 전 지역 확대, 운전연습장 운영 등	3,946	56,991	△53,045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시설 이용자 만족도 향상 (73.5% → 74.0%)	122,722	112,894	9,828
장애인복지관 신·증축	◦ 용산, 영등포, 도봉, 서초	11,169	10,765	404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 대 상 : 36개소	38,546	34,996	3,550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대 상 : 5개소	1,076	2,136	△1,06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대 상 : 4개소 (병원 2, 의원 2)	3,731	3,082	649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대 상 : 34개소 - 정원 : 3,266명	49,196	46,312	2,884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운 영 : 60개소, 기능보강 : 55개소	11,006	9,896	1,110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 수화통역센터(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실로암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등	7,998	5,707	2,291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지원	13,708	14,241	△53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대 상 : 14개소, 교육인원 21,000명 ◦ 지원기준 : 인건비·운영비의 20 ~ 30% 지원	2,653	2,399	254
여성발전센터 운영	◦ 대 상 : 위탁 5개소, 교육인원 34,000명 ◦ 지원기준 : 2006 수입 및 지출고려 부족액 지원	4,589	4,583	6
여성발전기금 조성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비 안정적 확보	2,000	3,000	△1,000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	◦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여성사회활동 지원 ◦ 지원기준 : 2006 수입 및 지출고려 부족액 지원	4,307	4,000	307
여성네트워크 강화 및 여성정책 홍보	◦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워크샵 지원	9	259	△250
장애여성노동네트워크	◦ 장애여성 노동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150	-	150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양성평등 문화활동 확대	양성평등 의식 제고	1,023	948	75
사회교육기관 여성학강좌 지원 등	◦ 300개소 300강좌, 강사료 지원(150천원/인)	47	47	-
여성주간기념 행사	◦ 매년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서울사랑시민상(여성부문) 운영	275	275	-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 건강가정 워크숍 개최,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632	527	105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등	◦ 지도자 소양교육 및 자원봉사자 양성 등	69	99	△30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제공	여성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27,045	25,576	1,468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 대 상 : 11개소 ◦ 종사자수 : 58명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자립정착금 등	2,071	2,001	70
부랑여성시설 등 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 대 상 : 29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 부담비율 : 국비 50%, 시비 50%	6,870	5,223	1,647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대 상 : 31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회적응훈련비 등 ◦ 부담비율 : 국비 50%, 시비 50%	2,901	5,012	△2,111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	◦ 양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부담비율 : 국비 50%, 시비 50%	14,300	12,486	1,814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50	-	50
늘푸른지원센터 등 운영	◦ 가출, 성매매 등 요보호 십대여성 보호 등	853	854	△1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 지원	50,482	50,023	45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대 상 : 민간시설 39·위탁시설 2개소, 3,359명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직업훈련비 등	28,915	26,783	2,132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 소년소녀가정 222명, 가정위탁보호아동 827명, 결식아동 35,312명(급식단가 3,000원/식)	9,960	13,610	△3,650
중·고생 중식비 지원	◦ 대 상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4,000명 ◦ 지원일수 : 180일(방학기간제외)	1,800	-	1,800
아동안전 보호	◦ 안전교육 실시, 안전캠프 운영 등	1,091	782	309
아동건전육성 지원 등	◦ 아동그룹홈 15개소 운영, 장애입양아동 40명 등	8,086	8,848	△132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보육기반 구축	특수 보육시설 확충 (330→385개소)	3,887	3,814	73
방과후 교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설치 30개소, 341개반 운영 ◦ 지원기준 : 설치비 30,000천원/개소 운영비 1,450천원/월, 반 (국·공립 850천원) ◦ 부담비율 : 시비 50%, 구비 50% 	2,979	2,711	268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설치 25개소, 115개소 운영 ◦ 지원내용 : 설치비,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 부담비율 : 시비 50%, 구비 50% 	908	1,103	△195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보육수요 충족률 제고	211,042	203,544	7,858
보육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 등 ◦ 부담비율 :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195,537	192,752	2,785
보육시설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민간시설 환경개선 지원 ◦ 부담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4,730	9,032	5,698
직장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운영(서울시보육시설 연합회) 	775	1,760	△985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건전 여가공간 제공	53,345	73,274	△19,929
청소년수련관 및 서울유스호스텔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중 26개소(시립 16, 구립 10), 건립중 4 개소(광진, 마포, 강서, 서울유스호스텔), 리모 델링 1개소(보라매), 증축 1개소(중랑) 	17,998	26,975	△8,977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및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운영 16개소, 개보수비 7개소, 특성화사업 비 등 	8,244	10,023	△1,779
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및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운영 9개소, 개보수비 5개소 	8,548	8,266	282
청소년 수련관 집기, 비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개관 2개소(중랑 용마, 도봉 창동) 	1,050	600	450
서울유스호스텔 집기·비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중구 예장동 산 4-5 ◦ 규 모 : 6,519.49㎡(지상1~지상6층) 	1,440	-	1,440
서울유스테크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4개소 ◦ 지원내용 : 공공요금 및 VJ인건비 등 지원 	53	139	△86
영어체험마을(2개소)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영어체험마을(2004. 11개관) ◦ 강북영어체험마을(2006. 3 개관) - 저소득층 참여비, 시설개보수, 위탁운영비(서울) 등 	1,918	2,515	△597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강북구 수유 6동 ◦ 규 모 : 부지 19,657평, 연면적 3,520평 	13,594	24,756	△11,162
서울청소년의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 규 모 : 부지 41,682평, 연면적 19,214평 ◦ 총사업비 : 80,000백만원 	500	-	500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수준향상	청소년의 참여 동기부여 확대	4,334	5,654	△1,320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 시설 3개소(송추, 내곡, 미금게임장) 운영 및 기능 보강	1,317	1,913	△596
청소년 광장 운영	◦ 이동광장 100회 운영(특장차 활용)	350	600	△250
청소년 문화수련 활동	◦ 내 용 : 문화적 감성활동 등 10개영역	820	1,298	△478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지원	◦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개최	300	-	300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345), ◦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100), ◦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400), ◦ 유스페스티벌 대회(320) 등 	1,547	1,843	△296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감시·예방활동 강화	5,145	3,139	2,006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200) ◦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253) ◦ 가출청소년보호·지원사업(300) 	1,242	1,193	49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100) ◦ 지역청소년위원회 등 운영(56) ◦ 야학 등 지원사업(531) ◦ 야간공부방 운영(457) ◦ 근로청소년 체육대회(18) ◦ 대안교육지원(707) ◦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34) 	3,903	1,946	1,957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	전통음식문화의 세계화 및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246	305	△59
Hi-Seoul 서울사랑 음식축제	◦ 전시·경연·음식체험·부대행사 등	115	115	-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강화	110	150	△40
식품·공중업소 위생점검	◦ 식품, 공중위생업소 점검 등	21	40	△19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화장실문화 수준 향상	화장실 개선 및 취약지역 화장실 증설	1,402	2,009	△607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	◦ 저소득 밀집지역 : 12개소	300	625	△325
기존공중화장실 수준향상	◦ 소규모 화장실 확충 : 15개소(5평 미만)	450	450	-
첨단화장실 설치	◦ 첨단무인화장실 설치(3개소)	270	630	△360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등	◦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및 유지관리 등	382	304	78
시립병원 기능강화	시립병원 확충 및 진료수준 향상	91,745	44,819	46,926
시립보라매병원 새병원 신축	◦ 420병상(지하 3층, 지상 9층)	23,001	5,579	17,422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 병상수 : 600병상(지하 4층, 지상 10층)	22,000	-	22,000
시립아동병원 신축	◦ 아동병원 : 300병상(지하 1층, 지상 4층)	8,175	2,054	6,121
북부노인병원 신축·위탁운영	◦ 10개과 200병상 : 노인 160, 치매 30, 호스피스 10	11,739	13,202	△1,463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 24개과 500병상 : 일반 446, 응급의료센터 54	12,000	7,195	4,805
시립보라매병원 위탁운영	◦ 22개과 561병상 : 일반 502, 행려 32, 중환자 27	6,700	6,668	32
시립동부병원 위탁운영	◦ 16개과 200병상 : 일반 150, 행려 50	6,100	5,938	162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위탁 운영 등	◦ 지하 1층, 지상 3층 ◦ 치료실, 전신마취진료실, 방사선실 등	2,030	4,183	△2,153
건강·안전 도시로 시민건강 증진	응급의료정신센터, 건강생활 실천	4,899	3,867	1,03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구급차 인명구조원 등 응급처치 교육	237	37	200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및 정보 제공	3,443	2,480	963
안전도시만들기 추진	◦ 안전도시 시범추진 등	155	383	△228
지역보건 의료계획	◦ 보건조직 진단·역할 연구용역	82	-	82
건강생활 실천사업	◦ 건강생활 실천·건강엑스포 개최	982	967	15
예방사업 강화	전염성 질환예방으로 시민보건 향상	7,672	6,905	767
에이즈 예방관리	◦ 감염자 진료 및 예방홍보 등	1,749	1,755	△6
예방접종 사업 등	◦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B형수직감염	4,148	1,376	2,772
예방의약품 비축 등	◦ 소독약품 구매·보관 및 방역기기 유지보수 등	1,775	3,774	△1,999
지역보건서비스 확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64,123	49,862	14,261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 대 상 : 4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10,808	8,230	2,578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 상 : 36,000명	13,210	11,464	1,746
출산장려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8,774	-	8,77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금연사업 등	6,085	4,563	1,522
모자보건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등	3,881	3,597	284
지역정신보건센터 지원	◦지역, 광역,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4,000	3,050	950
정신요양시설 지원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자애원 운영 지원	3,268	3,008	26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5,038	3,260	1,778
병원지원형 거주시설 운영	◦병원거주시설 위탁운영(4개소)	1,800	3,000	△1,200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클럽하우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2,406	179	2,227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운영 등	4,853	9,511	△4,658
식품안전성 확보 및 보건환경 수준 향상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및 전염병·식중독 예방감시 강화	6,686	6,279	407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750	623	127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283	240	43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1,630	1,591	39
전염병·식중독 예방검사	◦전염병 세균검사 및 연구	641	506	135
대기 오염물질 검사	◦대기 오염물질 검사 및 장비구매	1,370	1,311	59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수질·유해화학물질 검사	923	960	△37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행정지원	◦시설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구매	1,089	1,048	41
시립병원 진료능력 수준 제고	의료체계 개선으로 대시민 진료수준 제고	11,695	9,789	1,906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	◦4개과 250병상 : 소아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치과	2,240	1,853	387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7개과 337병상 : 정신과, 재활학과,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과	4,455	3,678	777
서북병원 진료수준 제고	◦14개과 547병상 : 결핵 240, 노인 210, 치매 90, 중환자 7	5,000	4,258	742
일 반 예 산	인건비, 기본경비 등	85,001	81,663	3,338

2 주택 및 도시관리—지역간 균형잡힌 도시

□ 정책방향

-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 뉴타운 시범지구 : 길음뉴타운사업 공
공시설정비 마무리, 은평뉴타운사업
본격 추진
 - 뉴타운추가지구·균형발전추진지구 :
기본계획 수립, 전략도시계획시설사
업(도로, 공원) 지속 추진

- 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
 - 서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공급
 -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품격있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 도시경
관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국제적 경
관도시 구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

□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시개발	○ 뉴타운개발사업 지정	개소(누계)	15	26	26	30	30
	○ 균형발전추진지구사업	개소(누계)	5	8	8	10	10
	○ 대학가 주변 교육·문화환경 Upgrade 추진	개소	-	1	6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km ²	80.03	79.83	79.63	79.43	79.23
주 택	○ 주택보급률	%	91.7	94.2	96.8	99.5	102.0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	호	19,173	25,500	17,280	20,700	20,700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개소	5	3	5	5	5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개소	10	10	10	10	10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주 택 및 도 시 관 리		987,942	1,757,564	△769,622
지역균형발전 도모	뉴타운개발, 지역균형발전 촉진	184,051	630,521	△446,469
뉴타운 시범지구 개발	○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 2006년 완료	14,299	515,157	△500,858
	- 서경로확장, 소공원4개소조성, 길음초교진입로 등 ○ 지역개발기금 융자(SH공사) : 은평뉴타운 개발지원 등	150,000	-	150,000
뉴타운 추가지구 개발	○ 2차 뉴타운지구 전략 도시계획시설사업	3,100	77,200	△74,100
	- 천호뉴타운 진입도로 공사 ○ 3차 뉴타운지구 11개소 개발기본계획 수립	16,000	6,000	10,000
균형발전 추진지구 사업 등	○ 균형발전추진지구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 등 - 청량리, 가리봉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본설계비 등	652	32,164	△31,512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도시관리 기본틀 재정립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계획 수립 : 2006년 완료	498	4,335	△3,837
도시기본계획 주요집행 계획 수립	◦ 생활권역별 중장기계획 및 강북지역 육성방안 마련	200	200	-
주거지역 종별 관리방안 및 개발모형 연구 등	◦ 중세분화이후 주거지역 변경현황분석, 종별 개발 모형 연구 및 관리방안 마련 등	298	4,135	△3,837
도시의 입체적 관리 기반 구축	지구단위계획구역 환경정비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기반시설 정비	16,455	33,755	△17,300
지구단위계획구역 환경정비	◦ 대학가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서 울대 1개소 ◦ 명동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 홍익대 등 대학가주변 환경정비사업 지원 ◦ 4개 차치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 지원	480 4,000 248 5,015	2,000 - 4,850 -	△1,520 4,000 △4,602 5,015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 종전 도시설계 상세지구 미정비 99개소 재정비 등 - 2005년 15개소 → 2006년 8개소	795	1,584	△789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공시설 정비	◦ 성내천좌안 분류식 하수도정비사업 등 2개사업	5,917	25,321	△19,404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설치부지 매입	71,624	96,285	△24,661
공공시설용 부지 확보	◦ 공공시설 설치 부지 매입	71,424	96,085	△24,661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수립 등	200	200	-
도시정보기반의 강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및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 유지보수	510	1,251	△741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유지관리 - 고시 및 조서자료 5,300건, 도면 1,100건 ◦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 보완 및 서울시전자지번도 재구축 등	281 229	527 724	△246 △495
서민주거 복지 수준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5만호 공급 ('05~'06)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 : 103개단지 44,328가구	246,394	338,427	△92,033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성 도모	◦ 공공임대주택 건설출자 : 2006년 6개 지구 ◦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건설 : 18구역 5,140호 ◦ 택지개발사업(상암지구) 등	92,080 67,612 4,851	146,864 80,683 23,047	△54,784 △13,071 △18,196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	◦ 사회복지기금(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임대료 보조)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임사이주용아파트 공가관리 ◦ 임대차분쟁 조정, 국민주택 관련사업 등	2,500 79,221 130	3,000 84,750 83	△500 △5,529 47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	중로Up-grade프로젝트 추진 : 2006 완료 북촌 한옥 개·보수 보조/용자 목표 : 40/21동	18,458	30,962	△12,504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 ◦ 건축위원회 운영, 서울모습기록 사진전 개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등 	166 204	150 3,466	16 △3,262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적·국제적 경관 도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 Up-grade 프로젝트 추진 - 가로시설공사 2.8km, 민간건축물 리모델링 용자 6동 ◦ 야간경관개선(덕수궁주변, 한강교량 3) 및 유지보수 ◦ 기성시까지 환경개선(미아8동 큰마을길) 문화마을 만들기(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 및 광고물시상, 포토아일랜드 조성 등 	8,606 3,641 2,197	9,464 4,118 1,895	△858 △477 △302
역사·전통마을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마을 가꾸기 - 한옥 매입·개선 : 7/5동 - 한옥개·보수 보조/용자 : 34/30동 	3,644	11,870	△8,226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주택재개발/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 10개소/3개소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해관리구역 지정	36,336	57,289	△20,9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정비(국고보조) - 응봉1지구 등 10개지구 도로, 상·하수도 등 ◦ 재개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용자 지원 ◦ 목동중심축 도시개발시설공사 ◦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재건축분야), 세운상가 2,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개선 수립 용역 등 	9,098 1,974 20,000 2,000 680	23,102 5,739 20,000 2,000 158	△14,004 △3,765 - - 522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 감소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250	307	△57
건축물관리체계 개선으로 도시관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진 촬영 및 이미지데이터 구축 ◦ 건축·주택통합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건축정보운영 내실화 등 	1,556 779	1,061 978	495 △199
일반예산	기본경비, 예비비 등	413,616	604,739	△19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 ◦ 주택사업 ◦ 지역개발기금 	206,174 206,442 1,000	425,276 179,463 -	△219,102 26,979 1,000

3 도시안전관리 — 재해없는 서울

□ 정책방향

- 각종 재해의 예방체제 및 대처능력 향상
 -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24시간 감시체제 확립
 -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통합적인 대응체제 구축
- 자연재해에 능동적 대처로 피해 최소화
 - 펌프장 신·증설, 저류조 설치 등 수방시설 정비
 - 제설장비 보강 등으로 제설대책 추진 강화

진 강화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안전성 확보 및 내구성 증대
- 재난대비와 시설물 관리의 체계화 및 정보화
 - 재난 유형별, 기관별 대응·역할 매뉴얼 작성 보급
 - 각종 시설물 도면 전산화,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등

□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도로시설물	도로시설물 기능 보강	개소	60	57	57	55	52
	정밀안전진단실시	개소	14	17	19	21	14
치 수	빗물펌프장 설치	개소	110	110	111	111	11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개소	35	36	36	36	36
주 택	노후시민아파트 정비	동	25	1	-	-	-
소방·방재	소방용수시설	개소(누계)	50,754	52,384	54,384	55,884	64,415
	119 구급대	대(누계)	111	112	114	117	121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도 시 안 전 관 리		884,292	962,646	△78,354
도시화재·재난취약구조개선	화재·재난발생 감축	2,672	2,874	△202
화재·재난위험도 최소화	◦ 삼풍사고관련 대출금(200억원) 원리금 상환 -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72	2,874	△202
긴급구조·구급능력의 향상	재해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확충·보강	3,616	2,494	1,122
인명 구조·구급능력의 향상	◦ 긴급 특수구조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긴급구조 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3,345 52	1,825 42	1,520 10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119 구급 봉사활동의 강화	◦ 119자동신고기 보급(500대)	219	627	△408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	도시재난 통합운영시스템 보강	33,184	31,165	2,019
재난관리지휘 전달체계의 효율화	◦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6,055	7,039	△984
	◦ 유·무선 통신 및 방재체제 보강	8,763	9,358	△595
화재·재난현장 출동의 신속화	◦ 소방차량 대·폐차(63) 및 증차(4)	8,454	6,974	1,480
	◦ 소방헬기 장비 보강 등	423	412	11
화재진압능력 향상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보수	6,554	5,388	1,166
	◦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2,935	1,994	941
시민자율 방재능력 향상	자체 조기진화 등 자율방재활동율 향상	5,202	2,879	2,323
안전의식확산 홍보활동 강화	◦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소방홍보활동 강화	4,693	2,492	2,201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509	387	122
소방방재 관리업무의 과학화	재난현장 5분이내 도달	34,538	37,391	△2,853
화재·재난처리의 충실화	◦ 화재조사 감식용 기자재 확충	33	83	△50
	◦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1,090	1,447	△357
대응력 극대화를 위한 직무환경 개선	◦ 노후 소방관서 증·개축, 개보수, 신설 등	12,014	19,411	△7,397
	- 소방서 : 재건축 1(성북), 증축 1(도봉)	4,054	16,828	△12,774
	- 파출소 : 신설 3(회경, 상암, 신탄리), 재건축 5, 증축 5	7,960	2,583	5,377
◦ 직원복지 증진 및 소방관서 유지보수 등	18,564	14,826	3,738	
교육·훈련의 고도화	◦ 소방학교 교육 훈련 강화 등	2,837	1,624	1,213
민방위역량의 제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1,700	2,109	△409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 비상대비계획의 철저	48	43	5
	◦ 비상관리업무의 효율화	511	452	59
	◦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546	505	41
	◦ 민방위대비 기반의 충실화	595	1,109	△514
자연재해 예방체계 구축	수해·설해 피해 최소화	125,690	154,984	△29,294
수해 예방 철저	◦ 빗물펌프장 신·증설(5개소)	22,607	36,565	△13,958
	◦ 빗물저류조 설치(5개소)	12,138	400	11,738
	◦ 중랑천 하도정비 등 수해예방(7개사업)	7,014	33,261	△26,247
수방시설 기능 강화	◦ 수문 이중화 및 보수·보강	5,882	10,820	△4,938
재난관리기금 적립	◦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 10/1000	69,444	65,807	3,637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제설대책 추진	◦ 제설장비 보강 등 제설대책 추진	8,605	8,131	474
	- 제설장비 보강 및 노후차량 대체차	6,275	6,275	-
	- 제설용역 및 운영비	2,330	1,856	474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내구성 증가	252,141	290,511	△38,370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구축	◦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시설 설치	8,950	7,722	1,228
	- 시설물 안전진단(17개소)	7,500	5,622	1,878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1,450	2,100	△650
◦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10,521	9,589	932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69,583	120,555	△50,972
	- 한강교량 성능개선 및 보수보강(동호대교 보수 등)	11,180	70,015	△58,835
	- 일반교량 보수보강(13개소)	12,994	10,803	2,191
	- 고가도로 보수보강(8개소)	10,682	13,869	△3,187
	- 터널 보수보강(10개소)	10,050	10,246	804
	- 하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8개소)	10,960	6,366	4,594
- 지하차도 보수보강(17개소)	12,717	9,256	3,461	
자동차 전용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자동차 전용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57,693	61,719	△4,026
	- 자동차 전용도로 위탁관리	25,209	27,221	△2,012
	-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위탁	13,710	16,356	△2,646
	- 공동구 위탁관리	7,920	7,700	220
	- 소규모공사 위탁감리	8,854	8,442	412
	-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	2,000	2,000	-
도로환경 및 경관 개선	◦ 도로조명 등 도로부속시설물 성능개선	85,389	89,551	△4,162
	- 가로등 조명개선 및 기전시설물 유지보수	31,773	39,856	△8,083
	- 방음시설 설치(9개소)	8,058	9,033	△975
	- 중차량 노선시설물 성능개선	14,552	5,803	8,749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유색포장 등	31,006	34,859	△3,853
노후아파트 정비	◦ 시민아파트 정리 및 유지 보수	20,005	1,375	18,630
	- 회현제2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건설공사 수준향상	설계적격심의 만족도 향상(87%이상)	666	913	△247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 신속공정화 품질시험과 시험장비 개선	356	322	34
건설기술발전 및 교육강화	◦ 서울사랑시민상(토목) 수여 및 건설기술 교육	310	591	△281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정비	대시민 편의성 향상	36,526	75,440	△38,914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 복개지상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3개하천)	15,176	48,537	△33,361
	- 성북·홍제·정릉천			
	◦ 자연형 하천 조성(3개하천)	6,300	6,977	△677
	- 성북·정릉·성내천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민 편의시설 확충	◦ 시민과 함께하는 우수지 정비(3개소) - 신구로·독산·뚝섬 우수지	3,150	400	2,750
	◦ 하천둔치 시민편의시설 설치·보수 - 하천둔치 진입로·휴식공간 조성	11,900	19,526	△7,626
일 반 예 산	인건비, 기본경비 등	388,357	361,886	26,471

4 환경보전 — 맑고 깨끗한 도시

- 정책방향
 -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추진
 - 생활권 주변 공원 및 녹지 확충
 -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등 자동차 오염 저감정책의 확대
-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 먼지저감화 지속 추진
-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 수질의 고급화와 신뢰도 제고
 - 경영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녹 지 확 충	가로녹지율	%	15.3	16.1	16.9	17.2	17.5
	생활권공원(1인당)	m ²	4.60	4.75	4.92	4.93	4.95
대기질 개선	O3	ppm	0.014	0.014	0.014	0.014	0.013
	미세먼지	μg/m ³	58	55	52	50	48
쓰레기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	100	100	100	100	100
	생활쓰레기 재활용	%	37.1	37.9	38.7	39.5	40.3
수 질 개 선	BOD(잠실)	ppm	1.6	1.5	1.5	1.4	1.4
	BOD(가양)	ppm	3.0	3.0	2.9	2.8	2.7
상 수 도	상수도 생산량	만톤/일	331	343	340	341	337
	유수율 제고	%	88	90	91	91	91
	수질검사항목	개	145	145	145	145	145
하 수 처 리	하수처리시설	만톤/일	581	581	581	581	581
	하수관거정비	km	1,503	1,640	1,777	1,914	2,051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환 경 보 전		2,096,893	2,171,038	△74,145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1인당 생활권 공원녹지면적 : 현 4.60 → 4.75㎡	402,873	389,005	13,868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 공원용지 보상 :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등 37개소 ◦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17건) ◦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7개소)	177,431	143,602	33,829
학교공원화 (초·중·고·대)	◦ 대 상 : 초·중·고 90개소, 대학교 4개소 ◦ 내 용 : 담장개방녹화, 운동장 유희공지 수목식재	22,700	24,342	△1,642
1동 1마을공원 조성	◦ 대 상 : 9개소 -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병행 (개소당 약 1,000평 내외)	50,000	26,000	24,000
공원 및 녹지 조성	◦ 공원조성(15개소) 등 ◦ 기타 생활주변 녹지조성 등	39,826	63,029	△23,203
가로 및 하천변 녹화	◦ 가로변 향토수종 식재 및 하천변 녹화 ◦ 가로수 생육(토양, 보호판)환경 개선 : 100개소 ◦ 지정보호수 수세회복 : 12개소 ◦ 견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 5개소	16,650	18,511	△1,861
공원운영 및 관리	◦ 서울숲 유지관리(6,934백만원) ◦ 어린이대공원 유지관리(11,899백만원) ◦ 시 관리공원(4개소) 유지관리(43,909백만원) - 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남산공원	76,533	97,851	△21,318
생태계 복원 및 보전	◦ 산림내위험시설물 정비,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산불방지활동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	19,733	15,670	4,063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 가꾸기	한강공원 시민이용만족도 향상(54% → 57%)	52,974	50,106	2,868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운동·문화·휴게시설 조성(14종 31개소) ◦ 화장실 신설(3개소) 및 개선(46개소) ◦ 수영장 리모델링 및 운영개선(4개소) ◦ 접근로 증설(3개소) 및 보수·정비(40개소) ◦ 교통체계개선 등 이용시설 기능 보강(7개사업)	6,279 694 5,687 8,160 6,782	9,198 175 1,829 13,354 4,581	△2,919 519 3,858 △4,744 2,201
자연생태계 회복 및 녹지관리	◦ 생태공간 조성 및 공원녹지 관리 - 잠실수중보 어도개선 등 생태환경 조성(6개사업) - 수목식재(164천주) 등 녹지관리(4개사업)	11,223	8,728	2,495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한강공원 유지관리	◦ 공원이용시설·하천시설 유지관리 - 한강저수로 정비 등 19개사업	13,144	11,643	1,501
한강이용 시민 참여사업	◦ 행사 이벤트 등 시민참여사업(12개) - 서래섬 유채꽃 축제 등 이벤트 사업(3개) -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사업(9개)	555	598	△43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	O ₃ 농도 : 0.014ppm 미세먼지 : 50 μ g/m ³	285,319	243,686	41,633
대기질 개선	◦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 엔진개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 11대 ◦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772대	139,657	102,352	37,305
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 대기측정소 관리 : 43개소 ◦ 노후측정기 교체 : 11개소(측정기 8, 전광판 3) ◦ 배출가스단속 : 단속반 45명, 연 1,000천건 단속	2,902	3,224	△322
깨끗하고 편리한 열공급	◦ 집단에너지 공급 : 204천세대 ◦ 친환경에너지 시설보급 : 태양광집광시설 설치(2개소)	142,760	138,110	4,650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 37.9%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 : 100%	53,088	62,617	△9,529
폐기물 발생 최소화	◦ 1회용품사용 단속 : 연 2회 ◦ 분리수거의무대상건물 지도점검 : 연 2회 ◦ 음식문화정착 캠페인	270	239	31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 : 4개소 718톤 ◦ 하수병합처리시설 운영 : 1개소 20톤 ◦ 나눔장터 운영 : 연 32회 ◦ 재활용사업자 융자 : 150백만원이내(연리 0.8%)	10,315	20,327	△10,012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 4개소 2,850톤 - 양천(400톤), 노원(800톤), 강남(900톤), 마포(750톤)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지원기금 출연 - 폐기물반입료의 10~20%, 난방비의 50~70%	42,048	42,009	39
깨끗한 서울 가꾸기	◦ 12m 이상 도로물청소 : 매일 1회 ◦ 자치구별 청소행정 평가	455	42	413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를 안정되게 생산·공급	수질의 고급화를 통한 시민의 신뢰 제고	451,427	568,776	△117,349
수돗물 생산재료비	◦ 팔당원수 : 23만톤/일, 한강원수 : 173만톤/일 ◦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비, 슬러지케익처리비 분말활성탄구입비	99,291	101,302	△2,011
배수지 건설	◦ 배수지 건설 : 총 6개소 11.45만천㎡	19,861	23,773	△3,912
수도관 정비	◦ 규 모 : 노후배급수관 70km, 송배수관 41km 불용관 정비 90km	106,060	175,446	△69,386
급수공사	◦ 신규 11,460건, 간선배관 6.6km, 계량기 구입 등	36,554	48,549	△11,995
아리수 고급화 사업 등	◦ 영등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도입, 자양취수장이전, 강북정수장확장, 기타 시설개량 등	187,924	219,706	△31,782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잠실 BOD : 1.6ppm 가양 BOD : 3.0ppm	13,263	15,011	△1,748
상수원 보호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 연간 40천톤 ◦ 잠실지구 오수관거 분류식 관로화 - 오수관·하수암거 설치, 하수도 개량 ◦ 비점오염물질차단(녹조방지) 시설 설치	11,820	11,299	521
지천수질개선	◦ 수질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 측정망 26개소, 시민참여 수질측정 12천명 ◦ 환경신문고 운영 : 신고전화 128번 ◦ 폐수배출업소 지도 감독 : 연 100개소	425	613	△188
지하수 관리	◦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 119개소 ◦ 지하철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 : 2개소(총 32개소) ◦ 도양오염 우려지역 관리 : 205개소	1,018	3,099	△2,081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적 하수도시설 구축	생활폐수의 효율적 처리로 하천수질보전 및 친환경적 하수처리장 조성	326,577	301,153	25,424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4개처리장)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4개처리장) ◦ 하수처리장내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탄천, 서남) - 탄천하수처리장 주변 생활수림대 조성	70,210 68,997 1,213 30,487 22,692 7,795	61,585 61,346 239 9,300 4,300 5,000	8,625 7,651 974 21,187 18,392 2,795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하수관거 정비 등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500	-	2,500
	◦ 하수도 종합정비(6개소)	14,552	12,888	1,664
	◦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45개소)	34,520	64,122	△29,602
	◦ 하수암거 보수보강(50개소)	33,107	30,419	2,688
	◦ 차집관거 정비(4개소)	2,041	2,877	△836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탄천, 서남)	75,707	66,859	8,848
	◦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중량, 난지)	63,453	53,103	10,350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 구축	사전·사후 환경관리체제 구축	2,666	2,810	△144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	◦ 환경영향평가 : 연간 30건	376	415	△39
	◦ ISO14001(환경관리체제) 사후관리 ◦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			
시민참여 활성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2,290	2,395	△105
	◦ 서울의제 21 실천사업 추진			
	◦ 환경작품 공모전 개최			
	◦ 환경 NGO 활동 지원 - 국제 환경영화제, 환경마라톤 등			
	◦ 매립지, 자원회수시설, 정수장 등 현장교육 실시 - 초·중학생, 시민대상 연간 500회 12천명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국고반환금, 부채원리금, 채무부담상환금, 예비비 등	508,706	537,874	△29,168

5 도로·교통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방향

-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정착
 - 버스우선 인프라 정착, BMS 운영 등 서비스 개선
 - 저공해버스 등 시내버스의 고급화
- 신교통수단 및 지하철망 확충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지하철공기내 완공을 위한 적기 지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
 - 그린파킹 등 주차장 건설사업 지속 추진
- 강변북로 확장 등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 등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빠 른 대중교통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누계)	km	57.1	80.7	103.7	191.2	191.2
	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한 배차간격 준수율	%	90	90	90	90	90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편 리 한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율(버스, 지하철)	%	65.0	68.0	70.0	70.0	70.0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누계)	개소	5	7	9	9	9
주차난해소	시전체 주차장 확보율	%	89.0	89.8	90.8	92.1	93.2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	%	88.0	90.0	91.5	93.2	95.2
도로망구축	도로율	%	21.74	22.10	22.29	22.48	22.67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도 로 · 교 통		2,319,484	2,521,810	△202,326			
대중교통의 신속성 확보	버스전용차로 개선 70개소 간선버스 통행속도 : 30.0km('06)	11,206	45,162	△33,956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 중앙버스전용차로 4개노선(23.6km) - 양화·신촌로 등 - 버스전용차로 설치, 정류소 설치 등	7,383	41,950	△34,567			
버스종합사령실 운영	◦ 무선통신망 이용료 등	1,909	1,756	153			
교통상황실(TOPIS) 운영 등	◦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공공요금 등	160	887	△727			
	◦ 시스템(2단계 : 백업시스템) 구축	1,295	-	1,295			
버스 전용차로 개선사업 등	◦ 차선제거 및 신설 등 70개 지점	100	400	△300			
	◦ 시내버스등 버스운행 관리	109	169	△60			
	◦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250	-	250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1개소)	1,104	2,734	△1,630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	◦ 위치 : 구로구 오류동 174-1 ◦ 규모 : 환승주차장 330면, 버스베이 1개소	1,104	2,734	△1,630			
버스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간·지선 버스운행	271,232	305,302	△34,070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 버스운행관련 인상된 유류세액 일부보조 - 경유 ℓ당 231.04원	67,499	57,300	10,199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른 적자발생액 보조	180,000	226,213	△46,213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내버스 경영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송비정산, 종사자관리 등 시스템 구축	405	316	89
난곡지역 신교통시스템 구축	◦ 난곡 → 신대방역 GRT건설(토지매입)	20,000	1,450	18,550
수도권교통조합 분담금 등	◦ 수도권 교통조합 분담금 ◦ 교통대책 추진(UITP 서울총회개최 등) ◦ 시내버스정류장 BIS설치 ◦ 표준원가조사, 연비조사용역 등	2,006 900 200 222	- 200 - 19,823	2,006 700 200 △19,601
시내버스 차고지 운영	공영차고지 운영 5개소, 조성 2개소, 매입 4개소	65,325	55,394	9,931
공영차고지 운영위탁 등	◦ 대상 : 은평·강동·송파·양천·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954	1,936	18
공영차고지 조성	◦ 2개소(강서, 도봉권역)	21,194	22,844	△1,650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 매입대상 4개소	42,177	30,614	11,563
지하철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	46,600	198,010	△151,410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	◦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신분당선 우리시 부담금 - 사업비('06): 264,472(국비75%: 지방비25%) • 국비 75%: 183,552 • 지방비25%: 서울시(36,600) 경기도(44,320)	36,600	41,743	△5,143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기타	10,000 -	- 156,267	10,000 △156,267
교통수요 관리 강화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	4,714	4,222	492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위탁 등	◦ 대상 : 2개소(남산1·3호터널) - 위탁운영(시설관리공단)	4,714	4,222	492
택시제도개선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요금체계 개선 등	190,221	180,226	9,995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운영 및 교육	◦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경비	1,468	1,809	△341
운수업체(택시·화물) 유가보조금 등	◦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 경유: ℓ당 210.04원, LPG ℓ당 154.46원	185,540	176,000	9,540
택시콜서비스 지원	◦ 택시콜서비스 지원	2,200	2,200	-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택시카드결제 이용활성화	◦ 카드결제 시범운영 (3,000대) ◦ 유류세액 신청대상등	308 125	- 217	308 △92
택시서비스 품질평가 등	◦ 택시서비스 품질평가 등	580	-	580
교통소통개선을 위한 첨단교통관리	도시고속도로 통행속도 향상 내부순환로 55km, 강변북로 등 50km	22,761	24,688	△1,927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 내부순환로 등 7개 도시고속도로 - 전광판, CCTV 등 설치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시설관리공단 7·19·20층)	21,610	22,898	△1,288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활성화와 정보수집체계 확 대구축 ◦ 경찰청 교통정보상황실 운영 지원	1,151	1,790	△639
소통개선 및 교통안전	상습교통정체 지점 정비 100개소 주요도로 불법주차 단속 800,000건	87,439	87,419	20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대상 : 6종(시선유도봉 등) ◦ 내용 : 훼손시설물 교체 및 정비	948	1,350	△403
교통신호기 신설	◦ 신호기 현황 : 신호등 58,959개, 교통신호제어기 2,887개소 ◦ 내용 : 교통상황 변화로 신호등 필요장소에 신규설 치 (242개소)	3,074	3,239	△165
교통신호기 보수	◦ 시설물별 보수기준(총물량의 3%~10%)에 따라 보수	8,313	8,613	△300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 노면표지선 22,724km (중앙선, 구분선,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 편성기준 : 시설물별 총물량의 10%~30%	6,259	7,293	△1,034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	◦ 교통안전표지 : 213,921매 ※ 총물량 2%	736	1,327	△591
상습교통정체 지점 개선	◦ 대상 : 주요정체지점 등 개선 (100개소) ◦ 내용 : 도로구조 및 운영방법 개선 등	5,000	2,500	2,500
도심교통체계 개편	◦ 위치 : 홍인문로, 둔화문로, 남대문로 ◦ 내용 : 도심지역 통행체계(일방통행, 차등차로 등) 개선	1,000	3,000	△2,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대상 : 교통사고 잦은 곳 30개소 ◦ 내용 : 도로상 기하구조, 교통안전 시설개선	1,062	592	470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상 : 일원초교 등 130개소 ◦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36,502	23,412	13,090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하이서울 순찰대 운영비 등	4,387	1,719	2,668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 80개소 ◦수동단속시스템 설치 : 5개소	3,216	2,261	955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경상사업비 등 ◦차량대폐차, 교통체계개편 홍보 등 기타사업비	16,942	32,113	△15,171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추가설치 연장 630km	59,625	42,791	16,834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등	◦자전거도로 추가설치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등 ◦도심관광 문화지역 보행로가꾸기등	5,321 1,200 1,354	7,124 800 -	△1,803 400 1,354
보도환경 정비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4대문안 보도상 한전기기 정비 등 3개 사업 ◦청계천 주변, 서울광장 주변 도심, 풍물시장	49,410 2,340	32,888 1,979	16,522 361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88%→90%	71,020	80,661	△9,641
민영주차장건설 자금 지원	◦대상 : 자기소유 토지에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로 담보능력자 ◦용자 : 건설비전액, 30억원까지	3,000	3,000	-
Green Parking 2006	◦개요 : 주차사업 패키지화 ◦대상 : 구별 2개지역	28,790	26,978	1,81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시비 지원기준 - 부지매입비 : 최고 40% - 건 설 비 : 최고 70%	10,000	17,000	△7,000
공영주차장 입체화	◦시유공영주차장 입체화 3개소	6,857	1,800	5,057
1동1마을공원 및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홍익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등 2개소 ◦학교 지하주차장 3개소 ◦기타 주차장운영대행사업 등	10,380 8,409 3,584	12,984 11,445 7,454	△2,604 △3,036 △3,870
도시물류체계 개선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17,357	5,523	11,834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	◦위치 : 송파구 문정·장지동 일대 ◦규모 : 도로B=40m, L=720m 램프B= 7m, L=465m	16,853	5,000	11,853
화물대기주차장 임차보증금 인상 등	◦종묘·훈련원 주차장 임차료 인상(5%) ◦화물자동차 통행제한(설계)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 종합계획수립 등	76 77 350	73 450 -	4 △373 350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교통방송 운영	교통방송 청취율 44.8% → 45%	18,382	13,449	4,933
방송 제작	◦라디오 정규방송 및 CATV 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운영	18,220	13,390	4,830
방송 관리	◦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	162	59	103
도로망 구축	도시고속도로연장 : 183.9km → 233.0km(2010년) 도 로 율 : 21.74%('05) → 22.10%('06)	328,782	361,149	△32,367
도시고속도로 확충·개선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 - 강변북로(청담대교~성수대교)확장 등 3개 사업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 강변북로(성산대교~한남대교) 구조개선 등 5개 사업	70,669 5,942	56,498 10,280	14,171 △4,338
광역도로망 구축	◦광역도로망 구축 : 4개 사업 -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 천호대로(방아다리길~시계) 확장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	26,000	47,124	△21,124
일반 지역도로 확충·개선	◦지역도로 개설 및 확장 -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등 34개 사업 ◦기존도로 구조개선(교차로 개선, 램프 신설, 지하·고가차도 건설 등) - 한남오거리 교차로 개선 등 14개 사업	128,060 55,501	146,836 55,524	△18,776 △23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도로 미불용지 보상 ◦중토위재결 보상 ◦교통광장 보상(3개소)	42,610	44,887	△2,277
도시철도망의 확충	지하철 수송분담율 : 35.9%('05) → 36.0%('06)	975,791	1,016,937	△41,146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김포~반포 : 25.5km, 25개 정거장 - 14개 공구, 토목공사 본격 추진	553,052	463,083	89,969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수서~오금 : 3km, 3개 정거장 - 2개 공구, 토목공사 본격 추진	54,875	50,000	4,875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온수~부평구청 : 10.2km(서울시 0.44km) - 6개 공구중 1개 공구, 토목공사 본격 추진	3,286	1,512	1,774
지하철9호선 2단계 건설	◦반포~방이 : 12.5km, 12개 정거장 -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자 선정	4,000	470	3,530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우이~신설동 : 10.72km, 12개 정거장 - 경전철사업 제안서 검토평가 및 협상	150	-	150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지하철 운영 지원	◦ 공채매출 대금 전출 등 - 양 공사(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 전출	360,100	501,582	△141,482
기타 경상사업	◦ 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	328	290	38
일 반 예 산		147,926	98,143	49,783
교통분야 일반예산	◦ 교통분야(교통국, 교통방송, 지하철건설본부) 인건비, 기본경비, 징수교부금, 예비비, 반환금 등	124,071	88,046	36,025
도로분야 일반예산	◦ 도로분야 인건비, 기본경비, 기타 경상경비 등	23,855	10,097	13,758

6 산업경제 - 경쟁력있는 산업인프라 구축

□ 정책방향

-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성장기반 조성
- 국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 마케팅 중점 육성

- 국제 선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경쟁력있는 산업기반 구축
-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조성 본격 추진
- 공동동 NIT, 마곡 등 미래산업단지 조성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 기업하기 편리한 선진도시로 육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산 업 경 제	투자통상분야 외자유치	만불	4,600	4,600	5,000	5,000	5,000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	건	24	24	24	24	24
	중소기업 자금 지원	억원	6,500	6,700	6,700	6,700	6,700
	직업훈련생 취업률	%	61	62	62	62	62

지역균형발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개소	24	7	16	12	12
--------	--------------	----	----	---	----	----	----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산 업 경 제	288,767	300,801	△12,034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육성	국제금융도시 및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	43,603	9,171	34,432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	◦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자문단 운영	160	1,694	△1,534
외국인 사업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및 외국인투자문회의 등	525	525	-
	◦ 외국인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환경 홍보 등	910	1,821	△911
	◦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700	300	400
	◦ 테마파크 조성 자문단 운영	1,359	94	1,265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306	268	38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	◦ DMC 단지개발(총 48필지) (2005년 26필지 → 2006년 39필지)	1,279	1,790	△511
	◦ DMC 홍보·마케팅 등	706	1,206	△500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25,000	-	25,000
	◦ DMS(디지털 상징거리) 조성	311	-	311
세계 대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자매도시교류사업 및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등 (2006 계획 : 파견 20, 초청 18개국)	854	578	276
	◦ 북경서울무역관 운영	143	-	143
	◦ 국제기구 참가 등 국제화 업무 추진 - 국제협력기금 전출금 100억원 등	10,375	368	10,007
	◦ 서울지역 국제행사 및 외국인 소그룹 문화행사 등 지원	975	526	449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	산·학·연협력사업 및 문화컨텐츠산업 중점 육성	103,331	95,868	7,463
미래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총지원액 : 600억원)	10,000	25,000	△15,000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 16개 사업	77,900	63,400	△14,500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지도 및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 24개대학 및 250개 업체와 공동추진	3,500	3,000	500
	◦ 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 치료센터 설치	2,566	-	2,566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및 건전 노사문화 정착	54,999	75,638	△20,639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 확립	◦ 신용보증재단 출연	3,000	44,808	△41,808
	◦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	15,000	10,000	5,0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 및 기업대상 시상 등	13,790	12,687	1,103
	◦ 유망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 강화	2,350	2,200	150
	◦ 기능경기대회 및 공장관리망 유지관리	806	1,517	△711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노동단체 지원 및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물 보수지원	232	494	△262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원	200	182	18
	◦ 통합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9,573	3,636	15,937
	◦ 노사정협의회 및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48	113	△35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 기반 확립	소비자 물가관리, 유통질서 확립	65,039	93,544	△28,505
생활경제 보호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 12개 단체 ◦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등 	621 431	521 417	100 △14
창업 및 투자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 청년실업대책 ◦ 고용촉진훈련(710명) ◦ 시립직업전문학교(4개소, 3,674명) ◦ 자매도시 청소년 직업훈련(55명) 등 ◦ 해외취업지원시스템 운영 ◦ 창업활동 및 자치구 상공회 지원 - 신기술창업센터 시설개보수 및 자치구창업센터 장비보강 등 	6,861 24,000 1,317 15,257 1,294 496 3,229	22,966 34,000 1,238 11,532 1,220 389 2,535	△16,105 △10,000 79 3,725 74 107 694
농수축산물 공급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우유급식 지원 및 유기동물 보호지원 등 ◦ 지방채 상환(농안기금) 	6,590 4,863	10,568 8,090	△3,978 △3,227
에너지 보급망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 및 교육사업 등 	79	67	12
재래시장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9,438	16,196	△6,758
재래시장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 국비지원사업 : 8개시장 80억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9,438	16,196	△6,758
일 반 예 산	인건비, 기본경비 등	12,357	10,384	1,973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반환금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패션산업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 ◦ 만화·애니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동대문패션 문화관 건립 	73 12,283 3,770 2,795 2,800	218 10,166 2,300 2,168 -	△145 2,117 1,470 627 2,800
7	문화·체육진흥 — 문화도시 서울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상징적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 -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복원 -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input type="checkbox"/>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다양한 문화육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문화도시 서울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 			

□ 분야별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문화시설확충	도서관 건립 완공	개소 30 (107)	45 (152)	- (152)	- (152)	- (152)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공	개소 1 (8)	- (8)	1 (9)	- (9)	- (9)
문화재 관리	등록문화재 등록	건 10 (23)	10 (33)	10 (43)	10 (53)	- (53)
관 광 진 흥	도심부 도보 관광	천명 15	18	20	22	22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천명 1,000	1,000	1,000	1,000	1,000
체 육 진 흥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개소 2 (31)	3 (34)	- (34)	- (34)	- (34)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	개소 20 (42)	10 (52)	10 (62)	10 (72)	10 (82)
□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문 화 · 체 육 진 흥		356,080	302,580	53,500		
다양한 문화예술기반 확충	문화공간 확충	174,590	101,564	73,026		
재단출연금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39,962	69,921	△29,959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 조성목표액 : 5,000억원	100,000	-	100,000		
문화공간 확충	◦ 공공도서관 건립(17개소), 문화예술회관 건립(2개소) 국악공연장 건립(1개소), 서울종합연극센터 설치	26,171	24,437	1,734		
문화시설 운영 지원	◦ 지방문화원 지원(24개소), 지역정보도서관(19개소) 점자도서관(8개소), 공사립문고 지원(230개소), 문화지구 육성·지원 등	8,457	7,206	1,251		
시민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문화도시 10개년 사업 추진	19,215	11,347	7,868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	◦ 서울드림페스티벌 등 9개 사업	3,385	3,798	△413		
문화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	◦ 서울사랑티켓 등 12개 사업	7,450	1,350	6,100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	◦ 규 모 : 879석	2,318	-	2,318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	◦ 지역특성 문화사업,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등	6,062	6,199	△137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복원	문화재 복원·보수	35,991	40,644	△4,653
문화재 복원	◦ 4개소(풍납토성, 북한산성, 서울성곽, 청계천역사유적)	24,849	29,025	△4,176
문화재 보수·정비	◦ 관리대상 문화재 351개소 (국가지정 56, 시 지정 266, 등록문화재 29)	7,240	7,862	△622
문화재 발굴·지정·유지관리	◦ 용마산 보루조사, 근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몽촌토성 위탁 관리 등	3,902	3,757	145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전통문화 전승프로그램 개발	4,838	5,121	△283
무형문화재 전승발굴 지원	◦ 기·예능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지원금 등	933	923	10
전통문화프로그램 위탁 운영	◦ 남산골 한옥마을, 운현궁 위탁운영	1,765	1,820	△55
전통문화축제행사	◦ 서울무형문화재 종합축제 등 8개사업	2,140	2,378	△238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도보관광코스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853	889	△36
서울시티투어 운영	◦ 운행코스 : 3개코스(도심순환, 고궁, 야경코스)	133	184	△51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관광특구 : 6개소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 청계천)	500	495	5
도심부 도보관광코스 개발 운영	◦ 대상 : 8개지역 11코스 - 정동, 경복궁, 창경궁, 대학로, 명동, 남대문, 청계천, 북촌	220	210	10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3,076	2,210	866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 2개소(대한문, 승례문)	1,634	1,380	254
서울관광마케팅서베이	◦ 대상 : 외국인	200	-	200
청계천 관광 홍보	◦ 관광객 유치홍보, 현장 아카데미 운영 등	320	-	320
고궁축제 개최	◦ 경복궁 : 세종대왕즉위식, ◦ 덕수궁 : 궁궐상설문화행사	300	200	100
관광산업 활성화	◦ 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관광사진전 및 우수 사진작품 개발, 동북아 3개수도 관광협력 사업	622	630	△8
만족스런 관광홍보, 안내체계 구축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 구축	1,548	1,562	△14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 7개소(종합 5, 간이 2)	884	656	228
관광홍보강화	◦ 관광팸투어, 국내외 관광교류,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북촌문화센터·홍보전시관 운영 등	664	906	△242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효율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공간의 지속적 확충	37,014	51,921	△14,907
월드컵 경기장 위탁운영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스포츠센터, 편익시설 등	8,616	8,637	△21
체육시설 확충	◦구민체육센터 건립 : 3개소(중로, 광진, 중랑) ◦학교시설복합화 지원 : 19개소 ◦서울유소년축구 인프라 확충 : 2개소(잠실, 목동)	17,402	34,541	△17,139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등	◦잠실1수영장 리모델링, 잠실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 잠실· 동대문·목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10,996	8,743	2,253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시민참여 확대	29,667	31,971	△2,304
체육단체 육성·지원	◦서울시 체육회 육성·지원 : 17개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 : 33개사업	19,900	13,650	6,250
체육진흥기금 조성	◦2001~2010년까지 매년 50억원 조성	5,000	5,000	-
생활체육대회 개최	◦한강마라톤대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메트로 폴리탄 워킹대회, 장애인 탁구대회 등	801	575	226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교실운영, 청소년풋살교실운영, 어린이 축구교 실 운영 등	3,966	12,746	△8,780
소장유물 확보	전시유물의 지속적 확보	4,826	3,827	999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전시유물 구입 200점, 기증 평가 사례	2,814	2,796	18
소장유물 보존처리 및 관리	◦소장유물보존처리, 유물등록관리 ◦운현궁 유물정리, 고문서, 전적류 등록사업, 문화유적 발굴조사	940	921	19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건립설계, 건립추진위원회운영, 자료조사 등	1,072	110	962
시민의 이용도 증가	박물관 시민관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817	4,261	556
박물관 기획전	◦3회 : 출토복식전, 레드전, 무형문화재전	515	435	80
전시실 운영	◦상설전시실, 기증유물실 운영	153	165	△12
박물관시설물 유지운영	◦경희궁지 개보수, 정보화사업, 청소·경비용역, 몽촌역 사관 운영	4,149	3,661	488
미술문화향수기회 확대	기획전시 확대로 문화향수기회 확대	2,658	1,463	1,195
미술관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상설전, 시민미술아카데미개설, 자원봉사운영 등	2,658	1,463	1,195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미술작품 창작의욕 제고	수준높은 소장작품 확보	4,272	5,175	△903
소장작품 확보 및 보존관리	◦ 수집목표 : 250점, 현 소장작품수 : 1,492점	3,131	3,120	11
시립미술관 유지보수	◦ 미술관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등	1,141	2,055	△914
일 반 예 산	기본경비 등(인건비·기본경비 등)	32,715	40,625	△7,910

8 일반행정-열린시장·투명시장·경영시장 구현 <input type="checkbox"/> 정책방향 ◦ 시장 전 분야에 대한 경영마인드 정착과 시민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시장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 및 사업계획	◦ 직원 능력개발과 활력있는 조직운영으로 시정역량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장 정착과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효율적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재정 운용의 기초 유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일 반 행 정		443,484	406,035	37,449
시민참여의 시장구현 및 조직 활성화 도모	민원 서비스 시민만족도 향상	142,460	109,728	32,732
자치구 지원 및 시민 참여의 시장 구현	◦ 자치구 종합청사 건립지원(금천)	15,000	12,700	2,300
	◦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	11,159	24,154	△12,995
	◦ 민간단체 시장참여사업	1,933	2,828	△895
	◦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 및 시민상 운영 등	2,284	1,524	760
	◦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2,288	1,019	1,269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	◦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7,455	9,241	△1,786
	◦ 민원실 운영 등 민원서비스 개선 등	228	227	1
	◦ 직장교육 활성화 및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등	7,746	7,465	281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시설 운영 등	9,573	9,164	409
	◦ 공무원수련원 건립(제2·제3수련원)	21,000	14,500	6,500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256	6,460	1,796
	◦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	8,000	8,000	-
행정지원 기능강화	◦ 문서관리 등 행정지원 강화	427	4,995	△4,568
	◦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7,189	7,409	△220
	◦ 제4회 동시지방선거	39,922	-	39,922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민의견 시정반영 및 시정 홍보 강화	효과적 홍보 및 보도체계구축, 열린시정 구현	9,567	9,899	△332
서울브랜드 해외마케팅	◦ 언론사 초청 Press TOUR, 시정설명회 : 연2회 ◦ 컨벤션유치, 라이트박스광고(11개소) ◦ 문화·스포츠·게임산업 활용 브랜드 마케팅	3,056	3,277	△221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 '서울사랑'발간, 홍보관 운영 ◦ 홍보대사(18명) 운영, 주요시책 여론조사(연 30건) ◦ TV, 라디오, 인터넷, 전광판 홍보강화	5,894	6,117	△223
시정보도 활성화	◦ 언론, 인터넷 등 시정뉴스 모니터링 ◦ 시정홍보 자료 D/B구축 및 제공	617	505	112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 구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시스템 구축	448	434	14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 발전	◦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등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276	207	69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의 활성화	150	205	△55
시정의 종합조정·평가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경영시정구현	시정 전반에 경영마인드 정착	22	22	-
시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시민·전문가평가) - 평가대상 : 교통, 환경, 문화, 안전등 10개 분야 ◦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18,088	27,234	△9,146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 공무원·대학생 논문공모, 직무발명 보상제, 제안제도 운영 및 종합자료관 운영 등	1,225	875	350
성과주의 예산운영	◦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 재정정보시스템 보완	87	86	1
시민권리구제 확대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민사, 행정소송 수행	851	954	△103
지역혁신 및 자치역량의 강화	◦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및 박람회 참가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업무혁신방 운영 등	10,694	10,372	322
효율적인 재무관리 및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	시세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토대 구축	798	787	11
재산관리 내실화	◦ 국유·시유재산 관리 위임 등	400	400	-
		605	72	533
		2,786	2,717	69
		562	540	22
		80	80	-
		19,885	24,641	△4,756
		7,020	7,609	△589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	◦ 38세금기동팀 운영	270	281	△11
	◦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 지원	4,753	4,754	△1
	◦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	2,221	5,769	△3,548
	◦ 체납시세징수 지원 등	3,925	3,776	149
	◦ 지방세 연구소 운영	300	230	70
물품구매 및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 노후집기 교체 및 복식부기 제도 도입	1,367	682	685
	◦ 청렴계약 음부즈만 운영	29	34	△5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홈페이지 통합 145개 (100%)	3,592	3,411	181
인터넷서비스 안정화	◦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국문 117, 국어 28)	1,265	971	294
	◦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등	1,000	674	326
시민참여촉진과 정보격차 해소	◦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950	1,146	△196
	◦ 사이버 정책토론포럼 운영	17	22	△5
	◦ 시민 사이버 정보화교육 추진(43과정 7,000명)	85	104	△19
	◦ 정보소외계층 정보기기 보급(PC 800대) 등	275	493	△218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와 정보화 역량 강화	공간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100% → 고도화)	12,056	10,788	1,268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	200	240	△40
	◦ 지리정보시스템(GIS) 유지보수	116	99	17
	◦ 1: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	4,000	2,050	1,950
	◦ 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 정확도 제고 등	1,540	1,805	△265
정보화교육 내실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정보화교육 운영 등	1,041	1,156	△115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등	1,396	532	864
	◦ 시도행정 정보화 등	1,013	2,949	△1,936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수요자중심 통계 보급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751	1,956	795
	인터넷 속도 향상 (500MB → 622MB)	9,251	10,169	△918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신뢰성 보장	◦ 다기능사무기기 보급관리 등	2,155	2,377	△222
	◦ e-Seoul net 안정적 운영 등	1,960	2,949	△989
	◦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보장	2,631	1,420	1,211
	◦ 정보기획의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통계보급 등	2,505	3,422	△917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2006	2005	증 감
시립대학 운영	교육환경 개선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35,129	29,998	5,131
교육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정보기술관 및 종합강의동 등 건립 ◦ 도서관 기능강화 및 기존시설 적정 유지관리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2,643	6,955	5,688
학생 복지증진 및 교수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급 등 학생복지 증진 ◦ 교수연구보조비 지급 등 연구여건 향상 ◦ 시민대학 및 시책연구소 운영 	5,717	5,370	347
		5,340	6,701	△1,361
		2,927	2,768	159
		7,402	7,145	257
		1,100	1,059	41
공무원교육원 운영	참여식 교육 활성화 추진	6,618	6,007	611
첨단교육기법 도입 및 교육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재직자 전문과정 운영 ◦ 직원특별합숙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630	619	11
교육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교육원 청사 유지관리 등 ◦ 교육훈련 장비 확충 ◦ 도서 구입 등 교육생 편의제고 	1,047	913	134
		1,269	1,167	102
		406	628	△222
		858	257	601
		298	349	△51
공정한 시험관리	◦ 공무원 채용 및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2,110	2,006	104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기능강화	생산적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7,986	6,555	1,431
의회활동지원 및 홍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입법활동지원 등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홍보촬영장비 강화 및 홍보영상물 제작 ◦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운영 	712	827	△115
		342	342	-
		438	516	△78
		904	-	904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정보화 지원 ◦ 주전산실 운영 등 	128	115	13
		175	855	△680
		159	351	△192
의회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발간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의회운영 각종보고 자료 및 책자발간 등 ◦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20	20	-
		58	56	2
		331	369	△38
		47	55	△8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등 ◦ 국내의정활동 교류사업 	87	76	11
		295	284	11
		54	52	2
청사시설 개선·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청사 정비 및 보수공사 ◦ 시의회 본관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 청사 시설개선 ◦ 청사 리모델링 	512	346	166
		13	16	△3
		277	275	2
		3,434	2,000	1,434
일 반 예 산	기타 인건비 등	178,404	164,857	13,547

3.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세 예정액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8,766,303,000천원	10,167,344명	862천원

※ 2005.12.31 주민등록인구 통계, 외국인 제외

4.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가. 부채현황

□ 시 일반부채

(200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차입 년도	연이율 (%)	거치 상환	'04년말 부채잔액	'05년 운용실적			'05년말 부채잔액	이 자 지 급
					신규차입	원금상환	환차등		
총 계				5,603,128	545,729	975,335	Δ36,515	5,155,007	115,161
서울시 본청				1,070,877		55,075	Δ4,895	1,010,907	32,382
일 반 회 계				44,043	-	10,380	Δ2	33,661	1,358
서남권도매시장 (농안기금)	'95~'01	3.00	3-7	19,563	-	7,502		12,061	581
근로청소년임대 (국민주택)	'87~'88	3.00	5-15	388	-	388		-	1
사립대 가자재(IBRD)	'92.12	0.00	5-10	42	-	40	Δ2	0	-
수해복구사업(재특)	'98.12	4.13	5-10	4,050	-	450		3,600	131
삼풍사고재해보상 (재특)	'98.8	4.13	5-10	20,000	-	2,000		18,000	645
특 별 회 계				1,026,834		44,695	Δ4,893	977,246	31,024
하수도 사업				228,188		26,655	Δ4,757	196,776	6,892
하수관거정비(환특)	'96.12	4.42~5.0	5-10	178,320		10,675	-	167,645	5,854
가양(환경기금)	'94~'00	5.00	5-10	5,507	-	1,224	-	4,283	261
가양(IBRD차관)	'93.5	4.49	5-10	12,167	-	3,440	Δ295	8,432	478
중랑(사무라이)	'02	0.39~1.37	1(7)-0	20,056	-	7,050	Δ2,779	10,127	186
탄천(사무라이)	'02	0.39~1.37	1(7)-0	12,138	-	4,266	Δ1,683	6,189	113
주 택 사 업				687,655	-	2,423	Δ5	685,227	20,593
국민주택건설 (국민주택)	'84~'85	5.00	1-19	924	-	924	-		25
주택개량재개발 (국민주택)	'84~'95	6.00	1-19	1,504	-	1,499	Δ5		11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95~'01	3.00	10-20	685,227	-	-	-	685,227	20,557

사 업 명	차입 년도	연이율 (%)	거치 상환	'04년말 부채잔액	'05년 운용실적			'05년말 부채잔액	이 자 지 급
					신규차입	원금상환	환차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	'94~'96	4.75	5-5	8,350	-	2,571	-	5,779	281
상수도 사업				102,641	-	13,046	Δ131	89,464	3,258
배급수관정비(재특)	'95~'01	4.92~6.1	5-10	99,156	-	12,252	-	86,904	3,119
배급수관정비(토특)	'94	5.00	5-10	2,500	-	500	-	2,000	116
수도시설현대화 (OECF)	'85	4.50	7-18	452	-	106	Δ58	288	18
광암정수장현대화	'02	0.39~1.37	1(7)-0	533	-	188	Δ73	272	5

□ 투자기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차입 년도	연이율 (%)	거치 상환	'04년말 부채잔액	'05년 운용실적			'05년말 부채잔액	이 자 지 급
					신규차입	원금상환	환차등		
투 자 기 관				4,532,251	545,729	902,260	Δ31,620	4,144,100	82,777
지 하 철 공 사				2,473,123	410,934	605,835	Δ782	2,277,500	41,427
건설소계				1,325,318		209,175	Δ782	1,115,361	28,432
도시철도공채	'91~'04	6.0~2.5	5-5 7-0	1,203,618		199,175	Δ782	1,003,661	24,881
시 재투	'98~'04	3.00	5-5	121,700		10,000	-	111,700	3,551
운영소계				1,147,805	410,934	396,660		1,162,139	12,995
도시철도공채	'98~'04	3.00	5-5	751,205	410,934		-	1,162,139	386
공사채				167,000		167,000	-	-	5,808
시재투				229,600		229,600		0	6,801
도 시 철 도 공 사				2,047,075	134,795	296,409	Δ30,838	1,854,623	40,821
건설소계				1,679,936		236,409	Δ30,838	1,412,689	37,689
공채	'02	6.0~6.9	3-0	808,529	-	86,886	Δ296	721,347	11,913
정부자금	'90	5.50	5-15	355,125	-	42,694	-	312,431	15,148
사무라이	'94~'00	3.09~ 6.00	5-10	220,289	-	77,429	Δ30,542	112,318	2,049
시재투	'91~'95	5.00	5-15	295,993	-	29,400	-	266,593	8,579
운영소계				367,139	134,795	60,000		441,934	3,132
도시철도공채				297,332	134,795			432,127	136
공사채				60,000	-	60,000	-	-	2,700
시재투				9,807				9,807	296

구분	2005	2006년 운용 계획												증감 (04대비)
		수입							지출					
		계	출연금	용자 원리금 회수	차입금	민간 부담금	이자 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계	사업비	차입 원리금 상환	기금 관리 비등	여유 자금	
식품진흥 기금	66,160	54,395	0	2,347	0	3,500	13,429	35,119	54,395	9,824	0	2,210	42,361	△11,765
도시가스 사업기금	29,053	19,535	0	5,175	0	0	507	13,853	19,535	7,000	0	2,000	10,535	△9,518
도로굴착 복구기금	94,743	79,747	0	0	0	33,086	2,005	44,656	79,747	51,797	0	0	27,950	△14,996
여성발전 기금	4,269	3,251	2,000	0	0	0	852	399	3,251	730	0	25	2,496	△1,018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	9,336	8,288	5,468	0	0	0	77	2,743	8,288	4,906	0	0	3,382	△1,048
사회복지 기금	32,305	21,249	2,500	37	0	0	2,091	16,621	21,249	10,130	0	55	11,064	△11,056
체육진흥 기금	7,943	7,571	5,000	0	0	0	948	1,623	7,571	0	0	0	7,571	△372
감채기금	1,036,268	763,491	255,443	0	0	0	87,414	420,634	763,491	602,436	0	50	161,005	△272,777
재해재난 대책기금	311,810	374,928	86,805	0	0	0	37,167	250,956	374,928	31,399	0	0	343,529	63,118
남북교류 협력기금	13,545	2,000	0	0	0	0	755	1,245	2,000	2,000	0	0	0	△11,545
신청사 건립기금	5,875	34,882	0	0	0	0	34,882	0	34,882	29,942	0	0	4,940	29,007
노들섬 예술센터건 립기금	0	101,425	100,000	0	0	0	1,425	0	101,425	11,730	0	464	89,231	101,425
국제협력 기금	0	11,167	10,000	0	0	0	1,167	0	11,167	1,000	0	0	10,167	11,167

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취 득				처 분			
		계	매 입	교환취득	기타취득	계	매 각	출 자	교 환 분
계	건 수	25	13	3	9	4	1		3
	수 량	396,451	210,792	89,242	96,417	13,615	330		13,285
	금 액	527,103	266,394	26,756	233,953	25,230	904		24,325
토 지	건 수	13	11	2		3	1		2
	수 량	177,720	89,601	88,119		13,472	330		13,142
	금 액	166,984	140,628	26,356		25,184	904		24,279
건 물	건 수	12	2	1	9	1			1
	수 량	218,731	121,191	1,123	96,417	143			143
	금 액	360,119	125,766	400	233,953	46			46
기 타 (선 박)	건 수								
	수 량								
	금 액								

7. 공기업 운영 계획

가. 사업운영계획

구 분	단 위	2006	2005	증 감
○ 보급 계획				
-행정구역 총인구(A)	천명	10,181	9,983	198
-급수인구(B)	천명	10,181	9,983	198
-보급율 : B/A×100	%	100	100	-
○ 시설 계획				
-취수용량	천m ³ /일	5,870	5,870	-
-시설용량	천m ³ /일	5,400	5,400	-
-급수전수	천전	1,972	1,972	-
-노후관 교체	km	70	449	△379
-송배수관 총연장	km	8,254	8,676	△422
○ 생산 및 급수계획				
-연간 총생산량(C)	천m ³	1,250,125	1,209,610	40,515
-1일평균 생산량	천m ³	3,425	3,314	111

구 분	단 위	2006	2005	증 감
-연간 총급수량(조정) (D)	천m ³	1,112,069	1,096,051	16,018
-1일평균 급수량	천m ³	3,047	3,003	△44
-1일 1인평균 급수량	ℓ	336	332	4
-유 수 율 : D/C×100	%	90	88	2
-톤단 평균요금(년간 급수수익/년간조정량)	원	511.1	510.9	0.2
○ 인력관리계획(총)		2,904	2,962	△58
-일 반 직	명	1,448	1,432	16
-별 정 직	명	13	16	△3
-기 능 직	명	1,296	1,357	△61
-연 구 직	명	55	54	1
-기타보수직	명	92	103	△11

나. 자금운영계획

(1)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합 계	801,000	자금예산수입	132,021
영 업 수 익	593,518	현 금 예 금	114,732
급 수 수 익	556,934	수요가 미수금	16,147
배관급수공사수익	36,554	기 타 미 수 금	1,142
기 타 영 업 수 익	30	고정자산수입	17,310
영 업 외 수 익	35,047	토 지	17,310
수 입 이 자	4,408	자 본 잉 여 금	23,104
타 회계전입금수입	26,366	시 설 분 담 금	23,104
기 타 영 업 외 수 익	4,273	타 회계공사부담금	-
		기 타 자 본 적 수 입	-
		기 타 자 본 적 수 입	-
		고 정부 채 수 입	-
		기 타 차 입 금	-

(2)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합 계	801,000	가 동 설 비 자 산	202,367
영 업 비 용	415,799	도 지	4,000
일 반 관 리 비	77,029	입 목	483
정·배수 등 관리비	302,216	건 물	6,187
배관 및 급수공사비	36,554	구 축 물	158,739
영 업 외 비 용	10,863	기 계 및 장 치	25,511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10,863	차 량 운 반 구	571
특 별 손 실	595	공 기 구 비 품	6,876
기 타 특 별 손 실	595	비가동설비자산	23,840
		건 설 가 계 정	23,840
		투 자 및 기 타 자 산	1,678
		고 정 부 채 상 환	121,457
		차 관 상 환	
		지 방 채 상 환	128
		재 정 자 금	121,329
		예 비 비	24,40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00호
 2006년도 제5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
 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심의일시 : 2006. 3. 3(금)

나. 심의장소 : 시청별관1동 11층회의실
 다. 심의작품
 ○ 11건 11작품(조각11)
 라. 심의결과
 ○ 승 인 : 2작품(조각2)
 ○ 재 심 : 6작품(조각6)
 ○ 조건부 승인 : 3작품(조각3)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과
 (☎ 02)3707-94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연번	설치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신청인
1	구로구 신도림동 412-3번지 외 2필지	조각	추억놀이	조건부 승인	재료의 두께를 5mm이상으로 할 것, 작품시공은 도서17,18p처럼 할 것.	강남구 역삼동 605-3 ㈜피앤디개발 이용백
2	강남구 청담동 69-18	조각	소리의 파동	승인		강남구 청담동 69-18 리버뷰오피스텔 306호 진흥빌리제건축조합장 이태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9 ㈜동양건설산업 박청일
3	서초구 서초1동 1444번지 7호	조각	염원	재심	조형성 부족, 작품유형이 평이함, 창작미 결여, 기존작가의 작품과 흡 사, 바닥과의 부조화,	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갑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GS건설 김갑렬
4	동대문구 장안3동 422-1번지 외 7필지	조각	나무, 돌, 바람	재심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중량감이 없 어 가벼워보이며 날카로운면이 많아 위험요소가 있음.	삼안,금성,월성 연립재건축조합, ㈜월드건설 조규상
5	강동구 천호동 419-3번지 외 3필지	조각	밀레니엄 타임	조건부 승인	재료의 두께를 5mm이상으로 할 것. 좌대를 낮고 넓게 할 것.	용산구 한강로 2가 32번지 이희선
6	양천구 목동 222-1번지 외 90필지	조각	생성공간	조건부 승인	재료의 두께를 5mm이상으로 할 것, 석조조각부분을 볼륨있게 할 것.	양천구 신정동 1013-4 성배법조빌딩 702호 ㈜테바건설 김희영
7	강남구 역삼동 754번지	조각	forest I	재심	작품의 중심유지 등 구조적 취약성, 안정적 설치가 불가능해 보임, 공공 조형물로써 유지관리가 어려움, 설 치 후 위험성 농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이상대
8	성북구 정릉4동 830-2 외 7필지	조각	화합의 조울	승인		성북구 정릉4동 787-3 청수연립재건축조합
9	서초구 방배동 3001번지 외 6필지	조각	원- 이미지	재심	조형성부족, 안정성 부족	마포구 동교동 165-5 대아빌딩 902 ㈜준흥디엔씨 차영기
10	용산구 한강로 3가 40-581	조각	연인	재심	독창성 부족, 조형성 결여, 제작비 부족에서 오는 부실시공이 우려됨.	용산구 한남동 721-23 한강로 지역주택조합장 박명호
11	성동구 용답동 232-1외 3필지	조각	꽃	재심	조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료설 명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부족하므로 형태는 그대로 두되, 재 료 및 시공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여 다시 심의받을 것.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신창건설 김영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01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설립허가 법인
 - 가. 법인명 : 사단법인 『참사랑 실천회』
 - 나. 대표자 : 이상용
 -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31
2. 허가일자 : 2006.3.7
3. 설립목적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실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탁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을 돕는 것을 목적

1.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지정검토종별	지정예정명칭	수량	재질	조성연대	소재지(보관장소)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학림사 삼신불 괘불탱	1폭	견본채색	1737년(추정)	노원구 상계4동 산 1번지(학림사)	학림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학림사 석불좌상	1구	석조	19세기말~20세기초		학림사	

2.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① 전화 : (02)3707-9438
 - ② 팩스 : (02)3707-9449
 - ③ 우편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노원구 문화과
 - ① 전화 : (02)950-3413
 - ② 우편 : (139-703) 서울특별시 노원

- 으로 함
4. 사업의 종류
 - 가. 독거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나. 연1회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 다. 독거노인 유고시 장례에 관련한 제반 업무 중 일부지원
 - 라.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0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계획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구 상계 6동 701-1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3707-9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학림사 삼신불 괘불탱

이 괘불은 조선후기의 삼신불 괘불탱으로, 최초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1774년에 중수하여 원통암(圓通庵)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있으며, 현재는 수락산 학림사(鶴林寺)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443cm, 가로 256cm로 괘불로는 그리 크지 않은 작품인데, 폭 61.5cm의 비단을 4폭 이은 후 왼쪽 가장자리에는 29.5cm의 비단을 이어 마감하였으며, 배접지는 8겹을 붙였다. 그림의 형식은 화려한 채운(彩雲) 아래에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왼쪽(향우측)에 보신(報身) 노사나불, 오른쪽에 화신(化身) 석가불 등 권속 없이 나란히 서있는 3구의 삼신불만을 배치한 간단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로자나삼신불을 주제로 한 괘불은 18~9세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1735년 봉선사 괘불을 비롯하여 1832년 흥천사 괘불, 1868년 백련사 괘불, 1862년 청계사 괘불, 1858년 천축사 괘불 등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봉선사 괘불에는 삼신불 외에도 보살과 제자, 청중 등이 더 묘사되었으며 흥천사와 백련사괘불은 노사나불이 보살형이 아닌 불형(佛形)이며 아난과 가섭,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이 첨가되었고, 청계사 괘불 역시 삼불형(三佛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학림사괘불은 이 중에서 형식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노사나불이 보살형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삼신불구성을 보여주고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있어 이들 불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괘불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조선후기 서울·경기지역 괘불의 특징적인 양식을 반영하는 작품으로서 시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학림사 석불좌상

학림사 석불좌상은 커다란 두부에 불신이 왜소하며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없는 평평한 체구와 얼굴을 보여준다. 머리위의 육계부분은 맛맛하고 계주도 평평하게 새겨져 있다. 크고 네모난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얇게 새겨졌고 입은 가늘게 흡을 파듯이 음각되어 있으며 얼굴 양쪽에 붙어있는 표현된 귀가 짧다. 양어깨는 좁고 둥글며 대의를 통견식으로 입었다. 옷소매 밖으로 나온 양손은 배에 붙어있는데 작고 어색하게 조각되어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부분은 얇고 손상되었다. 조선시대의 토속화된 석불조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조선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석불의 토속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0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대표성명)	주 소		
113491	고려유니콤(정선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5-1 영등포전화국 제2별관	기준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2006.3.9-4.8)
113436	(주)다올넷(김성민)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3-86	기준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2006.3.9-4.8)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1호, 제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3. 행정처분 일자 : 2006.3.6.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504	(주)굿넷(송관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3-65 동영빌딩 4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3.11-4.10)
200210	삼인타이타시스템(주)(김학선)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륭테크 노티워6차(493-6번지)50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3.11-4.10)
111516	(주)한강정보통신(권만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7-1 계림빌딩 306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3.11-4.10)
200230	(주)우라기술네트웍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30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3.11-4.10)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 66조, 시행령 제16조
- 3. 행정처분 일자 : 2006.3.7.
-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12호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안 한 건설업자
 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알립 공문
 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공문이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1. (주)하나이엔엘(110111-2289737 대표 이영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 신천빌딩)은 건설 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 2.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하니 2006.3.20.(월)까지 이행하기 바랍니다.
- 3. 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응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명령 내용 : 건설업 등록사항(주거적) 신고 이행

나. 신고시 제출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등)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일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02)3707-96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21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관계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 제 2006 -2호
2. 법인명칭 : 재단법인 예일선교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48-1
4. 대표자 : 이 명 범
5. 허가년월일 : 2006. 3. 8.
6. 설립목적 :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성서의 연구와 교육,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 정신에 따른 인류의 공동선과 보편적인 형제애를 증진시키고, 국제선교를 통한 국가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내외 인재육성을 위한 신학교육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23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 및 문화관광부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6-89호
2. 허가년월일 : 2006년 3월 9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풍선교육문화협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8-11 삼진빌딩 지층
5. 대표자 : 이 재 정
6. 설립목적 : 풍선을 비롯한 파티문화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풍선 및 파티문화를 보급하고 국민정신을 고양하며 나아가 건전한 국민여가 및 취미 생활의 향상을 제공하여 국민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2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다음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말소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 등록말소등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주)씨티이공일공건설	공진숙	건축010043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89-4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건설기술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등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규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번호	3707-9646/7
	일 시	2006년 4월 10일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성 명		장태중, 박노숙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28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

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
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등록일자
서울S-2-258	(주)다우 티이씨	원상욱	광진구 능동 369-14	110111-3401885	전문감리업	2006.3.9
서울E-2-301	원이엔씨 기술설계(주)	장석찬	동작구 사당동 1010-28	110111-3402164	전문설계업(1종)	"
서울S-2-259					전문감리업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29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행 정 국 (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	경영기획실 (혁신분권담당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국 (문 화 과)
재 의 요 구 안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관련714번)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동 의 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 무 국 (재 무 과)
의 견 청 취 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일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철 회 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철회안 (관련877번)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철회안(관련944번)	재 무 국 (재 무 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31호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반환청구 안내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

는 이를 서울시에 귀속도록 되어있어 당사자에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 송달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1. 보관 현황

(단위 : 원)

연번	보관일	납부자	반환액	보관이유	공사위치	비고
1	2001.3.3	센트럴시티	297,000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신호기 원인자 공사	반포4동 삼호가든맨션	
2	2001.3.5	동소문주택 재개발조합	84,380	"	돈암동 동소문주택 재개발	
3	2001.3.6	동아건설	17,640	"	가양대교 복단 연결도로	
4	2001.3.22	개인택시 공제조합	5,661	"	중랑구 중화동 450	
5	2001.3.23	신세계건설	10	"	성동구 성수 2가 333-16 E마트주변	
6	2001.3.30	김건수	7,970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3-6	

2. 보관금 반환 청구 기한 : 2006.3.31
 3. 보관금 반환 청구 안내
 지방재정법 제82조, 정부보관에관한법률 제1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미청구된 보관금은 서울시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재무과(02-731-6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3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과태료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성 명(명칭)	소 재 지		
113430	(주)오름탑 대표자 노용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22-1(3층)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112906	(주)우석하이텍 대표자 박상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4-60 삼선빌딩 4층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성 명(명칭)	소 재 지		
110403	서경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신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8-28 삼원빌딩 중 2층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113436	(주)다올넷 대표자 김성민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3-86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과태료 150만원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 기준), 제23조(신고의무),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78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 : 정보통신 담당관, 담당자 : 정남영 전자우편 cn007@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 별관3동 ☎ 02-6360-4992,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6.3.29(수)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2-6360-4992, 정남영)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칼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안) 열람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0(2001.1.17)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5호(2005.12.15)로 실시계획고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 73-4번지 일대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그 실시계획(안)을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양천구 신정동 산 73-4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p>○ 사업의 명칭 :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p> <p>○ 당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모 : 조성 138,596㎡, 보상 19,478㎡(묘 7기) - 내 용 : 토지보상, 교통안전교육관·어 린이놀이터 등 공원시설 설치 및 수 목식재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p>○ 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모 : 조성 138,596㎡, 보상 20,438㎡(건물 1동, 묘 7기) - 내 용 : 토지보상, 교통안전교육관·어 린이놀이터 등 공원시설 설치 및 수 목식재 <p>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p> <p>○ 사업시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p>○ 사업대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양천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1-4 <p>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2005.12.15~2006.12.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2007.12.31 까지 <p>바. 사업 위치도·계획평면도·설계도 등 관 련도면(변경없음) : 열람장소에 비치 사.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 설의 조서(변경없음) : 따로붙임</p> <p>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붙임</p> <p>2.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과 (☎ 02- 3707-9616)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 02-820-1396)</p> <p>3.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p>
---	--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칼산근린공원조성사업

일련 번호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신정동 산77-2호	임야	11,411	11,411		서울특별시		-	-	기보상
2	변경 없음	신정동 산91-1호	임야	8,067	8,067		서울특별시		-	-	기보상
3	추가	신정동 171-68	잡	781	781		이희수	미합중국 94114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유리카스트리트 152			
4	추가	신정동 산75-24	임야	179	179		이종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 목동신시가지④ 1226-1105			

지 장 물 조 서

○ 사업명 : 칼산근린공원조성사업

일련 번호	변경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1	변경 없음	신정동 산91-1호	묘지				미 상	미 상	서울특별시		
2	추가	신정동 171-68	주택 (기존무허가)	루핑 26.4464㎡	1동	주택	정영준	경기도 이천시 관고6동 228-15			

□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73-4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8,596	13,083	491.18	491.18	29	
기 반 시 설	소 계	9,277	7,701			
	광 장	2,784	2,784			
	도 로	6,493	6,493			
조 경 시 설	273	273			1	
유 양 시 설	1,242	1,188	35.0	35.0	27	
유 희 시 설	322	322				
운 동 시 설	920	920				
교 양 시 설	2,282	1,902	456.18	456.18		
편 익 시 설	777	777				
관 리 시 설	-	-			1	
녹지 및 기타	123,503					

나. 시설별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8,596	13,083		1동	491.18	491.18	29	
기 반 시 설	소 계			9,277	7,701			35.0			
	도 로			6,493	6,493						
	광 장	가	4개소	2,784	2,784						
	진입광장	가-1	신정동 산74-7임	(694)	(694)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중심광장	가-2	신정동 171-58잡	(1367)	(1367)						
	가로광장	가-3	신정동 171-68잡	(361)	(361)						
	휴게광장	가-4	신정동 산89임	(362)	(362)						
조정 시설	소 계			273	273					1	
	스탠드	나	2개소	101	101						
		나-1	신정동 171-58잡	(72)	(72)						
		나-2	신정동 171-58잡	(29)	(29)						
	조형분수	①	신정동 171-58잡	54	54					1	
바닥분수	②	신정동 171-58잡	118	118							
휴양 시설	소 계			1,242	1,188		1동	35.0	35.0	27	
	휴게소	다	4개소	829	829						
		다-1	신정동 산74-15임	(295)	(295)						
		다-2	신정동 산74-15임	(60)	(60)						
		다-3	신정동 171-58잡	(244)	(244)						
		다-4	신정동 170-37대	(230)	(230)						
	장의자		전지역							1	
	셸 터	③	신정동 171-58잡							2	
	사각과고라	④	전지역							10	
	팔각정자	1	신정동 산89임	121	67		1동	35.0	35.0		
	사각의자	⑤	신정동 337-14공							2	
플랜터	⑥	신정동 171-58잡							7		
전망테크	⑦	신정동 337-14공	127	127					1		
휴양 시설	목재테크	⑧	4개소	165	165						
		⑧-1	신정동 산77-2임	(36)	(36)					1	
		⑧-2	신정동 산77-2임	(51)	(51)					1	
		⑧-3	신정동 산73-4임	(59)	(59)					1	
		⑧-4	신정동 산74-15임	(19)	(19)					1	
유희 시설	소 계			322	322						
	놀이터	라	신정동 산74-15임	322	322						조합놀이대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소 계			920	920						
	체력단련장	마	신정동 산93입	135	135						
	멀티코트	바	신정동 산74-7입	522	522						
	조깅코스	사	신정동 산89입	173	173						
	지압보도	아	신정동 산89입	90	90						
교양 시설	소 계			2,282	1,902		1동	456.18	456.18		
	야외무대	차	신정동 171-58잡	38	38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	차	신정동 170-39잡	2,244	1,864			456.18	456.18		
편익 시설	소 계			777	777						
	주차장	카	신정동 산74-15입	777	777						16면
관리 시설	소 계									1	
	휴지통		전지역							1	
녹지 및 기타				123,503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2,665	6,493				
신설	계				2,665	6,493				
	소로	2	1	8	98	784	도시계획도로	신정동 171-59도	신정동 337-16도	
	소로	3	1	6	132	792	도시계획도로	신정동 산 74-11입	신정동 산 74-17입	
	소로	3	2	5	7	35	진입로	소로3-1	휴게소-1	
	소로	3	3	3	14	42	연결로	휴게소-1	휴게소-2	
	소로	3	4	3	38	114	연결로	휴게소-2	중심광장	
	소로	3	5	2	66	132	진입로	진입광장	교통교육관	
	소로	3	6	1.5	6	9	연결로	소로3-16	중심광장	
	소로	3	7	1.2	23	28	진입로	소로3-16	소로3-8	
	소로	3	8	2	20	40	연결로	가로광장	중심광장	
	소로	3	9	1.2	25	30	연결로	소로3-8	소로3-1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	10	1.2	25	30	연결로	소로3-8	소로3-14	
	소로	3	11	1.2	16	19	연결로	소로3-19	소로3-14	
	소로	3	12	1.2	18	22	연결로	소로3-19	소로3-14	
	소로	3	13	1.2	16	19	진입로	소로3-19	소로3-14	
	소로	3	14	5	30	150	연결로	가로광장	중심광장	
	소로	3	15	1.5	7	11	연결로	중심광장	소로3-16	
	소로	3	16	3	155	465	연결로	소로2-1	휴게소-3	
	소로	3	17	2.6	8	21	연결로	중심광장	휴게소-3	
	소로	3	18	1.2	20	24	진입로	소로3-20	소로3-19	
	소로	3	19	2	25	50	연결로	가로광장	중심광장	
	소로	3	20	1.2	29	35	진입로	소로2-1	휴게소-3	
	소로	3	21	4	195	780	진입로	산94-1입	전망대	
	산책로		1	2	479	958	산책로	주차장	전망대	
	산책로		2	1.5	120	180	산책로	휴게소-5	산-3	
	산책로		3	1.5	45	68	산책로	소로3-16	산-1	
	산책로		4	1	221	221	산책로	산91입	전망대	
	산책로		5	1	164	164	산책로	산-7	산-4	
	산책로		6	1	159	159	산책로	산-5	소로3-21	
	산책로		7	3	78	234	산책로	산92-4입	177-50입	
	산책로		8	1	55	55	산책로	산-9	산-10	
	산책로		9	1	78	78	산책로	소로3-21	체력단련장	
산책로		10	3	103	309	산책로	산-8	소로3-21		
산책로		11	2.3	190	437	산책로	휴게소-3	체력단련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1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및 폐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

변경 및 휴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변경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636호	(주)리치랜드	이경현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2-2 다산빌딩 2층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10층 10016호
			○ 전화번호 : 412-3908	○ 전화번호 : 3465-2080

■ 폐업신고

신 고 인				신 고 사 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폐업일자	사 유
제577호	(주)앤디씨엔엠	석정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4-208 엘리젠트 오피스 308호	2006.3.9	영업부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1	200376	2006.3.8	인터포스글로벌(주) 김상민 110111-2628414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75-2 위너스오피스텔 1동 707호
2	200377	"	대한위즈흙(주) 최낙훈 110111-3208025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인송빌딩 18층
3	200378	"	(주)한국뉴콤 배상열 110111-1221904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4-2 정진빌딩 2층
4	200379	"	(주)비트정보통신 송재화 110111-1501025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00-1 예아빌딩 지하 전관
5	200380	"	(주)태영에스엔에스 박태진 110111-311217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3-15 우영빌딩 1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02-6360-4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를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753	(사)마포공동체 라디오	마포구 동교동 203-4	김중호	2006.2.3	• 라디오방송국 운영 • 미디어 교육사업 등
754	(사)미디어연대	마포구 연남동 373-15	정준성	2006.2.3	•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 시민미디어 사업 등
755	(사)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	강남구 역삼1동 644-6 로얄빌리지 나동 301호	정화원	2006.2.7	• 장애인 소비제품 조사 및 연구 • 장애인 소비제품 표준화 연구사업 등
756	동서울자원 봉사연합	광진구자양3동 227-344 광진문화예술회관 2층	최아영	2006.2.8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민복지프로그램
757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도협의회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204호	엄기호	2006.2.9	• 시민의식 함양운동 • 이웃사랑 실천운동 등
758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청년협의회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206호	남궁문	2006.2.9	• 시민의식 함양운동 • 재난구조, 청소년선도 등
759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여성협의회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201호	유경옥	2006.2.9	• 시민의식 함양운동 • 여성인권 보호 등
760	해병대 전우회 후릉봉사단	도봉구 창1동 362	이효구	2006.2.13	• 방법순찰 •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761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남구 삼성동 140-17 코쿠피스 129호	김재익	2006.2.13	• 권익옹호 • 동료상담, 활동보조 및 이동 지원
762	(사)지구촌 공생회	광진구 능동 284-15	송현섭	2006.2.14	• 민간해외원조 사업 등
763	(사)사명당기념 사업회	종로구 낙원동 58-1	오재희	2006.2.15	• 사명당 사상의 선양을 위한 각종추모사업 • 사명당에 관한 각종 자료발굴, 수집 등
764	한국복지회	영등포 영등포동 1가 112-4	양창부	2006.2.15	• 사회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및 자 활능력 지원
765	(사) 더불어사는사회	영등포구 대림3동 807-9	이종해	2006.2.15	•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
766	(사)아시아예술 교류협회	중구 소공동 112-4	정순례	2006.2.16	• 국제간 예술교류 행사 및 비교연구 • 자선위문공연을 통한 자원봉사 등
767	의거 귀순용사회	은평구 녹번동 115-13	장경남	2006.2.20	• 국가안보 및 반공계몽운동
768	시각장애인 재활복지회	중구 회현동 1가 133-6	신인식	2006.2.22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복지사업 • 장애인재활복지를 위한 지도자 훈련사업 등
769	풀빛문화연대	마포구 서교동 353-23	황대권	2006.2.27	• 풀빛문화창달을 위한 조직 및 연대사업 • 숲과 자연 속에서 체험적 문화예술사업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6360-4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단체명칭	구분	변경사항		변경등록일자
			당초	변경	
32	(사)한국여성 건축가협회	대표자	박연심	문숙경	2006.2.16
230	성동희망나눔	소재지	성동구 성수 1가2동 656-309 2층	성동구 성수 1가1동 16-21 2층	2006.2.6
265	마들주민회	대표자	노정원	서진아	2006.2.7
395	서울특별시어머니 합창단 연합회	대표자	김정희	김선옥	2006.2.2
		소재지	용산구 갈월동 11-50	강서구 염창동 283-12호 2층	
406	(사)한국농아인협회	대표자	진홍장	이대섭	2006.2.15
426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822-21	종로구 혜화동 126-3	2006.2.21
507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중앙운동본부	소재지	강북구 미아동 329	강북구 미아8동 322-6	2006.2.24
745	(사)좋은나라나눔운동본부	명칭	(사)한강블론티어	(사)좋은나라나눔운동본부	2006.2.7
755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소재지	마포구 공덕동 404번지	강남구 역삼1동 644-6	2006.2.2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6360-4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이 말소되었기에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말소일	주된사업
191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송파구 삼전동 9-9 정우빌딩 2층	김경한	2006.2.27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설치운영사업 등 •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민협력과(☎ 02-6360-4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 2006-13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813호 및 필동 1가 24-6~24-2간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관리과(☎ 2260-1903) 및 지적과(☎ 2260-195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중 구 청 장

- 가. 결정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규모 컴퓨터 조성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신당2동 432-813	-	563	563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6	국지도로	58	필동 1가 24-6	필동 1가 24-2	일반도로	-	

- 다. 관계도서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 및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 용산구고시 제2006-1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자연경관지구)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5(2006.2.16.)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된 금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자연경관지구) 지형도면 작성고시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경관지구 (급호지구)	자연경관 지구	용산구 한남동 일대	501,079	1977.12.3. (건설부고시 제235호)	
변경	경관지구 (급호지구)	자연경관 지구	용산구 한남동 일대	500,336 (감 743)		용산구 한남동 1-87일부, 1-89, 1-90일부

나.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다.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정비과(☎ 710-3385) 및 지적과(☎ 71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고시 제2006-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3~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시설) 실시계획 결정 조서

가. 사업의 시행자 :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력공사

나. 결정내용 : 도시계획 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

(1) 사업 시행지 : 성동구 마장동 487-1호

(2) 사업 명칭 : 한국전력공사 왕십리 전기공급설비 증축공사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7,951.0m ² - 건축면적 : 4,551.42m ² - 연 면 적 : 15,847.82m ² - 건 폐 율 : 25.35% - 용 적 율 : 71.90%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증축내용 : 지하1층, 지상3층, 2,891.68m ² 변전소 증축 : 지상4층, 121.18m ² 업무시설(전력소) 증축 -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업무시설(전력소)
사업기간	2004년 12월~2006년 12월

◆ 성동구고시 제2006-12호

행당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3호(2003.12.15)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으로 고시되고 2004.9.8로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인가 된 행당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과

(☎ 2286-5591)와 행당 제4구역주택
재개발정비조합(☎ 2293-5854)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 가. 명 칭 : 행당 제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338-6번지 일대 24,796㎡
- 다. 사업시행자 : 행당 제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표 신 중 호
- 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성동구 하왕십리
2동 974-17호 5층
-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48개월
(인가일 2006.3.13)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 주
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사. 건축계획
 - 주 용 도 : 아파트 7개동, 465세대(입
대 1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 건축면적 : 4,155.65㎡
(건폐율 : 22.92%)
 - 건축연면적 : 60,231.91㎡
(용적율 : 233.31%)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60㎡이
하 295세대, 전용면적 85㎡이하 141세
대, 전용면적 85㎡이상 29세대
- 아. 정비계획변경 : 연면적 증가(943.34㎡,
건축계획 변경), 측량결과에 따른 공원
(6㎡), 도시계획도로(11㎡) 증가 및
택지면적(17㎡) 감소 등
-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공원(1,235㎡), 공공공지(294㎡),
도시계획도로(6~12m, 3,439㎡) 등
은 설치후 무상귀속.
- 차. 최고높이 : 41.70m
- 타. 관계도서 : 성동구 주택과 및 당해 조합
에 비치.

◆ 성북구고시 제2006-2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변경(개정)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0-206번지
도시계획시설(밤골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
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임.
2. 변경 결정 내역
 - 가. 공원의 종류 : 근린공원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0-206번지
 - 다. 당 초 명 칭 : 밤골 근린공원
 - 라. 개 정 명 칭 : 모랫말 근린공원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원녹지과(☎ 920-3396)에 관
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북구고시 제2006-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06-127호
(2006.2.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에 대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
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건축과(☎ 920-3390
~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외 19필지 (학교 증축)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명칭 : 한성대학교 연구관, 교양관 증축공사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사업시행내용

도시계획 결정(㎡)	대지면적 (㎡)	건 축 시 설			건폐율 (%)	용적율 (%)	비 고
		기존건물(㎡)	금회 설계변경(증축) 내용	총 계			
38,864.4	38,864.4	○ 동 수 : 23동 ○ 연면적 : 55,267.21	1) 연구관(기준) : 연면적 2,031.59㎡ 증가 - 변경전 : 지상7층/지하1층, 연면적 6,902.26㎡ - 변경후 : 지상9층/지하1층, 연면적 8,933.85㎡ 2) 교양관(기준) : 연면적 569.6㎡ 증가 - 변경전 : 지상1층, 연면적 621.82㎡ - 변경후 : 지상2층, 연면적 1,191.42㎡	○ 동 수 : 23동 ○ 연면적 : 57,868.40	25.95	125.06	

라. 시 행 자
 1)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외 19필지
 2) 성 명 : 학교법인 한성학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6.3~2006.9
 바. 공람기간 : 2006.2.16~2006.3.7 (20일간)
 사. 공람결과 : 별도의견 없음.
 아. 위치도 인가도면 : 성북구청 건축과에 비치
 ◆ 도봉구고시 제2006-7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지형도면

도봉구공고 제2006-41호(2006.1.19) 및 제2006-62호(2006.2.6)로 열람공고한 도시 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결 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 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서관)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신 설	도 서 관	창동 808-1	869.7	60이하	400이하	5층이하	-	어린이 도서관(200석 이하)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청사	동사무소	창동 808-1	858	감)858	0	'97.10.29(도코62호)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기정	사회복지시설	방학동 446-7일대	1,320	50이하	200이하	6층이하	2003.7.5	도봉구고시 제2003-44호
변경	사회복지시설	방학동 446-7일대	1,320	50이하	250이하	6층이하		용적률 50%상향

※ 지형도면 변경없이 용적율만 변경결정(지형도면 생략)

마.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바.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2289-1805) 및 지적과(☎ 2289-145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봉구고시 제2006-8호

쌍문제2구역 주택(자력)재개발사업 이전

1. 건설부고시 제184('75.11.13)호로 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12('76.9.4)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509('79.12.13)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고시 제84('02.12.28)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407('02.11.15)호로 공사완료공고 및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1('06.1.19)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관내 쌍

문동 374번지 일대 쌍문 제2구역 주택(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대지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쌍문 제2구역 주택(자력)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74번지 일대(신 지번 : 쌍문동 724번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11,219.5㎡중 (공동환지 5,602.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 656(방학동 720번지)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6.1.19 (최초 인가일 : 1979.12.13)

바. 이전고시 내역

1) 대지 현황

대상사업	계	택 지		비 고
		공동환지	장수면적	
쌍문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1필지) 5,602.2㎡	(1필지) 5,602.2㎡	672.3㎡	공동환지 105 명(대지 지분 1세대 포함)

2) 평형별 대지 지분 이전 내역

- 종류별 내역 : 공동주택 4개동 104세대

구 분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m ²)	대지 지분 세대수	동·호 세대수	면 적(m ²)	비 고
20평형	47.30	26	26	1,229.80	
	47.00	7	7	329.00	
23평형	54.50	44	44	2,398.00	
	54.20	3	3	162.60	
25평형	59.10	16	16	945.60	
27평형	33.00	1	1	33.00	
	64.20	1	1	64.20	
	64.30	6	6	385.80	
-	54.20	1	-	54.20	대지면적만 있음(1세대)
계		105	104	5,602.20	

3) 종전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종 류	계	근저당 설정	압류(가압류)	자상권	가등기(예고등기)경매신청 등 기타	비 고
건수	69	56	11			2

사. 기타사항 :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도봉구 도시정비과(☎ 2289-18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노원구고시 제2006-7호

도시계획시설(마들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8(2005.12.8)호로 도시계획시설(마들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05-82(2005.12.22)호로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었으며 노원구 공고 제2006-17(2006.1.19)호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마들근린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 : 노원구 상계6동 770-2번지 일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마들근린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마들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67,108.8m²
 - 사업규모 : 인조잔디축구장 7,458m², 야외공연장및관람석 1,835m², 주차장 2,461.3m², 저류시설 1개소, 조경시설 등
- 나. 사업기간 : 2006. 3. 인가일로부터 ~

2008. 3. 31
 다.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마들근린
 공원(상계6동 770-2)
 -지목 및 지적 : 공원(67,108.8㎡)
 -소유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마. 위치도 및 계획도 : 생략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5-368(2005.12.8)호로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면과 같음】
 바. 공공시설등의 귀속 :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65조에 의함

◆ 은평구고시 제2006-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54호(1990.10.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
 도면 작성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76호(2006.2.9)로 도시계획사
 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
 고한 “신사동 292의5~293의87간” 도
 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

과(☎ 350-3527)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영업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신사동 292의5~
 293의8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신사동 292의5~293의
 87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개설 폭10m,
 연장90m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
 번지
 ○ 성 명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
 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
 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
 조에 의함

토 지 조 서

○ 공사명 : 신사동 292의5~293의8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신사동 293-87	전	294	294	전		김중열 은평구 신사동 277-3	서부농업 협동조합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권		

◆ 서대문구고시 제2006-22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6-11(2006. 2.6)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2동 4번지 16필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6-68(2006.2.8)호로열람 공고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하고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271)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4번지 외 16필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
- 다. 사업의규모 : 1,561㎡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 (연희3동 168-6)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실시계획고시일~2007.12.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영업권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8-6
- 사업의 종류 : 홍은동 4번지 외 15필지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수용면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홍은동 3-1	전	66	66	김준형	대구시 남구 대명동 558-10	-			
2	홍은동 3-2	대	202	202	김준형	대구시 남구 대명동 558-10	-	-	-	
3	홍은동 4	대	172	172	김성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74-2 국방대학교A 107-204	-	-	-	
4	홍은동 4-1	대	3	3	김석훈	서대문구 홍은동 산1	서울특별시	-	시세계납 처분에 의한 압류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면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의 종류 및 내용	
5	홍은동 4-2	대	159	159	유태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 주공 [㉠] 1006-1310	한국양봉농업 협동조합	서울중구 신당동 370-61	근저당권	
							조진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09 롯데낙천 [㉠] 102-801	근저당권	
6	홍은동 4-3	대	231	231	김희정	서울 종로구 부암동 129-31 하안전원빌리지 지층 101호	-	-	-	
7	홍은동 4-4	대	327	135	국(건설 교통부)	국(건설교통부)	-	-	-	
8	홍은동 4-5	대	20	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	
9	홍은동 4-6	대	63	63	임관도	서대문구 홍은동4-6	-	-	-	
10	홍은동 4-7	대	122	122	송인철	서울 금천구 독산동 198-43	-	-	-	
11	홍은동 4-10	대	13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	
12	홍은동 4-11	대	79	79	이옥주	서대문구 홍은동4-11	-	-	-	
					김택림	서대문구 홍은동 5-23				
13	홍은동 4-14	대	60	60	김명	서대문구홍은동 5-6	-	-	-	
14	홍은동 4-17	대	132	132	김덕수	서대문구 홍은동 4-17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무교지점)	근저당권	
							이길상	서울 종로구 평동 9-7	근저당권	
15	홍은동 4-18	대	69	69	임순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196-10 502호				
16	홍은동 4-20	대	23	23	소중영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7	소병걸	경기도 부천시 남구 피안동 91-2 청암 [㉠] A동 203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6	홍은동 4-20	대	23	23	소중영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가압류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채권추심1부)	가압류	
17	홍은동 4-25	도	12	12	김대경	서대문구 홍은동 4-15	-	-	-	
계	17필지		1,753	1,561						

건물조서

-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8-6
- 사업의 종류 : 홍은동4번지 외 16필지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 유허가 건물조서 7개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홍은동 3-1, 3-2	건물	목조	37.09	주택	김준형	대구시 남구 대명동 558-10	-	-	-	-
2	홍은동 4	건물	시멘트블록조 연와조	150.16	단독주택	김성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4-2 국방대학교A 107-204	-	-	-	-
3	홍은동 4-2	건물	세멘트블록조	56.5	주택	오현택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64 쌍용A 104-304	한국양병농업 협동조합	서울 중구 신당동 370-61	근저당권	-
4	홍은동 4-3	건물	목조	34.31	주택	김희정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29-31 하안전문빌리지 지층101호	-	-	-	-
5	홍은동 4-11	건물	연와조	163.43	주택	이옥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4-11	-	-	-	-
						김택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3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6	홍은동 4-14	건물	세멘트블록조	48.15	주택	김명	서대문구 홍은동 5-6	-	-	-	-
7	홍은동 4-17	건물	연화조	51.9	주택	김덕수	서대문구 홍은동 4-17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무교지점)	근저당권	-
								이길상	서울 종로구 명동 9-7	근저당권	

○ 무허가 건물조서 3개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홍은동 4-6	무허가건 물	세멘조	62.8	주 거	임판도	서대문구 홍은동 4-6	-	-	-	-
2	홍은동 4-7	무허가 건물	기타	26.4	주 거	송인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98-43	-	-	-	-
3	홍은동 4-18	무허가건 물	세멘조	49.5	주 거	임순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6-10(502)	-	-	-	-

◆ 서대문구고시 제2006-23호

천연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개선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3-79호 (2003.7.11)로 개선계획변경고시한 천연1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

가. 지구명 : 천연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나. 위치 : 천연동 120번지일대

다.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

-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계	택지용지(㎡)				공공용지(㎡)	
		소계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종교용지	소계	도로
기정	40,941.4	35,006.1	34,257.0	111.8	637.3	5,935.3	5,935.3
변경	41,209.9	34,898.8	34,115.0	114.8	669.0	6,311.1	6,311.1
증감	증)268.5	감)107.3	감)142.0	증)3.0	증) 31.7	증)375.8	증)375.8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방법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정 비 방 법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	국지 도로	81	천 연 동 120-192	냉 천 동 74-161	일반 도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폭 6m로 개설하 고, 잔여폭은 충청냉천재개발사업사업 시행시 주택공사에서 별도 시공함.

3) 단지의 구간 연결도로 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5~8	국지도로	44	냉천동 72-90	천연동 120-103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설	공공공지	천연동 120-104외 1필지	35.7	

4) 기타 개선계획변경사항은 비치된 도서 참조

◆ 서대문구고시 제2006-24호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6-11호(20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6-85호(2006.2.17)로 실시계획 내

용을 열람·공고한 “서대문구 연희동 67-4 외 1필지상 연희3동청사 건립과 서대문구 홍은동 273-10호상 홍은3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면적 (m ²)	사 업 기 간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비 고
도시계획사업 (공공청사)	서대문구 연희동 67-4, 67-5호	621	고시일로부터 2008.12.31	서대문구고시 제2006-11호 (2006.2.9)	
도시계획사업 (공공청사)	서대문구 홍은동 273-10호	1,302	고시일로부터 2008.12.31	서대문구고시 제2006-11호 (2006.2.9)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조서 참조
 라. 토지, 물건(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조서 참조
 마.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과(공사 : ☎ 330-1071) 건설관리과(보상 : ☎ 330-1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연희3동청사 건립

연번	지 번	자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연희동 67-4호 (1층 101호)	대지	476분의 80.36	476분의 80.36	성진규	광진구 구의동 241-56(102)			
2	연희동 67-4호 (1층 102호)	대지	476분의 78.302	476분의 78.302	우연근	강서구 화곡동 869-5 (해성 팰리스빌 B01)			
3	연희동 67-4호 (2층 201호)	대지	476분의 80.36	476분의 80.36	이지훈	강남구 대치동 934-7(101)			
4	연희동 67-4호 (2층 202호)	대지	476분의 78.302	476분의 78.302	구본홍	양천구 신정동 1296 신정동아이파크 106-702			
5	연희동 67-4호 (3층 301호)	대지	476분의 80.366	476분의 80.366	오은희	양천구 목동 951외 1 목동금호어울림(A) 101-301			
6	연희동 67-4호 (3층 302호)	대지	476분의 78.302	476분의 78.302	임동현	연희동 67-4 연희하이츠빌라 302호			
7	연희동 67-5호	대지	145.00	145.00	유성주	서대문구 연희동 67-5호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연희동지점)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연희3동청사 건립

연 번	지번	물건 종류	구 조 및 규격	면적 (㎡)	편입면적 (㎡)	실 체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연희동 67-4호 (1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33.00	133.00	주택	성진규	광진구 구의동 241-56(10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연희동지점)	
2	연희동 67-4호 (102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29.59	129.59	주택	우연근	강서구 화곡동 869-5(해성 팰리스빌 B01)	한국 씨티 은행	중구 다동 39 (목동지점)	
3	연희동 67-4호 (2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33.00	133.00	주택	이지훈	강남구 대치동 934-7(101)	하나 은행	중구 을지로1가 101-1 (연희2동지점)	

연번	지번	물건 종류	구 조 및 규격	면적 (㎡)	편입면적 (㎡)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4	연희동 67-4호 (202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29.59	129.59	주택	구본홍 양천구 신정동 1296 신정동아 이파크 106-702	아현1동 새마을 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5	연희동 67-4호 (3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33.00	133.00	주택	오은희 양천구 목동 951외 1 목동금어울림A 101-301	-	-		
6	연희동 67-4호 (302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129.60	129.60	주택	임동현 연희동 67-4 연희하이츠빌라 302호	제일 은행	종로구 공평동 100(주택금융부)		
7	연희동 67-5호	건물	철근콘크리 트조	109.22	109.22	주택	유성주 연희동 67-5	국민 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연희동지점)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은3동청사 건립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홍은동 273-10 (101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이영자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101호			
2	홍은동 273-10 (102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정연애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102호			
3	홍은동 273-10 (103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문주형	관악구 봉천동 1723 반석푸른숲A 103-803			
4	홍은동 273-10 (104호)	대지	1302분의74.2	1302분의74.2	이영래	광진구 능동 241-21			
5	홍은동 273-10 (105호)	대지	1302분의66.2	1302분의66.2	윤대일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105호			
6	홍은동 273-10 (106호)	대지	1302분의66.2	1302분의66.2	최규하	양천구 신정동 1277 신트리4단지A 407-606			
7	홍은동 273-10 (201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조세연	관악구 신림동 610-268			
8	홍은동 273-10 (202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이상진	홍은동 273-10(202호)			
9	홍은동 273-10 (203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김정필	성동구 행당동 126-15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0	홍은동 273-10 (204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홍순강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204호			
11	홍은동 273-10 (205호)	대지	1302분의66.2	1302분의66.2	정낙교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205호			
12	홍은동 273-10 (206호)	대지	1302분의66.2	1302분의66.2	박병이	강북구 미아동 318-10			
13	홍은동 273-10 (301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김형준	양천 신정동 1281 푸른마을A 201-1407			
14	홍은동 273-10 (302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유제현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302호			
15	홍은동 273-10 (303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김상희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303호			
16	홍은동 273-10 (304호)	대지	1302분의75.5	1302분의75.5	김정후	서초구 방배동 967-29			
17	홍은동 273-10 (305호)	대지	1302분의66.2	1302분의66.2	안기철	금천구 가산동 32-78			
18	홍은동 273-10 (306호)	대지	1302분의66.2	1302분의66.2	박성근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306호			

물 건 조 서

□ 사업명 : 홍은3동청사 건립

연 번	지 번	물건 종류	구 조 및 규격	면적 (㎡)	편입면적 (㎡)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홍은동 273-10 (101호)	건물	철 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이영자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101호	중소기업 은행	중구 을지로 2가 50(홍은동지점)	
2	홍은동 273-10 (102호)	건물	철 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정연애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102호	-	-	
3	홍은동 273-10 (103호)	건물	철 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문주형	관악구 봉천동 1723 반석푸른 숲A 103-803	안홍식	홍은동 273-10 (103호)	
4	홍은동 273-10 (104호)	건물	철 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이영래	광진구 능동 241-21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연번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관입면적 (㎡)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홍은동 273-10 (105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08	86.08	주택	윤대일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105호	노애란	홍은동 273-10 (105호)	
6	홍은동 273-10 (106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08	86.08	주택	최규하	양천구 신정동 1277 신트리4 단지A 407-606	-	-	
7	홍은동 273-10 (2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조세연	관악구 신림동 610-268(202)	아현1동 새마을금고	마포구 아현동 378-7	
8	홍은동 273-10 (202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이상진	홍은동 273-10 (202호)	서울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홍은동지점)	
9	홍은동 273-10 (203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김정필	성동구 행당동 126-15	한국씨티은행	중구 다동 39 (목동지점)	
10	홍은동 273-10 (204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홍순강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204호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혹석동, 서초동지점)	
11	홍은동 273-10 (205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08	86.08	주택	정낙교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205호	-	-	
12	홍은동 273-10 (206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08	86.08	주택	박병이	강북구 미아동 318-10	-	-	
13	홍은동 273-10 (301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김형준	양천 신정동 1281 푸른마을A 201-1407	허선재	홍은동 273-10 (301호)	
14	홍은동 273-10 (302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유제현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302호	-	-	
15	홍은동 273-10 (303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김상희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303호	한국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회경동, 창동역지점)	
16	홍은동 273-10 (304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98.45	98.45	주택	김정후	서초구 방배동 967-29	-	-	

연번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홍은동 273-10 (305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08	86.08	주택	안기철	금천구 가산동 32-78	서부농업협동조합	은평구 응암동 397-95(연희지점)	
18	홍은동 273-10 (306호)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86.08	86.08	주택	박성근	홍은동 273-10 현대빌라 306호	-	-	

◆ 양천구고시 제2006-10호

재건축 사업계획변경승인

양천구 신월2동 508-2외 9필지 지상 경인연합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남진과 동원메이드건설(주) 대표이사 이봉재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

다. 사업시행 변경 개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치	신월2동 508-2외 9필지		
규모	지하1층, 지상13~15	좌동	
연면적	15,876.35㎡	15,649.22㎡	
건폐율/용적률	21.55%/247.42%	21.55%/247.42%	
동수/세대수	3동 118세대	3동 118세대	
총사업비	25,181,846천원	26,881,846천원	
사업기간	2003.10~2005.12	2006.3~2007.11	

◆ 강서구고시 제2006-18호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1. 우리 구 외발산동 274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제32

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명 : 경인연합연립 재건축사업

나. 공동사업주체

○ 성 명 : 경인연합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남진

○ 주 소 : 양천구 신월2동 511-12 지하1층

○ 성 명 : 동원메이드건설(주) 대표이사 이봉재

○ 주 소 :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80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326	외발산동 265-1	외발산동 2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80	외발산동 263	외발산동 272	일반도로		2004.7.30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408	외발산동 263	외발산동 산59-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55	외발산동 269	외발산동 268-7	일반도로			

나.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
 ○ 주변 교통체계와 원활한 접근 및 미개발지의 기반시설 확보
 다. 관계도면 :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387) 비치도면과 같음.

◆ 영등포구고시 제2006-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11호(1985.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06-6호(2006.2.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 가한 「신길동 4533-7~4524간 도로개설공사」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28-1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신길동 4533-7~452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폭6m, 연장15m
 라. 사업시행자
 1) 영등포구청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동 3가 385-1)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고시 일로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사.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토목과(☎ 2670-3814)에 관계도면과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
- 사 업 명 : 신길동 4533-7~4524간 도로개설공사

구분	소재지 자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기 정	신길동 4528-1	대	126.0	43.0	도로	김광수	영등포구 당산동 121-113	
변 경	신길동 4528-1	대	43.0	27.0	도로	김광수	영등포구 당산동 121-113	
				16.0	대 지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
- 사 업 명 : 신길동 4533-7~4524간 도로개설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구 조	물건의 종류	수량 및 저축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기정	신길동 4528-1	-	-	-	김광수	영등포구 당산동 121-113	
변경	신길동 4528-1	세멘 브럭조	담장	1식	김광수	영등포구 당산동 121-113	

◆ 영등포구고시 제2006-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안)

1. 서울시고시 제32호(1970.7.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영등포구공고 제2006-108호(2006.2.16)로 열람공고된 대림동 1022-4~1025-13간 도로개설공사 외1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 및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제출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바랍니다.

2006년 3월 16일
영 등 포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조서
1)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시설결정일	비 고
대림동 1026-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림동 1022-4~1025-13간 도로개설공사	B= 6m L= 30m	서울시고시 제32호('70.7.25)	
대림동 1072-5~1072-2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림동 1035-4~1068-13간 도로개설공사	B= 8m L= 108m	서울시고시 제32호('70.7.25)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3)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동 3가 385-1)
- 4) 사용 및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 붙임 토지조서 참조)
- 나. 문의처 : 영등포구청 토목과 (☎ 2670-3814)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
- 사 업 명 : 대림동 1022-4~1025-13간 도로개설공사

물건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195.0	195.0						
	대림동 1026-4	담	195.0	195.0	도로	이해형	동작구 신대방1동 712 경남아너스빌 103동 906호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

○ 사 업 명 : 대림동 1035-4~1068-13간 도로개설공사

물건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지분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계		922.0	922.0							
1	대림동 1072-5	대	684.0	684.0	1/3	도로	박병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40-9			
					1/3		장동협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42			
					1/3		김동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8-4 4층			
2	대림동 1072-24	대	238.0	238.0	1/3	도로	박병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40-9			
					1/3		장동협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42			
					1/3		김동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8-4 4층			

◆ 동작구고시 제2006-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54호(1973.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 2006-21(2006.2.9)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사당동 89-3~81-9간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의 도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68조에 의거 인가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 820-9907)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사당동 89-3~81-9간 : B=6m,

L = 78m

(2) 사당동 72-1~92-1간 : B=8m,

L=314m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사당동 89-3~8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라. 면적 또는 규모 : B=6~8m, L=392m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노량진동 47-2)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동작구 사당동 89-3~8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1	사당동 91-185	도로	10	10	조경순	관악구 사당동 141-185				
2	사당동 91-11	도로	571	571	유지수	광진구 광장동 145-8 위커희(A) 25-1003				
3	사당동 91-187	도로	56	56	유지수	광진구 광장동 145-8 위커희(A) 25-1003				
4	사당동 91-204	대지	22	22	천창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대교(A) 2-706	가등기	천창민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비(A) 비동 602호	사당동 91-195
5	사당동 92-19	대지	5	5	이택호	동작구 사당동 92-16	근저당	동작동 새마을금고	동작구 사당동 91-129	사당동 92-16
6	사당동 92-15	대지	59	59	이인남	성동구 풍납동 149-10 (성동구 풍납동 81-16)	압류(사당동 92-1)	동작구청		사당동 92-15와 92-1합병
7	사당동 91-205	대지	2	2	장봉녀	동작구 사당동 52	채무자	전경환	서초구 잠원동 65-8 잠원 한신(A)동 109호	사당동 91-167
					전정호	동작구 사당동 91-167	근저당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당동 91-167	지1층	세멘 벽돌조	2	주택	전정호	사당동 91-167	전경환	서초구 잠원동 65-8 잠원 한신(A)동 109호	채무자
		1층	"	2	점포					
		2층	"	2	주택					
2	사당동 91-178	1층	철콘	6	점포	강길식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667-10			
		2층	철콘	6	주택					
		3층	철콘	6	주택					
3	사당동 91-177	1층	철콘	15	점포	강연식	강서구 화곡동 46-67			
		2층	철콘	15	주택					
		3층	철콘	15	주택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동작구 사당동 89-3~8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사당동 91-167	영업권	그릇가게	1식	소매업	최순자	사당동 91-167
2	사당동 91-178	영업권	한우 암소전문점	1식	소매업	이재우	사당동 88-13
		영업권	푸로베이비	1식	소매업	박수현	관악구 봉천2동 동아A 203-602
		영업권	반찬백화점	1식	제조업	이병석	용산구 보광동 7-12
		영업권	안동강정	1식	소매업	이상연	남양주시 은성주택 27-202
3	사당동 92-177	영업권	대성건강원	1식	제조업	임명빈	사당동 105 신동아A 405-1306
		영업권	민속떡집	1식	제조업	이동기	사당동 91-159
		영업권	청계담집	1식	소매업	이옥렬	사당동 46-4번지 301호
		영업권	해남상회	1식	소매업	함복심	사당동 64-227

◆ 동작구고시 제2006-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동작구고시 제 56호(2005.8.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고, 동작구공고 제2006-65호(2006.2.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동작구 『사당동 150-5~176-50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 820-9904)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당동 150-5~176-50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1)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사당동 150-5~176-5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B=6~8m, L=298m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1	사당동 141-258	도로	4	4	손대호	대구시 중구 봉산동168			
					손진혁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623-9			
					손상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6-9 해청빌라 5-302			
					민태홍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A 14-506			
2	사당동 161-116	도로	93	93	오종윤	관악구 봉천동 1605-7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사 항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1	사당동 161-116	계량기	수도	2	계량기	김대홍	동작구 사당동 161-102			
2	사당동 161-116	계단	계단	1식	계단	유병운	동작구 사당동 161-101			
3	사당동 161-116	가건물	샷시	4	가게	이항구	동작구 사당동 161-61			
		"	"	5	가게					
4	사당동 161-116	계량기	수도	2	계량기	서중석	동작구 사당동 161-107			
5	사당동 161-116	계량기	수도	2	계량기	손경자	동작구 사당동 161-105			
6	사당동 708-1064	가건물	샷시	4	가게	임근동	동작구 사당동 161-104			
		계량기	수도	2	계량기					
7	사당동 708-1064	계량기	수도	2	계량기	봉준채	동작구 사당동 161-71			
8	사당동 708-1064	정화조	정화조	1	정화조	김복만	동작구 사당동 161-108			
		계량기	수도	2	계량기					

2006년 3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 동작구고시 제2006-18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중전 :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28조제3항(중전 : 제33조제
 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중전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5)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사 업 명 : 공작파크맨션재건축사업
2. 사업주체 : 공작파크맨션재건축조합 조합
장 정재면(동작구 사당동 147-29)
(주)KCC건설 대표 정몽열
(서초구 잠원동 27-8)
3. 시 공 사 : (주)KCC건설 대표 정몽열
4. 사업위치, 면적 및 규모(변경내용)사업
가. 위 치 : 동작구 동작동 106-1호외
37필지

나. 변경내용

구분	규 모			사업부지면적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준공인가 예정일)	비고
	층 수 (지하/지상)	동	세대수								
변경전	2/7-15	5	178	9,701.90	8,979.50	31,998.14	24.68	244.31	76,465	2006.06	-
변경후	2/7-15	5	178	9,694.20	8,986.10	31,998.14	24.66	244.13	76,465	2006.06	-

5. 사업시행기간 : 2003.11.~2006.6.
 6.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도로 및 공원)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및 지형도면 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비고 (면적)
	등급	류별	폭원(m)						
당초	도로	3류	6	국지도로	15	동작동 100-38	동작동 100-1	일반도로	89.12㎡
변경	도로	3류	6	국지도로	15	동작동 100-38	동작동 100-1	일반도로	95.50㎡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공원) 및 지형도면 변경조서

구분	사실명	연장(m)	면적	위 치	지 목	비 고
당 초	공원	110m	420.85㎡	동작동 98-1(195.49㎡)	도 로	
				동작동 100-91(129.41㎡)	대 지	
				동작동 100-10(33.84㎡)	대 지	
				동작동 109-1(43.07㎡)	대 지	
				동작동 109-6(15.63㎡)	도 로	
				동작동 109-7(3.41㎡)	도 로	
변 경			404.40㎡	동작동 332-1(107.9㎡)	공원용지	
				동작동 332-2(296.5㎡)	공원용지	

2)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사 업 명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당 초	도 로	공작파크맨션재건축 사업에 따른 도로공사	89.12㎡	동작동 100-14	1.87㎡	
				동작동 100-25	87.25㎡	
변 경		공작파크맨션재건축 사업에 따른 도로공사	95.50㎡	동작동 332-4	95.50㎡	
당 초	공 원	공작파크맨션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원시설공사	420.85㎡	동작동 98-1	195.49㎡	
				동작동 100-9	129.41㎡	
				동작동 100-10	33.84㎡	
				동작동 109-1	43.07㎡	
				동작동 109-6	15.63㎡	
변 경		공작파크맨션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원시설공사	404.40㎡	동작동 109-7	3.41㎡	
				동작동 332-1	107.90㎡	
				동작동 332-2	296.50㎡	

○ 사업행자

- 공작파크맨션재건축조합 조합장
정재면(동작구 사당동 147-29)

- (주)KCC건설 대표 정몽열
(서초구 잠원동 27-8)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주택건설
사업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

○ 토지 등 수용 없음

나.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2조
(종전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의제 사항)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면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면 : 생략

8.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일 :
2003.6.27

9. 사업변경인가도면 : 생략(동작구청 주택

과에 비치(☎ : 820-9782))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06-1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완료

1. 서울시-105호('83.2.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4-9호(2004.2.1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한 이태원2동 255의42~258의23간 도로개설공사(2차)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도로)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토목과(☎ 710-34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0-39~이태원2동 258-231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이태원2동 255의42~258의23간 도로개설공사(2차)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개요: B=6m, L=90m
 - 배 수 공: 흡관부설 93m, 맨홀 5개소, 빗물받이 8개소
 - 포 장 공: 아스콘 포장 5.56@
 - 구조물공: 보강토옹벽설치 259㎡, 난간설치43경간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5번지, 용산구청장
5. 사업시행기간: 2004.2.16~2006.2.28
6.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토목과(☎ 710-34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06-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완료

1. 용산구고시 96-46호('96.9.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4-1호(2004.1.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청과 2가 113~청과 2가 11-3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토목과(☎ 710-34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 2가 113~청과동 2가 11-3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청과동 2가 113~청과동 2가 11의3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개요: B=6m, L=113m
 - 배 수 공: 흡관부설 74m, 맨홀 4개소, 빗물받이 8개소
 - 포 장 공: 아스팔트포장 5.57@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5번지, 용산구청장
5. 사업시행기간 : 2004.1.10~2006.2.28
6.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8.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토목과(☎ 710-34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및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본 열람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토목과(전화 : 490-3405~9, 전송 490-3708, <http://www.chungnang.seoul.kr>)에 의견 제출 및 문의바랍니다.

2006년 3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가. 열람장소 :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토목과
나. 열람기간 : 2006.3.16~2006.4.5

◆ 중랑구공고 제2006-142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열람

1.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적승인된 면목동 615주변 공공공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종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사업시행자
중랑구 면목동 615-24일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A=355㎡	인가일로부터 2006.12.31	중고 제16호 ('06.3.9)	중고 제16호 ('06.3.9)	중 랑 구청장

- 라.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 99조에 의함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조 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면목동 615주변 공공공지 및 도로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내 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면목동 581-3	도로	21.6	21.6	중랑구					
2	면목동 615-24	대지	82.6	82.6	이상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15-24				
3	면목동 1326-73	구거	524	250.8	국(건설부)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면목동 615주변 공공공지 및 도로정비공사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	면목동 615-24	건물	벽돌조/세멘기와	55	이상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8-2 래미안 방배 아트힐 104-1701				
		다용도실	알미늄샤시	5.4						
		가스계량기		1식						
		가스보일러		1식						
		수도계량기		1식						
		외부수도		1식						
		전기계량기		1식						
		대문	1.5*1.9							
담장	2.6*1.6									
2	면목동 1326-73	화장실	블럭/슬라브	5	조금숙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15-17				무허가
3	면목동 1326-73	건물	블럭/기와	50	김철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8-12				무허가
		화장실	블럭/슬라브	4						
		보일러실	블럭/샤시	3						
		전기계량기		1식						
		가스계량기		3식						
		가스보일러		1식						
		상수도		1식						
		대문(철재)	1*1.2							
4	면목동 1326-73	건물	블럭조	77	김태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326-73				무허가
		화장실	블럭조	4						
		가스보일러		1식						
		정화조		1식						
5	면목동 1326-73	건물	블럭/기와	35	허징	서울시 중랑구 1326-73				무허가
		화장실	블럭/판넬	3						
		전기계량기		1식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5	면목동 1326-73	상수도		1식	허징	서울시 중랑구 1326-73				무허가
		가스보일러		1식						
		대문(철재)	1*2.3							
		담장(블럭)	2*2							

◆ 성북구공고 제2006-20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량근린공원)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총독부고시 제208호('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47호('95.8.26)로 도시계획시설(청량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26호(2003.7.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결정 되었고, 성북구고시 제2003-112호(2003.8.5)로 지형도면 승인된 청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청량근린공원 조성)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

지과 및 상월곡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공고 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상월곡동 산8-20번지 외 2필지 일대
- 나. 사업의 명칭 및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청량근린공원)
- 다. 면적 및 규모 : 건물5동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 내용 : 공원지역내 건물 보상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3월~2006.12월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목록 : 별첨
-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자.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920-3396), 상월곡동사무소(957-2901)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토지 및 물건의 종류	건물 구조	건물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상월곡동 산8-20번지 외 2필지	주택	블럭/기와	70	28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8-20번지	김경재				
2	상 동	주택	블럭/기와	130	73.9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211-26(성원아트빌 504호)	김기원				

연번	소재지 지번	토지 및 물건의 종류	건물 구조	건물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 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상 동	주택	블럭/ 기와	186	88.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1번지 국화A 1-1508호	김민곤				
4	상 동	주택	블럭/ 스래트	70	9.3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9-27번지 대훈탑스빌 101-401호	박중철				
5	상 동	주택	블럭/ 스래트	120	61.6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8-20번지	오원석				

◆ 강북구공고 제2006-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8-21호 (1998.3.20)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미아4동 42-102 ~번2동 442-6간 도로개설공사』 외 7건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공고내역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연번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인가 (구노시)	사업시행지	사 업 시행자	사업의 규모	사업의 기간
1	미아4동 49-102~ 번2동 442-6간 도로개설공사	제1998-21호 (1998.3.20)	미아9동 3-865~ 3-878	강북 구청장	도로개설 B=15m L=2,452m중 324m	1998.3.20~ 2002.6.22
		제2001-47호 (2001.5.30)	미아9동 3-878~ 258-446	"	도로개설 B=15m L=2,452m중 376m	2001.5.30~ 2006.2.24
2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공사	제1998-22 (1998.3.31)	미아2동 791-993	"	도로개설 B=10m L=600m 중 200m	1998.3.31~ 2004.2.26
		제2000-84호 (2000.11.30)	미아2동 791-1343 ~791-1247	"	도로개설 B=10m L=600m 중 110m	2000.11.30~ 2006.2.24
3	미아2동 791-1221 주변 도로개설공사	제2003-47호 (2003.5.30)	미아2동 791-1221 ~791-1232	"	도로개설 B=6m L=90m	2003.10.30~ 2006.2.24
4	수유2동 240~238간 도로개설공사	제2003-17호 (2003.3.25)	수유2동 238-10 ~240-225	"	도로개설 B=6m L=200m	2003.3.25~ 2006.2.24

연번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인가 (구고시)	사업시행지	사 업 시행자	사업의 규모	사업의 기간
5	미아2동 795~238간 도로개설공사	제2002-9호 (2002.2.28)	미아2동 792-39 ~238-16	"	도로개설 B=8m L=120m	2003.3.25~ 2006.2.24
6	번3동 138~163간 도로개설공사	제2000-92호 (2000.12.20)	번3동 138-1~163	"	도로개설 B=12m L=270m	2000.12.20~ 2002.12.30
7	미아1동 749-25 주변 도로개설공사	제1998-22호 (1998.3.20)	미아1동 749-25~ 749-13	"	도로개설 B=6m L=82m	1998.3.20~ 2002.6.28
8	수유6동 522~산80 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제2000-94호 (2000.12.13)	수유6동 522-2~ 산80	"	도로개설 B=10m L=314m	2000.12.13~ 2001.12.26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방학동
498-31외 6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
공청사)사업
- 다. 사 업 명 : 방학4동 사무소 청사 신축
- 라.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580㎡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
구청장(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 바. 사업 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 고시일
로부터 2년간
- 사.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를 위한 공
람공고 내용
- 변경내용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조서
- 아. 열람 장소 : 도봉구청 주민자치과
- 자. 열람기간 : 공고 일로부터 20일간
-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민자치
과(☎ 02-2289-1128)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06-12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4-89호
(2005.1.5)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5-14(2005.3.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도봉구 방
학동 498-31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일
부 물건을 변경 추가하기 위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
은 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을 변
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인 도봉구청 주민
자치과(☎ 02-2289-1128)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
서는 열람 공고 기간에 열람 장소로 서
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영
업권)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
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사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 사업명 : 방학4동 사무소 청사 신축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1	당초	방학동 501	건물	콘크리트 단열시공	40평	이영도	중계동 360-2 창구A 102-404				
	변경	"	건물	콘크리트 단열시공	82㎡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현황측량 면적
2	당초	"	담장	brick	1식	이영도	중계동 360-2 창구A 102-404				
	변경	"	담장	벽돌	25× 1.5m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3	변동 없음	"	대문	철재	1식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4	변동 없음	"	정화조		1식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5	변동 없음	"	계량기	전기	1식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6	추가	"	건물 리모델링		1식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7	추가	"	별채		14㎡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8	추가	"	지하수		1식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9	추가	"	정원수		4그루	이영도	중계동 587 양지대림A 101-2103				
10	추가	"	기차 (주방)		39㎡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1	추가	방학동 501	기차 (출입문 통로)		20㎡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2	추가	"	기차 (건물 정면)		20㎡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3	추가	"	전기시설 교체		1식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명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 권리명세	
14	추가	방학동 501	심야 보일러	2.0×2.0 200ℓ	1개소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5	추가	"	다대간판 설치비	1.0×5m	1대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6	추가	"	간 판		1개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7	추가	"	이동간판		1개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8	추가	"	무 인 경보기	세콤	1셋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19	추가	"	포장마차 바	5×2.8m	1셋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20	추가	"	수족관1	3×2×2m	1개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21	추가	"	수족관2	3×1.5× 1.5m	1개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22	추가	"	기타 영업시설 및 용품		1식			홍자경 (홍혜경)	방학동 501	세입자	

◆ 노원구공고 제2006-116호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전용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열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1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전용소매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서(증축,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변경인가)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서류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6년 3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1, 51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농수산물전용소매시장)

나. 사업의 명칭 : 롯데마트중계점 증축공사

3. 사업시행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26,454.50㎡

나. 사업내역 : 1개동 38,456.70㎡

- 기 존 : 1개동 연면적 29,909.92㎡

- 금 회 신청내용 : 연면적 8,546.78㎡

증축, 주차대수 증가(139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이철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2007.5.31

6.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생략

8. 열람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 950-3910)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열람공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06-124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노원구고시 제2004-72호(2004.10.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05-77호(2005.11.21)로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한 노원구 월계2동 860-1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공람공고로 같습니다.

2006년 3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2동 860-1번지 외 7필지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공공지 조성)
나. 사업의 명칭 :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4. 사업의 내용
가. 면 적 : 3,798㎡
나. 사업규모 : 기반시설, 휴양시설, 수목식재등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7. 공람장소 : 노원구 공원녹지과 (☎ 950-3895~7)

8. 공람기간 : 공고일(시보게재일) 익일로부터 20일간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 및 내용	
계			3,798	3,798						
1	월계2동 855-25	전	42	42	서울시					
2	월계2동 855-19	전	693	693	신현태	강남구 논현동 24-11 알파임하우스 102-30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관계의 관대내용		
2	월계2동 855-19	전	693	693	신재현	강남구 잠원동 130-17 신반포7차A 303-402					
					신태자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A 나-203					
					신청자	강남구 신사동 589-9	경기은행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여신관리부)	가압류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 진구 중앙동 4가 17-7	강제경매 개시결정		
					신현관	강남구 방배동 758					
					유성희	용인시 수지면 고기리 265-1					
3	월계2동 856-1	답	158	158	국 (재무부)						
4	월계2동 859	답	202	202	조무성	노원구 월계동 505-2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근저당권 설정		
5	월계2동 860	답	484	484	조무성	노원구 월계동 505-2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근저당권 설정		
6	월계2동 861-2	답	1,100	1,100	권덕균	성북구 장위동 63-119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권 설정		
							이용국	노원구 중계동 503 중계근린A 116-313	근저당권 설정		
							최영미	노원구 중계동 515-2 건영2차A 106-1408	근저당권 설정		
							김계화	중랑구 중화동 332-86	근저당권 설정		
					서울시	지분(646/1,957)					
7	월계2동 861-3	답	141	141	권덕균	성북구 장위동 63-119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권 설정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지상권 설정		
							이용국	노원구 중계동 503 중계근린A 116-313	근저당권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7	월계2동 861-3	답	141	141	권덕균	성북구 장위동 63-119	최영미	노원구 중계동 515-2 건영2차㉠ 106-1408	근저당권 설정	
							김계화	중랑구 중화동 332-86	근저당권 설정	
8	월계2동 860-1	하천	970	970	서울시					
9	월계2동 860-13	하천	1	1	서울시					
10	월계2동 860-14	하천	7	7	서울시					

◆ 동작구공고 제2006-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
및 제54호(1973.4.20)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동
작구 상도동 245-1외 등 도시계획시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
업(도로)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열람합니다.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 820-
9905)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 공고 기
간에 열람 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16일
동작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상도동 245-7,
사당동 173-21, 사당동 176-51,
사당동 318-67, 사당동 428-1,
사당동 427-23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 다. 사업명 : 상도4동 245-1외등 도로개설
공사
- 라. 면적 또는 규모 : B=4~6m, L=100m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
작구청장(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일로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
지목및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토목과
- 자.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토목과
(☎ 820-9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1	상도동 245-7	대	25	25	양무웅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70-9			
2	사당동 173-21	대	6	6	이정복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A 221-804			
3	사당동 176-51	대	2	2	이정복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A 221-804			
4	사당동 318-67	대	29	29	한상문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청구A 607-601			
5	사당동 428-1	대	20	20	문경린	서울시 성동구 풍납동 69-7	압류	동작구청	동작구 노량진동 47-2
					박광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47-18			
6	사당동 427-23	대	155	155	서순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29-7			

◆ 강남구공고 제2006-16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열람

1.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6-7호(2006. 2.9)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삼성동113-26, 27호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년 3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남구 삼성동
113-26, 27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명 칭 : 강남구 삼성동 113-26, 27호
주차전용건축물
- 다.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
(지하3층/지상3층)
○대지면적 : 1,001.40㎡
(연면적 : 4,535.1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 자주식 123대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강남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04.12.10
~2006.2.24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공고일 익일부터 20일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본관1층 ☎ 2104-2065)

토 지 조 서

○ 삼성동113-26, 27호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중복)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계			1,001.40	1,001.40							
1	삼성동 113-26,27	대 지	1,001.40	1,001.40	공영주차장	강남구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				

사업소고시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 성명 : 망원보트 황금애
3. 점용자의 주소 : 강남구 대치1동 506
선경A 11-1404
4. 점 용 위 치 : 마포구 망원동 205-5(한강)
5. 점 용 면 적 : 총 314㎡
6. 점 용 목 적 : 유선장
7. 점 용 기 간 : 2006.3.11.~2006.12.31.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 성명 : 망원보트 황금애
3. 점용자의 주소 : 강남구 대치1동 506
선경A 11-1404
4. 점 용 위 치 : 마포구 망원동 205-5(한강)
5. 점 용 면 적 : 총1,446㎡
6. 점 용 목 적 : 유선장운행을 위한 부대
시설(사무실, 선박보관소 등)
7. 점 용 기 간 : 2006.3.11.~2006.12.31.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 목적	허가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2006.3.3.	성동구 옥수동 490-2	하천	600	야적장	2006.3.3.~ 2007.2.2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서울시 건안본부장

2006년 3월 16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4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목적	허가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2006.3.7.	강서구 개화동 59-1	하천	14.4	사무실 및 창고설치	2006.3.7.~2006.5.20.	노원구 상계동 707-4 태성빌딩 5층	인덕건설 이강덕
<p>◆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40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p>					<p>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 하였기에 동 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6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p>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목적	허가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2006.3.6.	광진구 노유동 97-5	하천	72	비품창고	2006.1.1.~ 2006.12.31.	중구 서소문동 38	서울특별시장 (환경과)

사업소공고

◆ 남산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2006-1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남산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시설 일부를 관리위탁하였 기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현황

시설명	위 치	위탁내역	수 탁 자		관 리 위탁기간	낙찰액(원) 비 고
			성 명	주 소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용산구 이태원동 258-59	◦ 면수 - 33면 ◦ 면적 - 774.0㎡	송의석	관악구 봉천동 14-95(15/5)	2006.1.1~ 2008.12.31(3년)	120,450,000

◆ 남산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2006-2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남산공원

○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현황

시설명	위 치	위탁내역	수 탁 자		관 리 위탁기간	낙찰액(원) 비 고
			성 명	주 소		
산약수매점	중구 회현동 1가 산1-2	◦ 대지 180.0㎡ ◦ 건물 126.0㎡	장주미	강남구 역삼동 681-26 (21/2) 하나빌-1301	2006.1.11~ 2009.1.10(3년)	98,100,000

◆ 남산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2006-3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남산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시설 일부를 관리위탁하였 기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사업소 공원시설 일부를 관리위탁하였 기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현황

시설명	위 치	위탁내역	수 탁 자		관 리 위탁기간	낙찰액(원) 비 고
			성 명	주 소		
야외매점	중구 회현동 1가 산1-2	◦대지 162.0㎡ ◦건물 124.8㎡	김재희	은평구 갈현동 355-36(29/6)	2006.1.21~ 2009.1.20(3년)	121,000,000

◆ 남산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2006-4호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남산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시설 일부를 관리위탁하였
기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현황

시설명	위 치	위탁내역	수 탁 자		관 리 위탁기간	낙찰액(원) 비 고
			성 명	주 소		
팔각 기념품매점	중구 여장동 신5-6	◦대지 35.0㎡ ◦건물 20.0㎡	유성복	강남구 수서동 723 도시개발A 601-1113	2006.2.1~ 2009.1.31(3년)	83,700,000

◆ 녹지사업소공고 제2006-가-5호
도시공원시설(천호동공원 전시관) 관리
위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
리위탁하였기에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녹 지 사 업 소 장

◆ 구의정수사업소공고 제2006-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
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제3조제1항3호 및 서
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직인규칙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구의정수사업소장

□ 관리위탁내용






- 가. 공 원 명 : 천호동공원(도시근린공원)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60
- 다. 시 설 명 : 천호동공원 전시관
- 라. 면 적 : 1층 336.52㎡ 중 22.23㎡
- 마. 위탁기간 : 2006.4.1~2007.3.31
(1년간)
- 바. 수 탁 자 : 강동구 길1동 391-14
(사) 한국민족문화사업회 대표이사 류중석

1. 등록 및 폐기사유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
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
칙제3조제1항3호에 의하여 회계관직 지
정운영에 따른 직인 신조 및 폐기등록
2. 직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6.4.1
직인의 폐기연월일 : 2006.4.1
3.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명 및 인영

<별지 제4호 서식>

1. 신조시

인 영

직인명	구의정수사업소운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구의정수사업소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인	구의정수사업소운영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구의정수사업소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인	구의정수사업소사무 담당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1. 폐기시

인 영

직 인 명	구의정수사업소일상경비출납원인	구의정수사업소분임물품출납원인	구의정수사업소분임물품출납원인
인 영			

백상지 190mm×268m/m

◆ 마포소방서공고 제2006-4호

방염처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마 포 소 방 서 장

1. 등 록 번 호 : 제마포2006-1호
2. 업종(등급 및 분야) :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3. 상 호 : 주성케미칼 주식회사
4. 대 표 자 : 김 도 균(610920-1*****)
5. 법인등록번호 : 110111-1929780
6.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 2층

7. 등 록 일 자 : 2006년 03월 10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701-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소방서공고 제2006-3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강 서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제강서 2006-1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다보이앤씨	최창진 (641203-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8-4	2006.3.7
<p>※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강동소방서공고 제2006-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p>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6년 3월 16일 강 동 소 방 서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 : 제강동2006-2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화신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서춘범 ○ 주민등록번호 : 440815-1***** ○ 영업소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38 ○ 등록일자 : 2006. 03. 10.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24호
행정처분사전통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사전통지

당 사 자(건설기술자)			자격 종목	예정된 처분제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홍길	700519-1*****	서울시 동봉구 쌍문동 137-169 지하-B02	건설기술 경력증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건설기술경력증을 (주)세진이엔씨에 대여
임용규	700808-1*****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1 청계벽산A 110-513	건설기술 경력증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건설기술경력증을 (주)선양토건에 대여
김용식	710415-1*****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12-6, 4층	건설기술 경력증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정종합건설(주)에 대여
최성철	721107-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 호수마을A 134-703	건설기술 경력증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건설기술경력증을 (주)한양엔티에 대여
<input type="checkbox"/>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 제1항 :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input type="checkbox"/> 의견제출 ○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 총무과, 담당자 : 박경수)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63(전화 : 02-2125-2517, 팩스 : 02-2125-2524) ○ 제출기한 : 2006년 3월 23까지					